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록

노동자 8,209명이 참여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담았다.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며, 각종 노동법 위반이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하청노동의 실태와 저임금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도 들여다 보았다. 응답자들은 정부에 저임금 해소, 고용안정,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요구하였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긍정적 기대는 높은 편이며, 특히 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의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미조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developmt1@gmail.com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224
- 팩스: 02-2670-9299
- 메일: kctuli2020@gmail.com

민주노동연구원의 발간물은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요약 3

1. 서론 5

2. 임금, 노동시간 8

3. 휴가, 휴일, 휴게공간 17

4. 사업장 복리후생 21

5. 노동자 대표기구 25

6. 저임금 노동과 작은 사업장 29

7. 파견, 사내하청 33

8. 노동정책 39

9. 노동조합 43

10. 결론 47

■ 참고문헌 49

■ 부록: 통계표 50

요약

■ 전국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분석

- 전국 노동자가 참여한 설문조사 유효응답(8,209명)을 분석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1.08\%$). 취업자의 고용형태 비중은 정규직 67.1%, 비정규직, 23.3%, 특고·프리랜서 6.4%, 사업주·자영업자 2.2%이며, 조직유무로 보면 노동조합원은 17.4%, 미조직 노동자 82.6%임
- 임금, 노동시간, 휴가·휴일, 복리후생 등 전반적 노동조건을 분석하고,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본문은 보고서를, 부록으로 통계표를 제시함

■ 심각한 수준의 저임금 문제, 포괄임금제 남용, 산업단지 장시간 노동 확인

- 평균 월 임금(세전)은 292.6만 원(중위수 260만 원)이며, 성별, 고용형태별, 지역별 임금 격차 존재함. 특히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의 낮은 임금을 확인
- 산업단지 노동자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3.4시간(비산업단지 41.5시간)
- 포괄임금제 적용 44.2%, 임금체불 경험 9.3% (산업단지의 경우 각각 57%, 14.8%)
- 특수고용·프리랜서의 4대보험 가입률은 39.6%~46%에 불과

■ 제한적인 연차휴가 사용과 저조한 휴게시설 설치

- 지난 한 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는 35.2%. 이 중 62.3%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5~29인 사업체 33.1%, 30~99인 사업체 20.3%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하지 않음
- 가족돌봄 등·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률은 모두 40% 미만
- 20~29인 사업체 40.3%, 30~99인 사업체 36.4%가 휴게시설 미설치로 법 위반

■ 직장 불만 사항 1위 저임금, 2위 복리후생 취약, 3위 미래 불투명

- 사업장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비율이 낮으며, 특히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미지원 비율은 19.6%에 달함
- 응답자 48.2%가 지난 1년간 거의 매주 또는 종종 퇴사를 생각했다고 답변

■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의 존재 비율이 낮고 기능도 미흡

- 근로자대표를 둔 사업장은 전체의 31%. 이 중 29.7%는 근로자대표를 회사가 지정
- 노사협의회 설치율은 26.9%로 낮으며, 30~99인 사업체도 27.5%에 불과함

-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모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음

■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저임금 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

-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 2/3 미만)는 표본 전체의 7.7%로 여성,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되며, 단시간 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가 저임금 환경과 밀접한 연관
-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52.1%)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더 열악

■ 노동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

- 파견 노동자의 83.6%가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경험
- 불허 업종 파견 운영, 파견 기간 위반, 기간 연장 절차 위반 등 불법 파견실태가 상당한 것으로 의심되며, 사내하청 중 30% 이상은 원청이 직접 업무 지휘, 인사 결정하는 위장도급
- 무분별한 위법적 아웃소싱 중단,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은 저임금 해소, 강력한 규제, 고용안정 등

- 중앙정부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지방정부에는 생활임금 확대 적용 등 저임금 해소책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노동법 위반이나 포괄임금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함
-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은 고용안정 정책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
- 지방정부에는 편의·복지시설 확충, 노동자 안전 예방 및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높은 가입 의향과 큰 기대

- 노조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대해 5개 문항 모두 55.5~61.5%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부정적 인식은 8.8~11.2%에 불과
- 미조직 노동자의 65.1%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49.5%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조 활동이 취약한 분야에서도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경우 가입률이 낮지 않음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사회 불평등 완화를 기대함

■ 진정한 '노동약자' 지원책은 미조직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대부터

-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은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
-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등 노조할 권리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등 노동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함

1. 서론

1) 설문조사 개요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2024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담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리를 위한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입안할 목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이 주관하고 가맹·산하 조직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시·도 노동자 밀집 거점에서 집중 캠페인 등의 방식을 통하여 홍보된 바 있다. 홍보물을 보고 큐알 코드에 진입하여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10,414명인데, 이 가운데 중복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걸러내고 최종 8,209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응답자 일반현황, 사업체 현황 및 고용 특성, 노동 실태 전반,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인식 등 4개의 분야,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했고,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라면 응답할 수 있는 특별 문항 5개를 추가하였다.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동일 기기 내에서는 1개의 응답만 허용하고, 가능한 문항의 경우 보기에 대한 순서효과가 상쇄되도록 보기를 무작위로 섞어(rotation) 동일 문항이라도 응답자 간에 서로 다른 순서의 보기가 보이도록 조치하였다.

[표 1] 설문조사 개요

내용			세부내용
조사 대상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조사 기간			1차) 08.26.~08.29. 2차) 09.09~09.27.
조사 방식			- 반구조화된 온라인 설문 구축 : Surveymonkey - 전국 시·도 거점 캠페인을 통한 설문조사 홍보 후 자발적 조사 참여
조 사 항 목	공 통	기본 현황	성별, 연령, 지역, 주거지 점유 형태,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산업단지
		고용 특성	산업, 직업, 고용형태, 노동시간, 근속기간, 경력, 종업원 수, 노조 유무, 3개월 평균 월급, 4대보험, 복리후생,
		노동 실태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 휴가, 휴일, 휴게, 근로시간단축제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직장 불만 사항, 퇴사 의향
		노동정책, 노동조합	중앙·지방 정부 노동정책, 노조에서 이루고 싶은 것, 노조 역할, 노조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영향력, 노조 가입 의향, 민주노총에 바라는 점
	파견, 사내하청 추가 조사		파견 기간, 차별 유무, 관리 권한(인사·작업 배치·근태)
표본 추출 방식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최종 분석 사례 수			8,209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8%)

2) 응답자 현황

최종 분석에 사용한 8,20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 3,128명(38.1%), 여성 5,061명(61.7%), 그 외의 성 20명(0.2%)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로는 30대가 4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40대(27.3%)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7.7세이다.

[표 2]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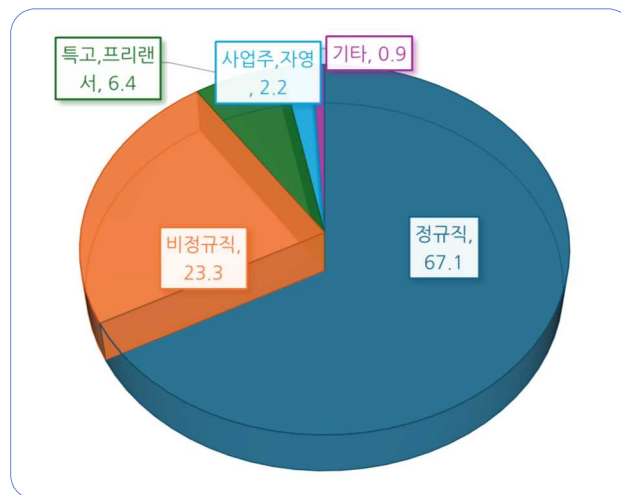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성	3,128	38.1	근속기간	3개월 미만	725	8.8
	여성	5,061	61.7		3개월~1년 미만	1,398	17.0
	그 외의 성	20	0.2		1년~3년 미만	2,164	26.4
연령대	20대	1,436	17.5		3년~5년 미만	1,350	16.4
	30대	3,722	45.3		5년~10년 미만	1,251	15.2
	40대	2,245	27.3		10년 이상	1,321	16.1
	50대	629	7.7	경력	3개월 미만	378	4.6
	60대 이상	177	2.2		3개월~1년 미만	747	9.1
근무 지역	서울	3,070	37.4		1년~3년 미만	1,492	18.2
	부산	609	7.4		3년~5년 미만	1,448	17.6
	대구	347	4.2		5년~10년 미만	1,759	21.4
	인천	546	6.7	10년 이상	2,385	29.1	
	광주	286	3.5	규모	5인 미만	1,385	16.9
	대전	508	6.2		5인~19인	2,009	24.5
	울산	233	2.8		20인~29인	911	11.1
	세종	76	0.9		30인~99인	1,551	18.9
	경기	1,298	15.8		100인~299인	1,130	13.8
	강원	114	1.4	300인 이상	1,223	14.9	
	충북	229	2.8	업종	건설업	649	7.9
	충남	164	2.0		공공 행정 · 공공 서비스업	665	8.1
	전북	133	1.6		제조업	1,749	21.3
	전남	81	1.0		민간서비스업	1,056	12.9
	경북	196	2.4		교육서비스업	770	9.4
	경남	287	3.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39	7.8
	제주	32	0.4		사무 · 금융업	1,201	14.6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66.2		운수업	151	1.8
	비정규직	1,887	23.0		정보통신업	478	5.8
	특수고용, 프리랜서	520	6.3		그 외	851	10.4
	사업주, 자영업자	182	2.2	직종	사무 · 관리 · 행정직	3,834	46.7
	무직	113	1.4		기술 · 기능 · 생산직	1,844	22.5
	기타	71	0.9		서비스직	1,847	22.5
파견 및 하청	파견	458	5.6		판매 · 영업직	533	6.5
	(사내)하청	352	4.3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51	1.8
	둘 다 아님	7,399	90.1	노조유무	노조 있음	2,485	30.3
주거지 점유 형태	자가	3,906	47.6		노조 없음, 잘 모르겠음	5,724	69.7
	전세 (민간)	2,042	24.9	조합가입	미가입	6,783	82.6
	월세 · 반전세 (민간)	1,575	19.2		가입(민주노총)	856	10.4
	공공임대	307	3.7		가입(한국노총)	204	2.5
	기숙사(회사)	112	1.4		가입(상급단체 없음)	366	4.5
	기타	267	3.3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48	21.3
평균 연령: 37.7세 (중위수 36세) ¹⁾			비산업단지 근무		6,461	78.7	
계		8,209	100	계		8,209	100

서울이 37.4%, 경기도가 15.8%, 인천이 6.7%로 수도권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부산 7.4%, 대전 6.2%, 대구 4.2% 등 17개 시·도에서 고르게 표본이 수집되었다.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66.2%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시·기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일용직)은 23.0%, 특수고용 또는 프리랜서가 6.3%,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는 2.2%, 무직 1.4% 순이다.²⁾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속기간은 1~3년 26.4%, 3개월~1년 17.0%, 3~5년 16.4% 순이지만, 본업과 관련된 전체 경력은 10년 이상 29.1%, 5~10년 21.4%, 1~3년 18.2% 순으로 많다.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와 산업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며, 직업군으로는 사무·관리·행정직이 46.7%로 가장 많고 기술·기능·생산직과 서비스직이 각각 22.5%로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참여자 중 30.3%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자는 69.7%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7.4%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82.6%)보다 적었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21.3%,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78.7%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무직이라고 밝힌 113명을 제외한 취업자 8,096명의 고용형태와 산업, 직업, 산업단지 유무는 [그림 1], [그림 2]와 같으며, 부록의 [표 24]에서 성별, 연령대, 지역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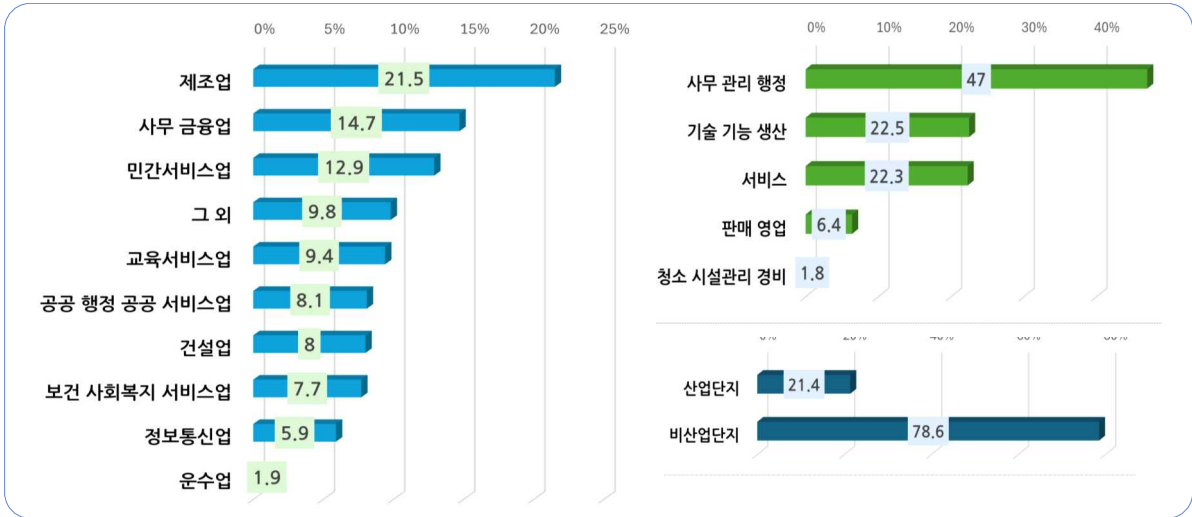
[그림 2] 취업자 고용형태(%)



- n=8,096(무직자 제외)

- 1)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정한 2022년 한국 취업자 평균 연령인 46.8세보다 9.1세가 낮다. 본 조사가 100%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 점, 산업단지 등 노동자 밀집 지역 선전전을 통해 설문조사가 권유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무직자 113명의 경우 임금, 노동조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으며 노동정책, 노동조합 분석에는 포함하였다.

[그림 3] 취업자 산업, 직업, 산업단지



- n=8,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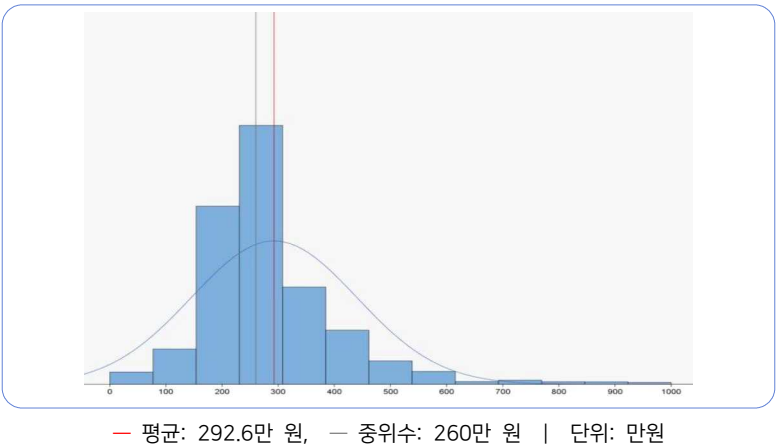
2. 임금, 노동시간

1) 임금

① 최근 3개월 평균 월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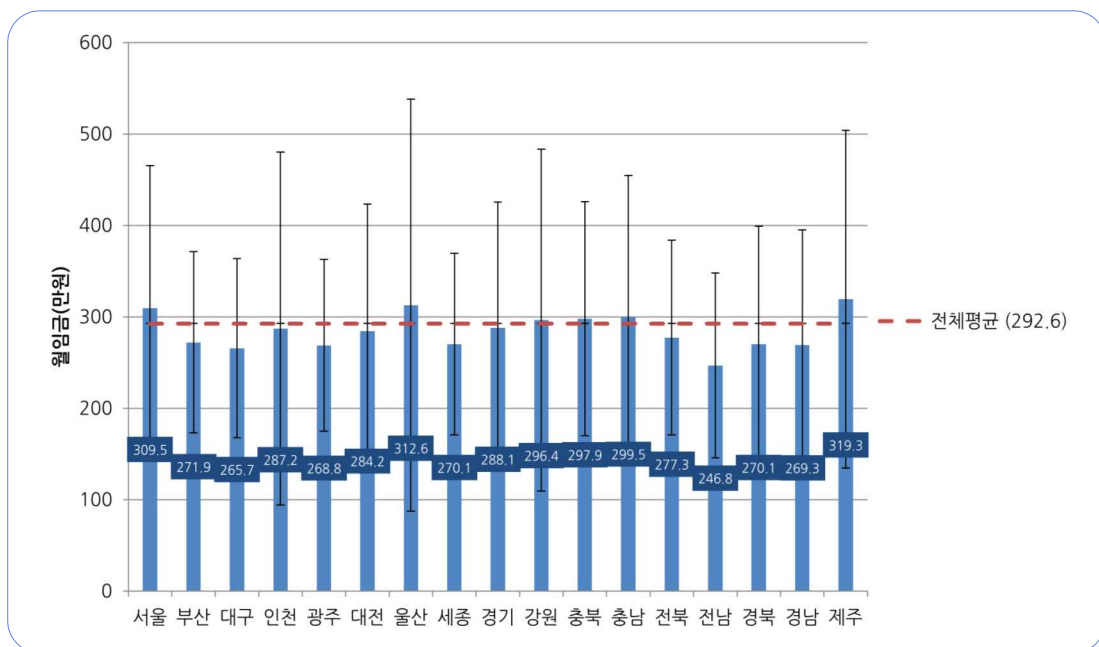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받은 월 임금 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의 세전 금액은 평균 292.6만 원(중위수 260만 원)으로 나타났다.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0~449만 원이 31.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0~249만 원(30.3%), 250~299만 원(22.9%), 450만 원 이상(9.2%), 150만 원 미만(5.6%) 순이다.

[그림 4] 최근 3개월 평균 월 임금(세전) 히스토그램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제주(319.3만)³⁾, 울산(312.6만), 서울(309.5만)이 월 임금 평균이 높은 반면, 전남(246.8만), 대구(265.7만), 광주(268.8만), 경남(269.3만)은 낮았다. 특히 전국 평균인 292.6만 원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남, 대구, 광주, 경남, 세종, 경북, 부산, 전북, 대전, 인천, 경기 등 11개 사·도에 달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취업자의 월 임금 평균(306.1만 원)은 비수도권(281.9만 원)보다 25만 원가량 높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5] 지역별 월 임금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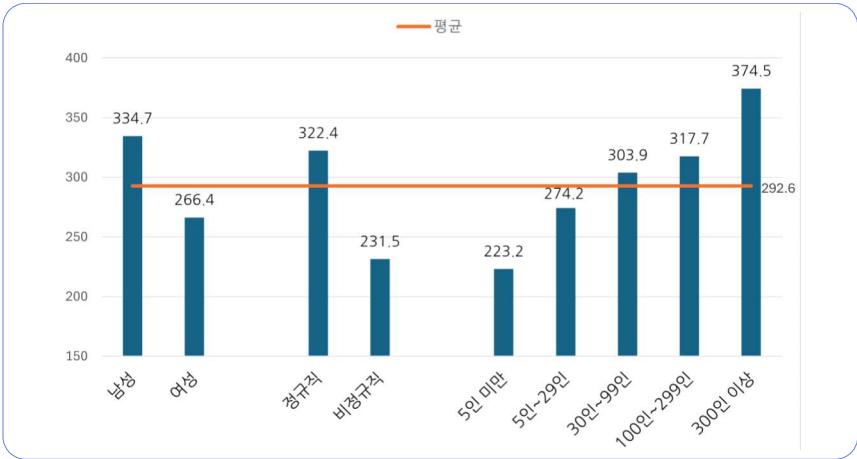


월 임금은 남성(334.7만)이 여성(266.4만)보다 높고, 정규직(322.4만)은 비정규직(266.4만)보다 100만 원 가까이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에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5인 미만 223.2만, 300인 이상 374.5만). 특히 고용형태를 성별과 사업체 규모별로 각각 교차하여 임금을 분석하면 정규직 남성이 360.4만 원을 버는 동안 비정규직 여성은 212.9만 원을 벌며, 월 397.1만 원의 대규모 사업체 정규직과 월 227.8만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3).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 년도(2001년~2023년)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노동시장 분절을 논한 남우근(202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면서도, 집단 간 격차는 다소 덜한 양상을 보인다.⁴⁾

3) 제주는 표본 수가 32개로 적기 때문에 보인다. 마찬가지로 100명 미만인 세종과 전남도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4) 남우근(2024)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의 대규모 정규직 월 평균임금은 195만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88만원이었으나 2023년에 와서는 각각 470만 원, 192만 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또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1년 39.7, 2010년 34.6, 2023년 39.3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보다 본 조사의 격차가 작은 원인은 표본

[그림 6] 성별, 고용형태별, 사업장규모별 월 임금 비교 (단위: 만원)



[표 3] 임금 비교: 성별,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교차

교차항목	구분	n	임금(만원)		
			월 평균	표준편차	중위
고용형태*성별	정규직 남성	2,224	360.4	154.79	330
	비정규직 남성	871	268.9	116.12	250
	정규직 여성	3,197	296.2	144.77	270
	비정규직 여성	1,780	212.9	107.58	205
고용형태*사업체규모	대규모, 정규직	999	397.1	168.71	350
	대규모, 비정규직	220	272.1	133.70	250
	중소규모, 정규직	4,437	305.6	143.01	280
	중소규모, 비정규직	2,436	227.8	111.84	220

- 주: 대규모는 종사자 수 300인 이상,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 사업체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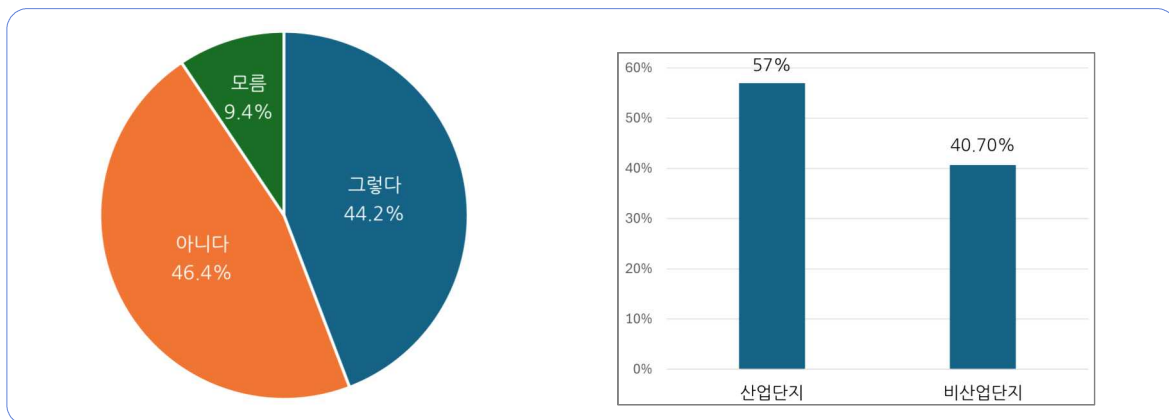
그리고 경력으로 볼 때, 10년 이상은 374.5만 원이지만 1년 미만은 212만 원이다. 산업 중에서는 정보통신업(333.3만 원)과 건설업(326.8만 원)이 높은 편이며, 민간서비스업(257.2만 원)과 교육서비스업(263.2만 원)이 낮은 편이다. 직업으로 보면 기술·기능·생산직(314.5만 원)이 가장 높고, 청소·시설관리·경비직이 211.9만 원으로 가장 낮다. 유노조 사업장(314.2만 원)은 노조가 없거나 노조 존재 사실을 응답자가 모르는 사업장(273.6만 원)보다 임금이 높으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314.2만 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286.7만 원)보다 임금이 높다.

의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② 포괄임금제 및 임금체불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44.2%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57%가 포괄 임금이 지급된다고 답하였다. 장시간 무료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셈이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1주 노동시간을 따져보니, 포괄임금 적용 사례는 평균 43.0시간이지만 미적용 사례의 평균은 41.0시간으로 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면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만연하는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마땅하며 22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제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⁵⁾

[그림 7]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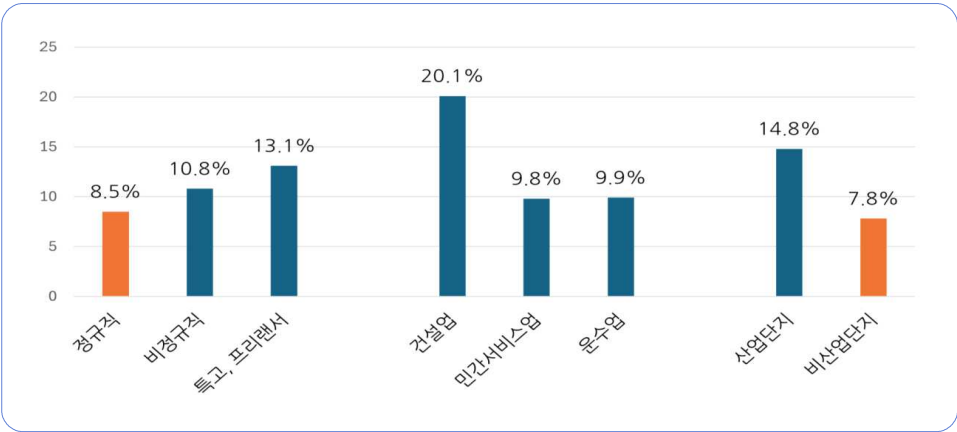


- n=8,092 (산업단지 1,732명, 비산업단지 6,360명)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였다. 전체 평균보다 경험률이 높은 집단은 특수교용 및 프리랜서(13.1%), 건설업 종사자(20.1%), 산업단지 근무자(14.8%) 등이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성별, 연령대, 종사자 수, 경력, 직업, 노조 유무에 따라서도 발견되었으나,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부록 표 26).

5) 월 임금 구간별로 보면, 300~449만 원 구간이 49.7%로 포괄임금 적용률이 가장 높고 250~299만 원 구간(48.1%), 450만원 이상 구간(47.7%)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150만원 미만에서는 24.1%, 150~249만 구간에서는 38.0%로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고임금 노동자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돼 실제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보다 낮은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임금체불 경험률 (최근 1년 기준)



- n=8,092 (임금체불 평균 경험률 :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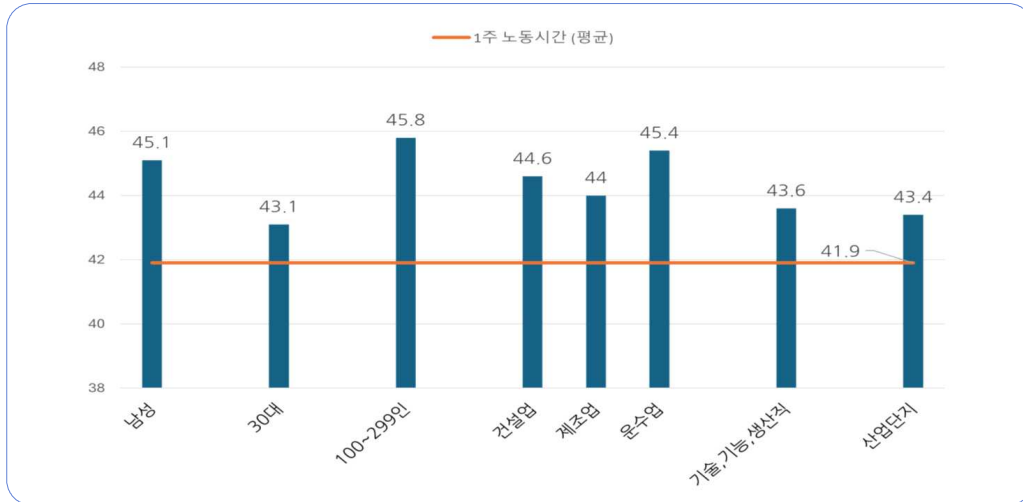
2)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 및 출퇴근시간 기록

노동시간은 초과·휴일 노동을 포함하고 휴게·식사 시간은 제외한 실제 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1주에 평균 5.03일간 41.9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간이 긴 집단은 남성(45.1시간, 5.1일), 30대(43.1시간, 5.04일), 종사자 수 100~299인 사업체(44.6시간, 5일), 건설업(44.6시간, 5.18일), 제조업(44시간, 5.1일), 운수업(45.4시간, 5.08일), 기술·기능·생산직(43.6시간, 5.1일), 산업단지 노동자(43.4시간, 5.1일)이다.

한편,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10명 중 적어도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계산하기 위해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1주 노동시간과 월 임금을 조합하여 분석한 결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6,781명 중 885명(13.1%)이 2024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60,740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물론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낮은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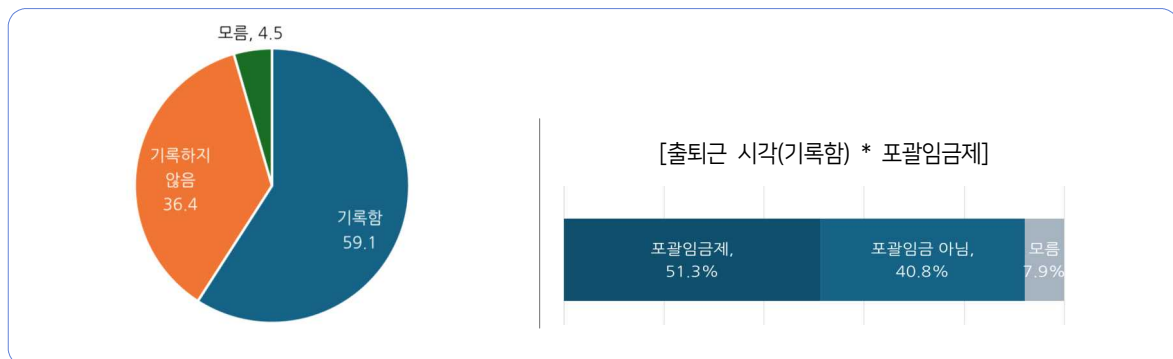
[그림 9] 1주 노동시간 (단위: 시간)



— 전체 평균 : 41.9시간 (중위 40시간) | 1주 노동일 평균 : 5.03일(중위 5일) | n=8,093.

다음으로 회사가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지 물었을 때, 59.1%가 ‘기록한다’, 36.4%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4,781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지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51.3%(2,452명)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명확한 측정 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국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면서도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사례의 상당 부분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용되는 포괄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그림 10] 출퇴근 시각 기록 여부 및 포괄임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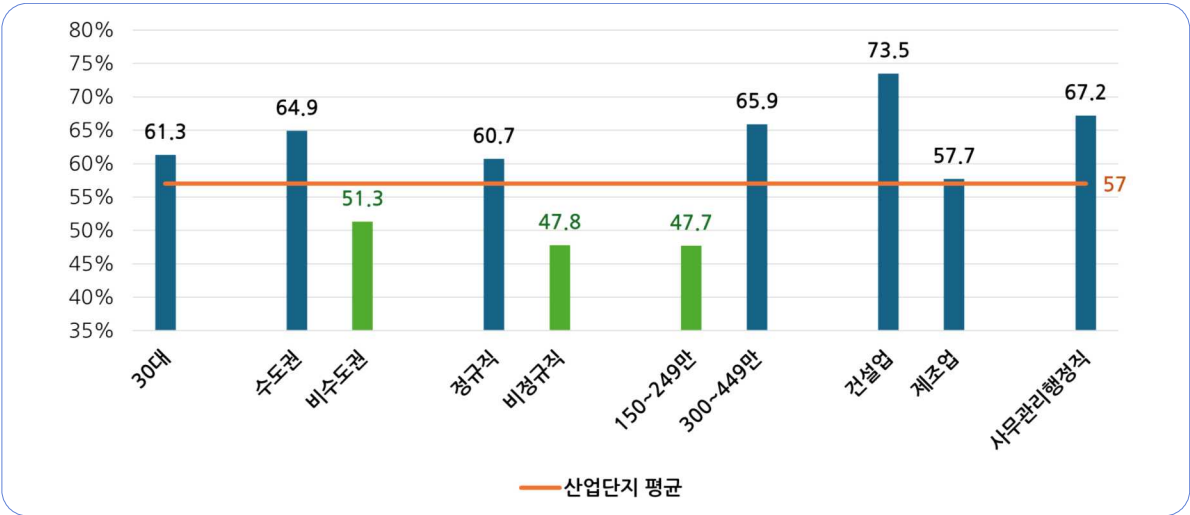
- n=8,093. 우측 차트는 출퇴근 시각을 기록한다고 한 응답자(4,781명)를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류

② 산업단지에 만연한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과 임금 체불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노동시간도 산업단지가 더 긴 사실이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한 교차분석 결과는 부록 [표 28~29]에 제시하였다.

산업단지 노동자 57%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는 30대(61.3%), 수도권(64.9%), 건설업(73.5%)에서 적용 비율이 높았다. 고용형태로 구분하면 비정규직(47.8%)보다 정규직(60.7%)의 적용 비율이 높고, 300만 원에서 449만 사이의 월 임금을 받는 산업단지 노동자 중 65.9%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답하였다.

[그림 11] 산업단지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



- n=1,733 (산업단지 노동자)

또한 매일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산업단지 노동자 1,3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6%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이들 중 상당수는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포괄임금 약정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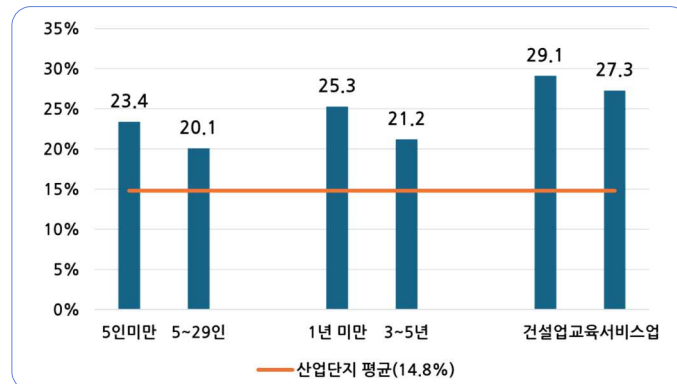
[그림 12] 산업단지 출퇴근 기록*포괄임금제



- 산업단지에서 매일 출퇴근 기록을 한다고 응답한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

산업단지 노동자 중 14.8%는 지난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 사업체 종사자 규모로 볼 때 '작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5인 미만(23.4%)과 5~29인(20.1%)은 임금체불 경험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산업에서는 건설업(29.1%)과 교육서비스업(27.3%)의 경험률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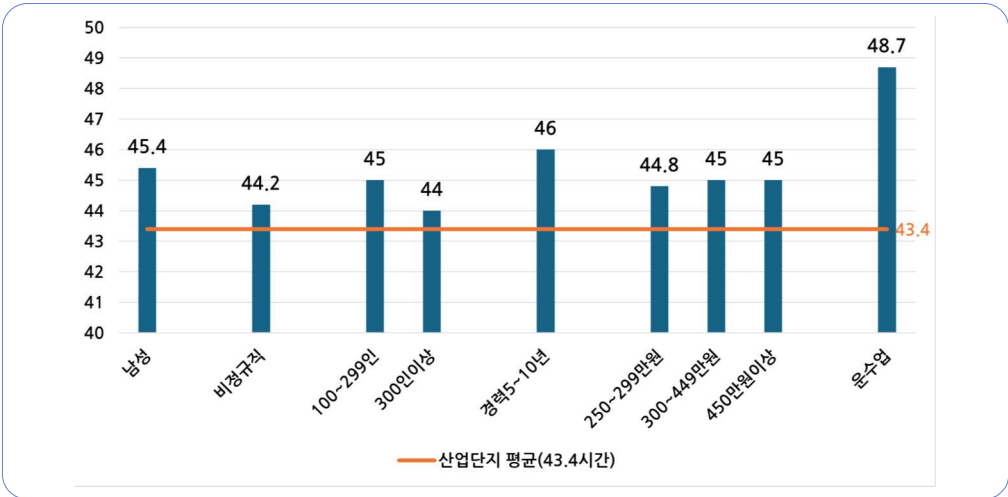
[그림 13] 산업단지 임금체불 경험률



- n=1,733 (산업단지 노동자)

산업단지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3.4시간으로 비산업단지의 41.5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길다. 특히 남성(45.4시간), 비정규직(44.2시간), 100인~299인 사업체(45시간), 300인 이상 사업체(44시간), 경력 5~10년(46시간), 월 임금 250~299만 원(44.8시간), 300만 원 이상(45시간), 운수업(48.7시간) 등에서 노동시간이 길다. 또한 법정 1주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47.4%로 절반에 가까웠고, 52시간 초과 비율은 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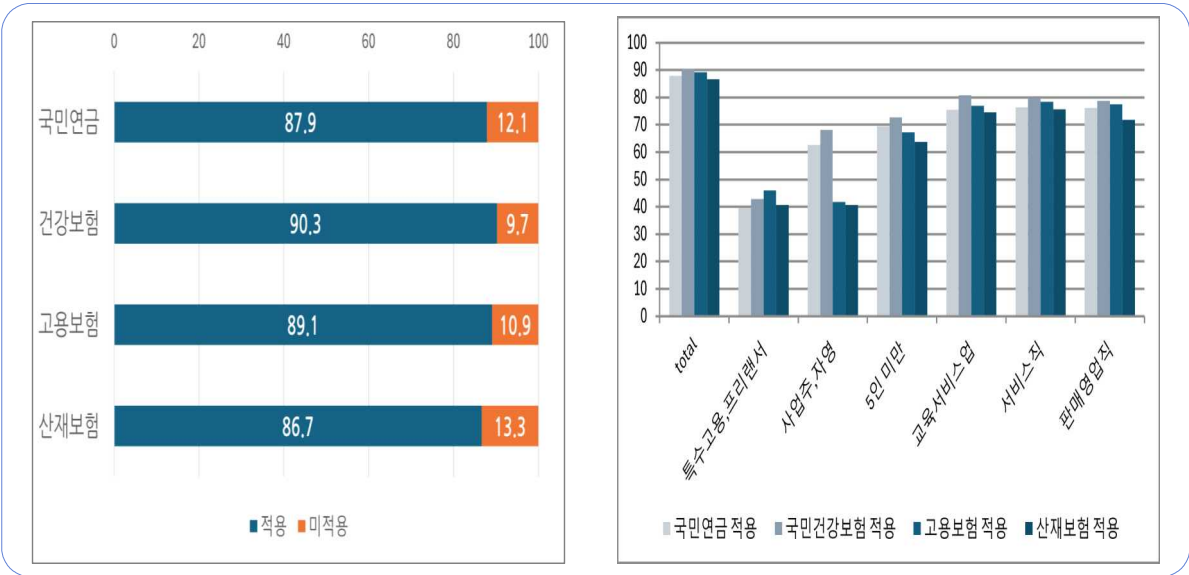
[그림 14] 산업단지 1주 노동시간



- n=1,733 (산업단지 노동자)

3) 4대 보험

[그림 15] 4대보험 적용 여부



- n=8,096

직장을 통한 4대 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87.9%, 국민건강보험 90.3%, 고용보험 89.1%, 산재보험 86.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달랐다. 정규직은 각각 9

6.4%, 99%, 97.6%, 96%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나, 비정규직은 80.3%, 81.6%, 82.4%, 78.1%로 다소 낮았다,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가입률이 더욱 낮아 국민연금 39.6%, 국민건강보험 42.9%, 고용보험 46%, 산재보험 40.6%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경우 각각 62.6%, 68.1%, 41.8%, 4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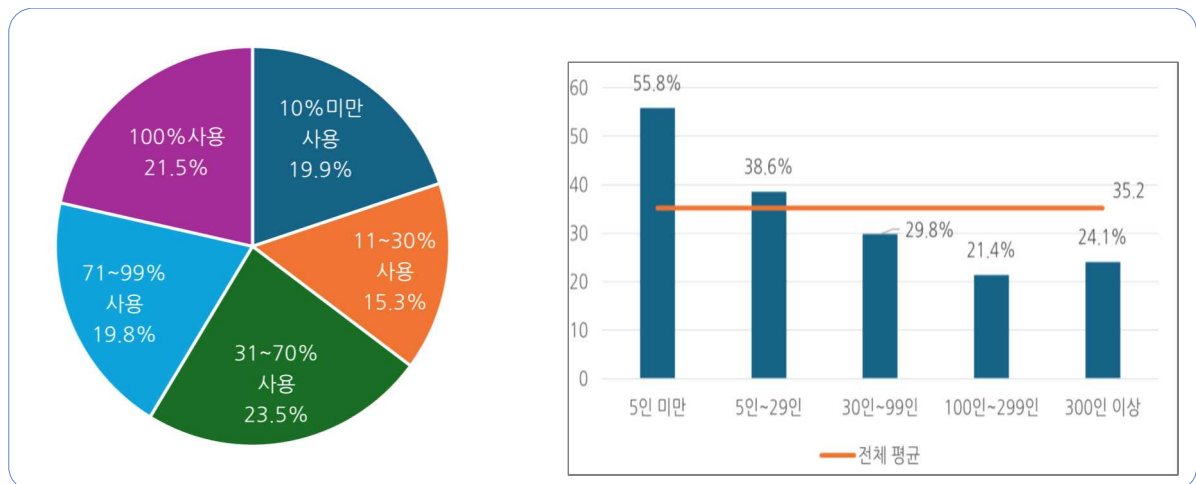
특히 가입률이 저조한 집단은 다음과 같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69.5%, 72.8%, 67.3%, 63.8%), 산업에서 교육서비스업(75.4%, 80.7%, 77%, 74.5%), 직종에서 서비스직(76.3%, 79.9%, 78.4%, 75.6%)과 판매영업직(76.2%, 78.7%, 77.4%, 71.8%)이다.

3. 휴가, 휴일, 휴게공간

1) 휴가

① 연차 사용률

[그림 16] 연차 사용률 및 사업체규모별 현황



- n=8,096 | 우측 차트는 연차 사용률 30% 이하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업체 규모별 비중을 파악

지난해 부여받은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5%는 연차휴가 중 31~70% 정도만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응답자는 21.5%였으나, 반대로 연차휴가의 1/10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도 19.9%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19.8%는 연차를 71~99% 정도 사용했으며, 15.3%는 연차휴가의 11~30%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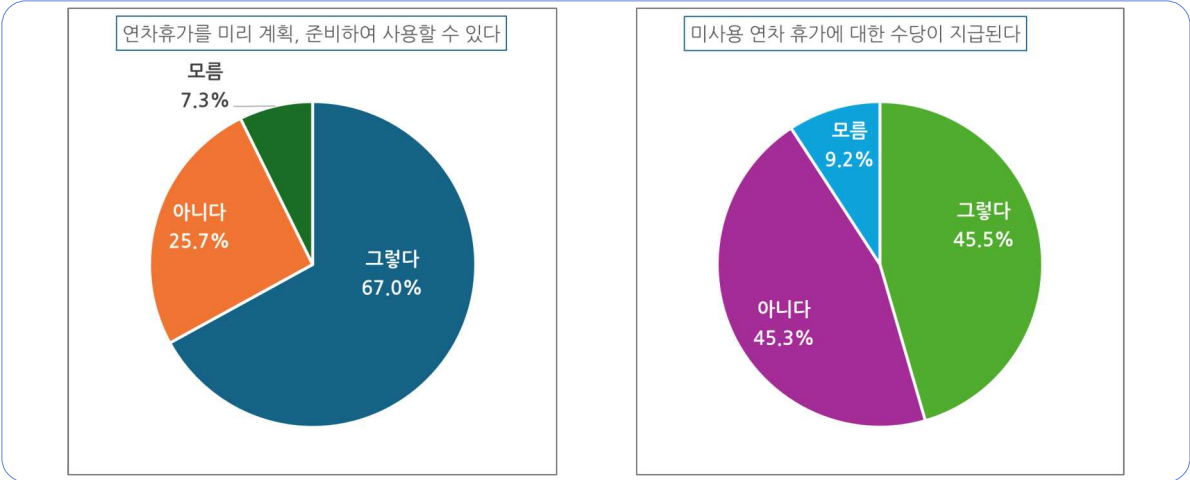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10개의 연차가 주어졌을 때 3개도 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는 전체의 35.2%에 이르렀다. [그림 15]는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차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연차의 30%도 사용하지 못한 이들의 비율은 5인 미만에서 55.8%, 5~29인에서 38.6%로 나타났으며, 30~99인 사업체에서도 29.8%였다.

②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태는 그렇지 않았다. 응답자의 67%만이 연차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비정규직 53.6%, 특고·프리랜서 42.1%). 업종별로도 민간서비스업(57.5%), 교육서비스업(57.6%), 운수업(57.0%)에서 연차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낮았다. 법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실태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급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45.5%의 응답자만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다. 부록 [표 31]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3.0%, 5~29인 사업체에서는 38.2%만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30.6%), 운수업(37.7%), 정보통신업(34.0%)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35.3%)과 판매·영업직(35.5%)에서 특히 낮은 수당 지급률을 보였다.

[그림 17] 연차휴가 사용 및 수당



- n=8,096

이어서, 분석 대상을 지난해 연차 사용률이 30% 이하인 2,849명으로 좁혀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이들 중 37.7%만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으며,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연차휴가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노동환경이 연차 사용률을 저조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표 5] 연차 소진율 30% 이하 집단의 연차휴가 실태

항목	2023년 연차 소진율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1,074 (37.7%)	1,447 (50.8%)	328 (11.5%)
	10% 이하 사용	483 28.7%	934 57.9%	217 13.4%
	11~30% 사용	611 49.5%	513 41.5%	111 9.0%
연차휴가 미리 계획, 준비하여 사용 가능		1,334 (46.8%)	1,209 (42.4%)	306 (10.7%)
	10% 이하 사용	594 36.8%	816 50.6%	204 12.6%
	11~30% 사용	740 59.9%	393 31.8%	102 8.3%

- 지난해(2023년)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30% 이하를 사용했다고 답한 사례를 분석(n=2,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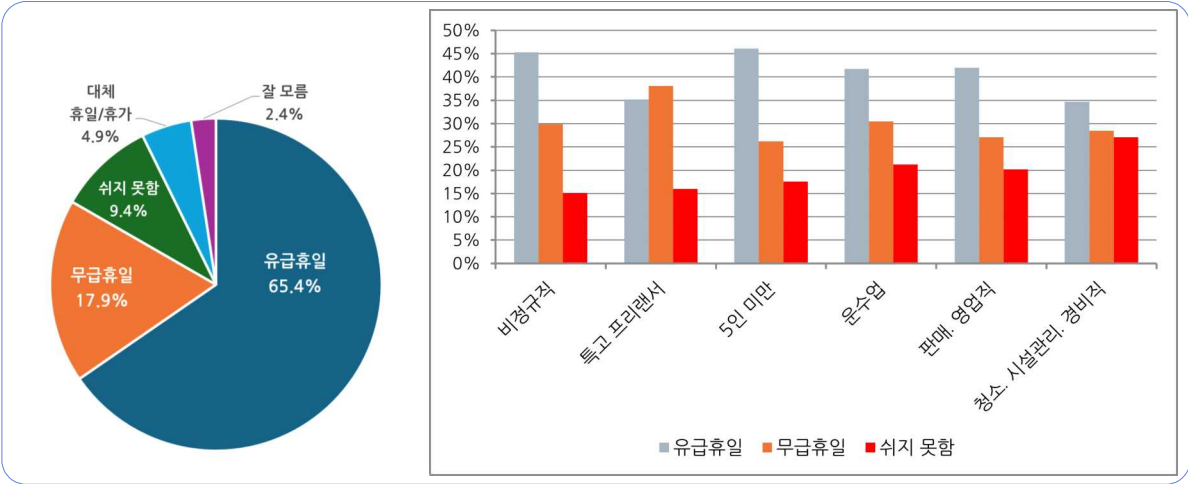
2) 휴일, 휴게공간

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응답자의 65.4%는 유급휴일로 보장받고 있었지만, 17.9%는 무급휴일이었고 9.4%는 아예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 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부록 [표 33]에 따르면 5~29인 사업체 3.1%, 30~99인 사업체 20.3%에서 무급휴일이거나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차분석 결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거나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집단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45.0%), 특수고용·프리랜서(54.1%), 5인 미만 사업체(43.8%), 운수업(51.7%), 판매·영업직(47.3%), 청소·시설관리·경비직(55.6%)에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 보장이 특히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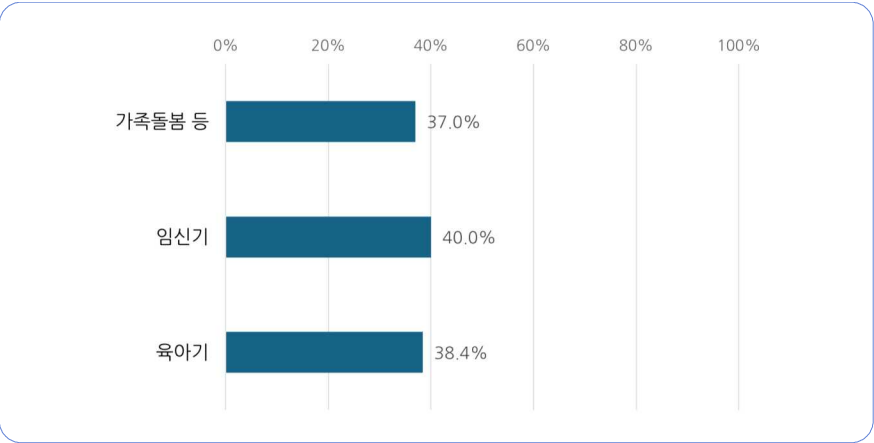
[그림 18]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 여부



- 우측 차트는 유급휴일 비율이 낮은 집단을 대표적으로 나타냄

②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림 19]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모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가족돌봄 등 37%, 임신기 40%, 육아기 38.4%). 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여성(35.3%)이 남성(39.9%)보다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두에 대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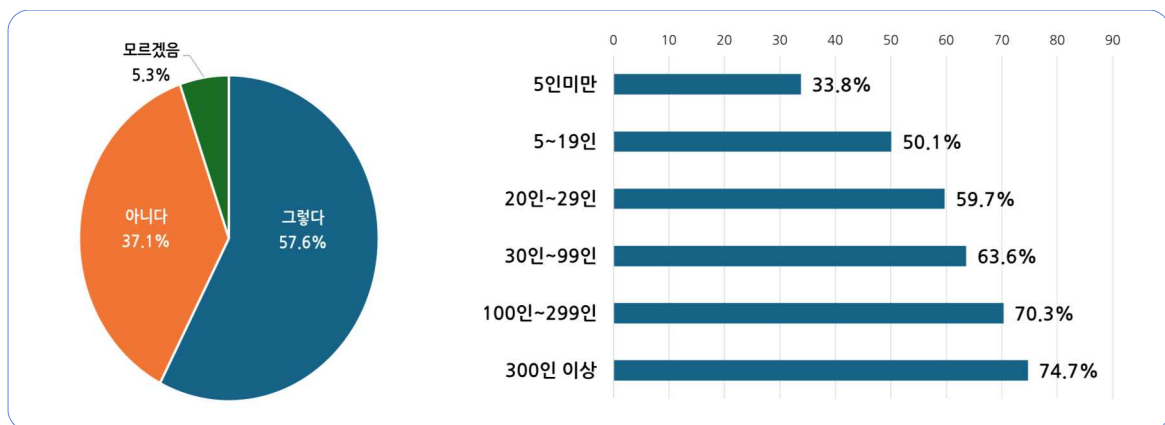
미만의 시행률을 보였으며, 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가족돌봄 등 19.5%, 임신기 21.2%, 육아기 20.4%로 매우 낮았다.

3) 휴게시설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비품 구비 등 전반적인 관리 상태에 대해 응답자의 57.6%는 '있다'고 답한 반면, 37.1%는 '없다'고 응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3년 8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대 직종에 속하는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20~29인 사업체 중에서는 59.7%만이, 30~99인 사업체에서는 63.6%만이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인 미만의 경우 5인 미만 33.8%, 5~19인 50.1%에 불과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휴게시설의 바닥면적, 천장 높이, 냉난방 및 환기시설, 비품 구비와 식수 제공, 조명 밝기, 동시 사용 인원, 위치 등 구체적인 설치, 관리 기준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관계 기관의 보다 면밀한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0] 휴게시설 설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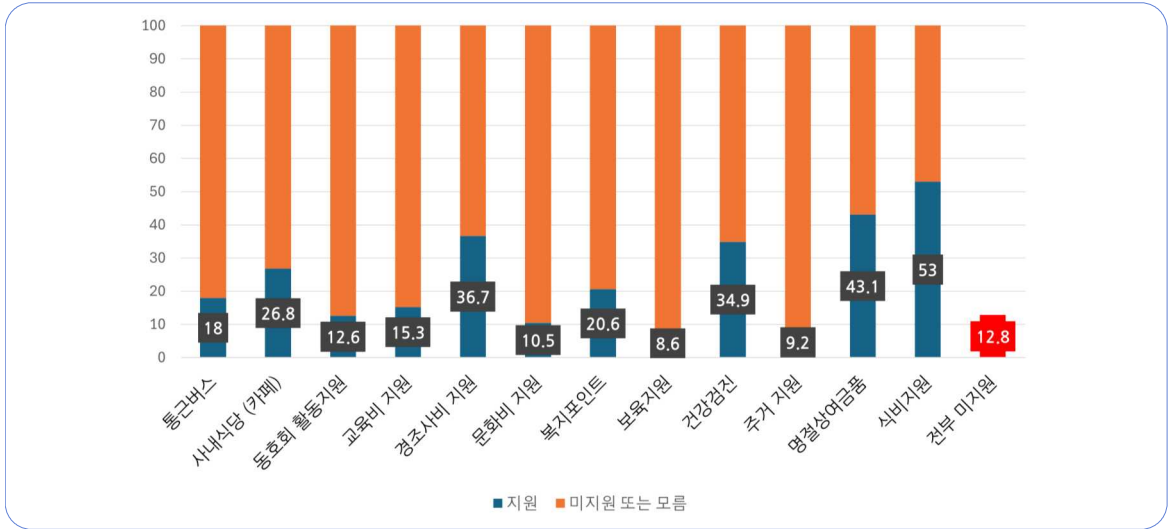


4. 사업장 복리후생

1) 복리후생 제도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과 주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지원 비율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통근버스, 사내 식당 또는 카페, 동호회 활동 지원,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문화비 지원, 복지포인트, 보육지원, 건강검진(국민건강검진 외), 주거 지원, 명절 상여 금품, 식비 지원 또는 구내식당 이용권 등 총 12개 복리후생 제도를 제시하고 각각의 지원 여부를 답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을 보인 복리후생 항목은 식비 또는 구내식당 이용권 지급(53.0%)이었다. 그다음으로 명절 상여 금품(43.1%), 경조사비 지원(36.7%), 건강검진(34.9%), 사내 식당 또는 카페(26.8%), 복지포인트(20.6%)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반대로 지원 비율이 낮은 복리후생 항목은 보육 지원(8.6%), 주거비 또는 기숙사 지원(9.2%)으로 혜택을 받는 응답자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서 제시한 12개의 복리후생 항목 중 그 어느 것도 지원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2.8%나 차지했다.

[그림 21] 복리후생 항목별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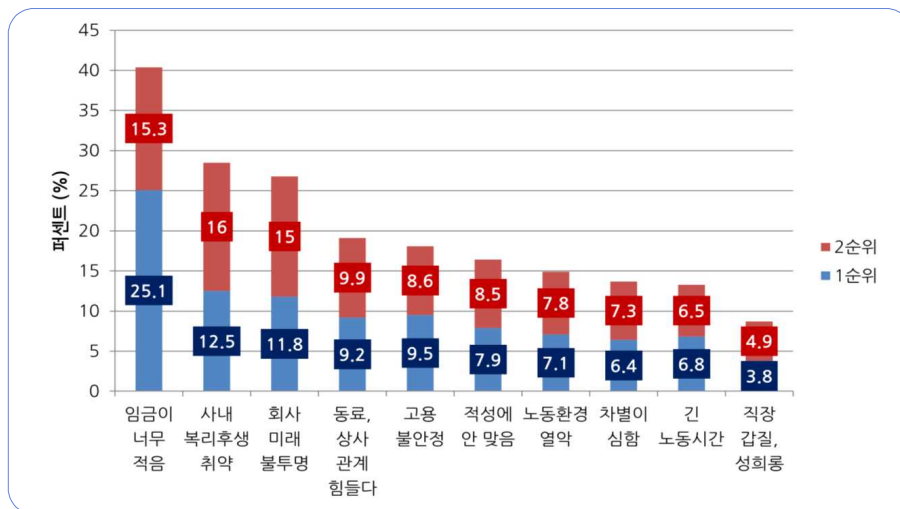
2) 불만족 사항

① 직장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사항

현재 직장에서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있어 낮은 임금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불만족 사항 1순위와 2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1순위로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12.

5%),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발전 가능성이 낮다’(11.8%)가 뒤를 이었다. 2순위에서는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16%)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 ‘임금이 너무 적다’(15.3%),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발전 가능성이 낮다’(15%)가 비슷한 비율로 집계되었다.

[그림 22]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1순위, 2순위)



[표 6]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 (산업단지)

(단위: 명, %, 점)

항목	응답빈도		총점
	1순위	2순위	
임금이 너무 적다	382 (22.0)	231 (13.3)	804
회사 미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다	240 (13.8)	268 (15.5)	628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	223 (12.9)	246 (14.2)	580.5
동료 및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힘들다	151 (8.7)	180 (10.4)	406.5
하는 일의 기술, 기능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139 (8.0)	173 (10.0)	381.5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156 (9.0)	137 (7.9)	371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143 (8.3)	134 (7.7)	348.5
차별(승진, 학력, 성별, 장애 등)이 심하다	115 (6.6)	141 (8.1)	313.5
고용이 불안정하다	113 (6.5)	123 (7.1)	292.5
직장 갑질(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힘들다	71 (4.1)	100 (5.8)	206.5

- 주: 1순위 150%, 2순위 100% 가중치 부여하여 총점 계산. n=1,733

1~2순위의 응답 빈도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보면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의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표 6~7). 물론 산업단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낮은 임금’인 점은 같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의 경우 산업단지

는 ‘회사 미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다’를, 비산업단지는 ‘사내 복리후생이 취약하다’로 나타난 것이다. 또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은 산업단지에서 비교적 높았고, 비산업단지는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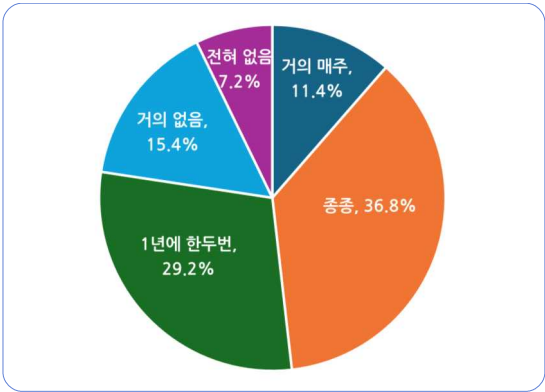
[표 7] 직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사항 (비산업단지)

항목	응답빈도		총점
	1순위	2순위	
임금이 너무 적다	1,649 (25.9)	1,010 (15.9)	3483.5
사내 직원 복리후생이 취약하다	791 (12.4)	1,048 (16.5)	2234.5
회사 미래가 없어 발전 가능성이 낮다	715 (11.2)	949 (14.9)	2021.5
고용이 불안정하다	655 (10.3)	574 (9.0)	1556.5
동료 및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힘들다	593 (9.3)	625 (9.8)	1514.5
하는 일의 기술, 기능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500 (7.9)	519 (8.2)	1269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428 (6.7)	501 (7.9)	1143
차별(승진, 학력, 성별, 장애 등)이 심하다	402 (6.3)	448 (7.0)	1051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394 (6.2)	391 (6.1)	982
직장 갑질(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힘들다	236 (3.7)	298 (4.7)	652

- 주: 1순위 150%, 2순위 100% 가중치 부여하여 총점 계산. n=6,363

② 불만족에 따른 퇴사 의향

[그림 23] 최근 1년 간 퇴사를 생각한 빈도



앞에서 언급한, 직장에서의 불만족 사항에 따라 ‘최근 1년간 퇴사를 얼마나 생각하였는지’를 묻은 결과, ‘종종’(36.8%), ‘1년에 한두 번’(29.2%),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음’(15.4%), ‘거의 매주’(11.4%), ‘전혀 없음’(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주 퇴사를 생각했다는 응답과 종종 퇴사를 생각했다는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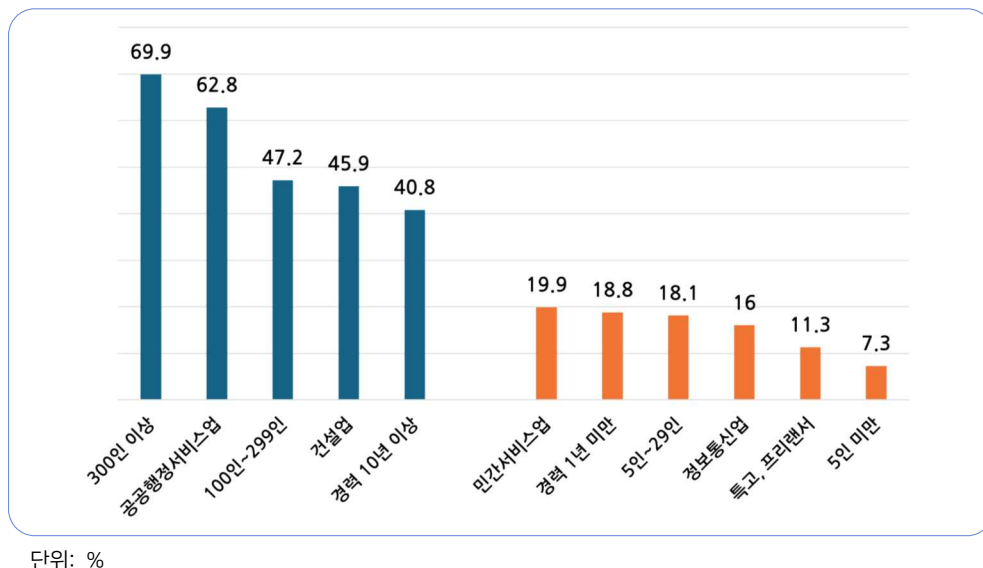
2%를 차지한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성별의 ‘그 외의 성’에서 55%, 경력의 ‘1년 미만’에서 54.2% ‘1~3년’에서 53.4%로 나타나며, 20대(53.2%), 비정규직(52.8%), 여성(52.3%) 등에서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업종별로는 민간서비스업(52%)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1.1%)에 종사하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거의 매주 또는 종종 퇴사를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5. 노동자 대표기구

1) 노동조합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노동조합 설치 비율은 30.6%이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479명(30.6%)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없다’는 4,431명(54.7%), ‘잘 모르겠다’는 1,186명(14.6%)이었다. 그리고 집단별로 교차하여 분석하였을 때, 노동조합 설치 비율은 300인 이상(69.9%)과 100~299인(62.8%) 사업체, 공공행정서비스업(62.8%)과 건설업(45.9%), 경력 10년 이상 집단(40.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5인 미만(7.3%)과 5~29인(18.1%) 사업체, 정보통신업(16%)과 민간서비스업(19.9%), 특수고용·프리랜서(11.3%), 경력 1년 미만 집단(18.8%)은 노조 설치 비율이 낮았다.

[그림 24] 노동조합 설치 비율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서의 노조 가입률, 즉 유노조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49.5%

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노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인 20대(13.8%), 5인 미만 사업체(5.3%), 5~29인 사업체(13.0%), 1년 미만 경력자(12.6%), 정보통신업(7.8%)에서도 유노조 사업장의 가입률은 각각 48.6%, 32.0%, 53.6%, 44.6%, 4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 내 노조의 존재 여부가 노조 가입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말해준다.

[표 8] 유노조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

(단위: %)				
항목	n	노동조합 설치 비율	노조 가입률	유노조 사업장 노조 가입률
전체	8,096	30.6	17.5	49.5
20대	1,408	23.7	13.8	48.6
5인 미만	1,333	7.3	5.3	32.0
5인~29인	2,882	18.1	13.0	53.6
경력 1년 미만	1,077	18.8	12.6	44.6
정보통신업	1,220	16.0	7.8	43.4

- 상대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낮은 집단만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결과는 부록 [표 38]에 제시함

한편, 유노조 사업장은 무노조 사업장(모르겠음 포함)에 비해 임금과 노동조건 전반에서 월등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노조 응답자는 무노조와 비교하여 월 평균 임금(335.6만 원 : 273.6만 원)과 4대 보험 적용률(93.4%~97.3% : 82.9%~87.2%)이 높았다. 또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률(64.3% : 37.2%),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비율(59.6%~61.5% : 26.2%~29%), 휴게시설 설치 비율(70.2% : 52%), 사내 복리후생 지원 비율(16.1%~65% : 4.6%~49%)에서도 유노조와 무노조 사업장 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3권 실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이른바 노조의 임금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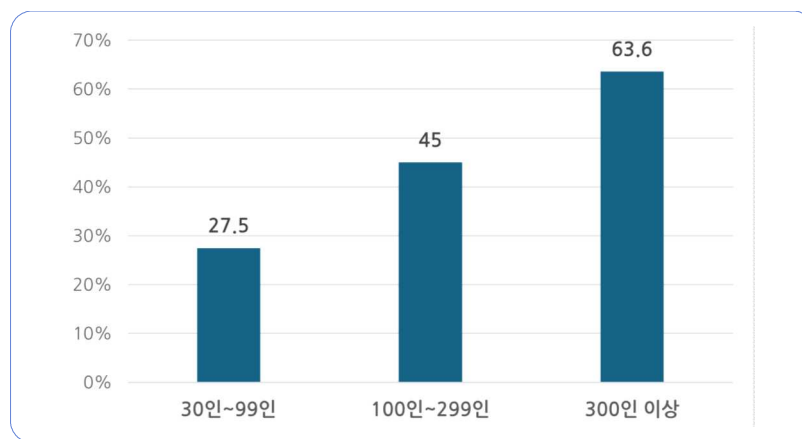
2)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 대표

전체 응답자의 26.9%만이 직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인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30~99인’의 설치 비율은 27.5%, ‘100~299인’은 45%로 나타나 30~299인 사업

6) 다만 1주 노동시간은 더 길며(유노조 43.5시간 : 무노조 41.2시간),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47.5% : 42.7%)은 더 높았다.

체 종사자 중 절반이 넘는 직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도 설치 비율이 63.6%에 그친다는 결과를 종합하면 노사협의회의 실제 설치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노조 사업장 63.9%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무노조는 설치 비율이 고작 10.6%에 그쳐 노조 유무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 비율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

[그림 25] 사업체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 비율



법정 기준인 30인 이상 사업체만 분석함

이어서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는지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만이 근로자대표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근로자대표가 전체 노동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급휴일 사전대체, 보상휴가제, 연차휴가 대체 휴무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는 협의 또는 합의의 주체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규정한다. 그러나 세 명의 노동자 가운데 두 명이 근로자대표가 없다고 답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내용 규정의 결여, 선출 절차나 대표성과 독립성 측면에서의 체계적 결함 등 근로자대표 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와 한계가 지적된 지 오래다. 특히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 점과 규율 사항 모두를 노동조합이 담아내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근로자대표 제도의 개선을 일각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는 부실 이상으로 현실에서 부재한 점,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표 9] 근로자대표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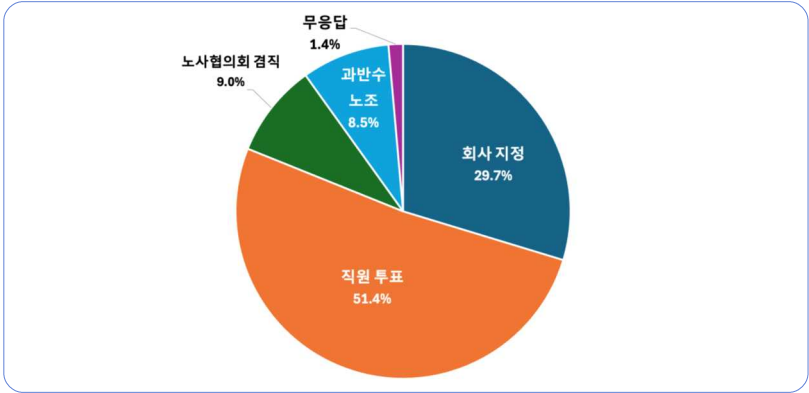
(단위: %)

항목	n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있다	없거나 모른다
계	8,096	31.0	69.0
5인 미만	1,333	11.6	88.4
5인~29인	2,882	20.2	79.8
30인~99인	1,542	31.4	68.6
100인~299인	1,119	47.8	52.2
300인 이상	1,220	62.0	38.0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다음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증폭된다. 근로자대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29.7%는 별도의 선출 과정 없이 회사가 지정한다고 답한 사실이다. 물론 51.4%는 직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하였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주요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 모두 권한 자체도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에서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제시했고, 근로자대표 제도의 개선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진정한 ‘노동 약자’의 보호는 노사협의회나 근로자대표 제도가 아니라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고 더 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하며, 결국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26]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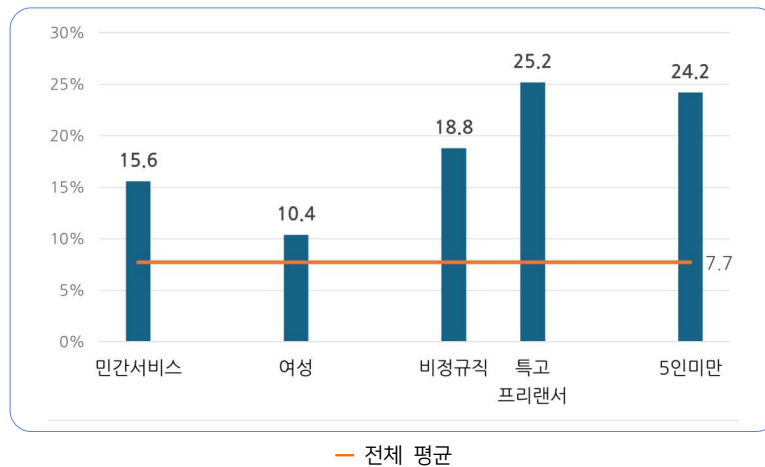
n=2,511

6. 저임금 노동과 작은 사업장

1) 저임금 노동자

이번 조사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7.7%에 해당하는 624명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이다.⁷⁾ [그림 2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특히 높은 집단은 민간서비스업(15.6%), 여성(10.4%), 비정규직(18.8%),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25.2%), 5인 미만 사업체(24.2%) 종사자 등이다. 특히 저임금노동자에 국한하여 비중을 따지면, 민간서비스업은 업종의 26.1%, 특수고용프리랜서는 고용형태의 30.0%를 차지해, 이들 집단은 낮은 임금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그림 27] 저임금 노동자(중위임금 2/3 미만) 비중



[표 10]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비롯한 주요 노동조건을 중위임금 2/3 이상 노동자와 비교한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월 임금은 평균 105.9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4대보험 적용률은 44.6~50.3%,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비율은 34.1%에 그치고 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47.4%는 [그림 20]에 제시한 12개의 직장 복리후생 항목 중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7) 202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6.2%로 OECD 평균인 13.3%보다 높은 수준이다. 본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식 통계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반면, 이번 보고서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의 평균 연령이 모집단에 비해 낮은 점도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주 노동시간이 평균 24.1시간에 불과한 사실은 초단시간 노동이나 호출형 노동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형태가 저임금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안정적인 노동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저임금 노동자 노동실태

구분			n	전체 대비 비중	평균 월 임금	임금 체불 경험	1주 노동 시간	4대보험 적용률(%)				공휴일 휴무	복리후생 전무	노조 설치
				(%)	만원	(%)	시간	국민	건강	고용	산재	%	%	%
전체			624	7.7	105.9	6.9	24.1	45.2	49.4	50.3	44.6	34.1	47.4	8.5
저임금 노동자	업종	건설업	11	1.7	134.6	9.1	34	63.6	63.6	72.7	72.7	54.5	54.5	45.5
		제조업	59	3.4	110.8	6.8	28.8	57.6	55.9	57.6	54.2	39.0	33.9	5.1
		민간서비스	163	15.6	102.1	7.4	23.7	38.7	45.4	45.4	42.3	23.3	49.7	7.4
		보건, 복지	38	6.1	114.9	5.3	24.9	65.8	65.8	76.3	57.9	44.7	26.3	7.9
		운수업	12	7.9	118.8	8.3	24.4	33.3	41.7	41.7	41.7	16.7	25.0	16.7
	성별	남성	104	3.4	107.9	10.6	27.8	51.9	52.9	55.8	49.0	40.4	41.3	12.5
		여성	516	10.4	105.5	6.2	23.4	43.6	48.4	49.0	43.4	32.8	48.6	7.8
		그 외	4	20.0	109.3	0	26.8	75.0	75.0	75.0	75.0	50.0	50.0	0
	고용 형태	정규직	81	1.5	129.4	14.8	31.6	93.8	95.1	97.5	88.9	63.0	16.0	14.8
		비정규	354	18.8	103.6	4.0	23.6	44.6	48.0	53.1	47.2	32.8	47.5	8.5
		특고,프리랜서	131	25.2	103.3	9.2	22.6	23.7	26.7	26.0	22.1	23.7	59.5	6.9
		그 외	58	23.1	93.1	8.6	20.5	29.3	44.8	22.4	17.2	25.9	63.8	3.4
	규모	5인 미만	323	24.2	100.6	7.1	30.0	35.3	41.8	38.1	31.6	26.6	56.3	4.3
		5인~29인	196	6.8	109.4	8.2	23.8	52.6	54.6	58.7	55.1	38.3	41.3	9.7
		30인~99인	51	3.3	111.9	2.0	28.4	58.8	58.8	60.8	56.9	54.9	31.4	11.8
		100인~299인	28	2.5	122.1	7.1	28.8	75.0	78.6	89.3	82.1	39.3	42.9	17.9
		300인 이상	26	2.1	116.4	3.8	27.5	53.8	53.8	76.9	61.5	50.0	19.2	34.6
중위임금 2/3 이상 노동자			7,468	92.3	308.2	9.5	43.4	91.4	93.7	92.3	90.2	68.1	9.9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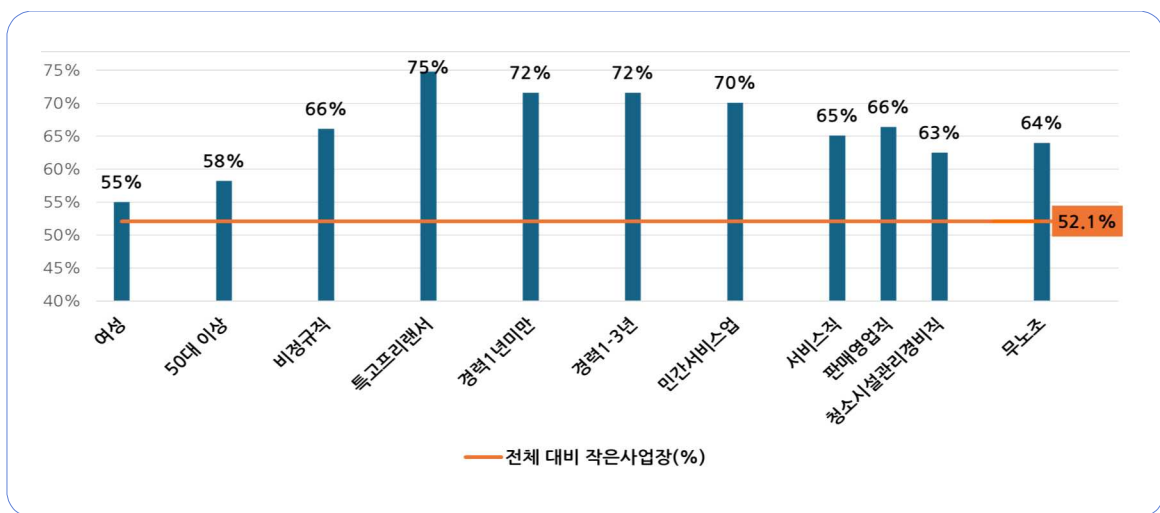
- 공휴일 휴무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무, '복리후생 전무'는 [그림 20]의 12가지 복리후생 항목 모두 지원받지 않음을 의미

2) 작은 사업장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4,215명(52.1%)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3,881, 49.1%)보다 다소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은 사업장 비중이 큰 집단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55.0%, 50대 이상의 58.2%, 비정규직의 66.1%, 특수고용·프리랜서의 74.8%는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또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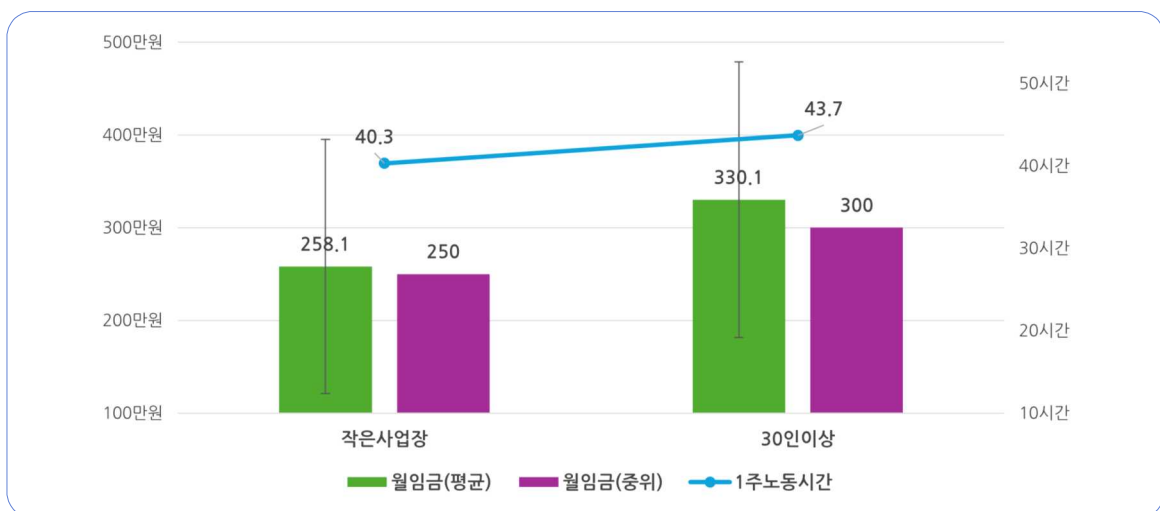
1년 미만의 71.6%와 1~3년의 71.6%는 작은 사업장에 다니며, 민간서비스업의 70.1%는 작은 사업장이다. 직군 중에서는 서비스직(65.1%), 판매·영업직(66.4%), 청소·시설관리·경비직(62.5%)에서 작은 사업장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고령자, 저학력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작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의 비중이 높다고 밝힌 이창근 외(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그림 28] 작은 사업장 비중



n=4,215

[그림 29] 임금, 노동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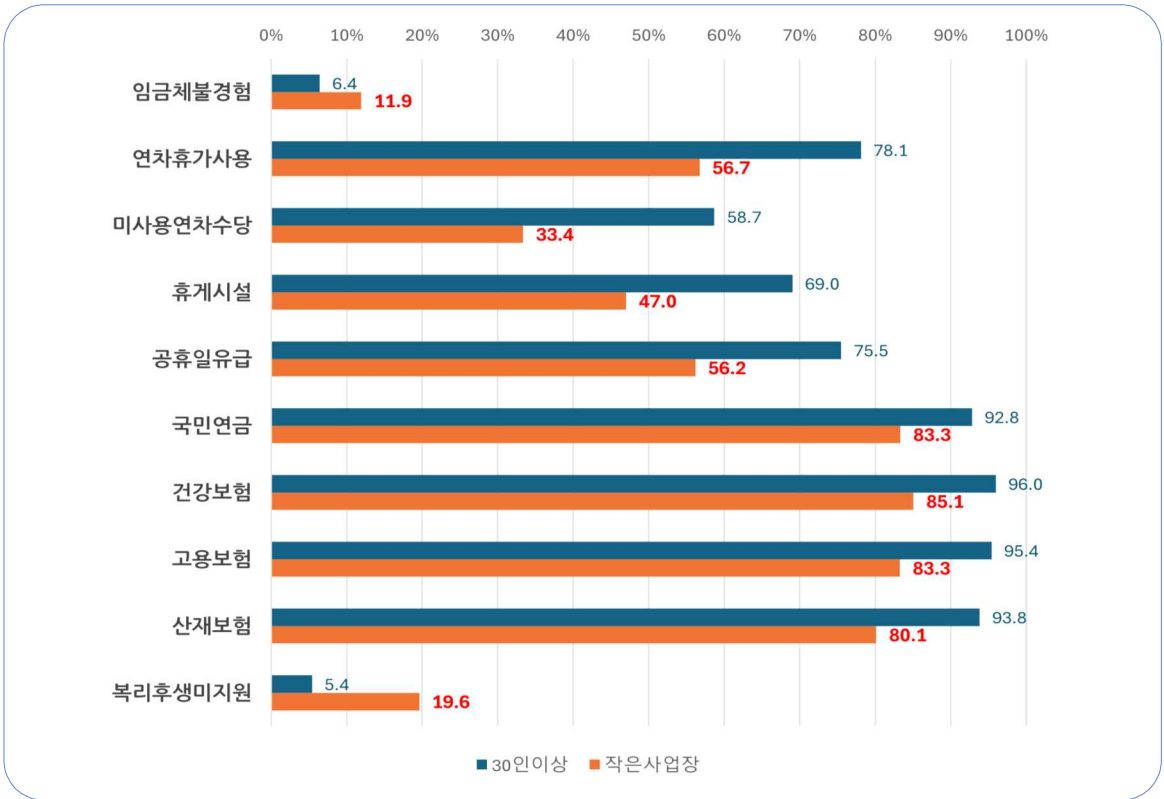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의 조사 결과를 비교한 [그림 29~30]

을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평균 월 임금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330.1만 원)에 비해 작은 사업장은 258.1만 원으로 월 72만 원가량 낮다. 중위값을 비교하더라도 300만 원:250만 원으로 5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본 조사에서 파악한 대부분의 노동조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랐다. 구체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작은 사업장의 노동조건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였다.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6.4%였으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11.9%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복리후생 미지원 비율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이 5.4%였던 반면, 작은 사업장은 19.6%로 크게 높았다.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비율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78.1%였으나, 작은 사업장에서는 56.7%로 낮았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률 역시 58.7%:33.4%, 휴게시설 설치 비율은 69.0%:47.0%,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률은 75.5%:56.2%로, 작은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4대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인데, 30인 이상 사업장이 92.8~96.0%의 가입률을 보였지만, 작은 사업장은 80.1~85.1%에서 그치고 있다.

[그림 30] 노동조건 등 비교



7. 파견, 사내하청

1) 응답자 현황

[표 11]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현황

(단위: %)

항목		구분	파견		(사내)하청	
			명	전체 중 %	명	전체 중 %
계			446	5.5	344	4.2
성별	남성		163	5.3	146	4.7
	여성		283	5.7	198	4.0
	그 외의 성		0	0.0	0	0.0
연령 대	20대		85	6.0	33	2.3
	30대		158	4.3	114	3.1
	40대		132	6.0	152	6.9
	50대 이상		71	9.0	45	5.7
지역	수도권		172	4.8	151	4.2
	비수도권		274	6.1	193	4.3
고용 형태	정규직		120	2.2	67	1.2
	비정규직		326	12.3	277	10.4
규모	5인 미만		58	4.4	49	3.7
	5인~29인		196	6.8	170	5.9
	30인~99인		88	5.7	67	4.3
	100인~299인		64	5.7	39	3.5
	300인 이상		40	3.3	19	1.6
경력	1년 미만		98	9.1	63	5.8
	1-3년		113	7.7	66	4.5
	3-5년		70	4.9	97	6.8
	5-10년		91	5.2	52	3.0
	10년 이상		74	3.1	66	2.8
산업	건설업		27	4.2	64	9.9
	공공행정서비스업		34	5.2	14	2.1
	제조업		60	3.4	97	5.6
	민간서비스업		65	6.2	52	5.0
	교육서비스업		42	5.5	13	1.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5	7.2	7	1.1
	사무·금융업		80	6.7	29	2.4
	운수업		17	11.3	7	4.6
	정보통신업		34	7.1	20	4.2
	그 외		42	5.3	41	5.1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140	3.7	63	1.7
	기술·기능·생산직		97	5.3	155	8.5
	서비스직		127	7.0	87	4.8
	판매·영업직		49	9.4	18	3.5
	청소·시설관리·경비직		33	22.9	21	14.6
노조	유노조		118	4.8	130	5.2
유무	무노조, 잘모름		328	5.8	214	3.8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28	7.4	159	9.2
	산업단지 아님		318	5.0	18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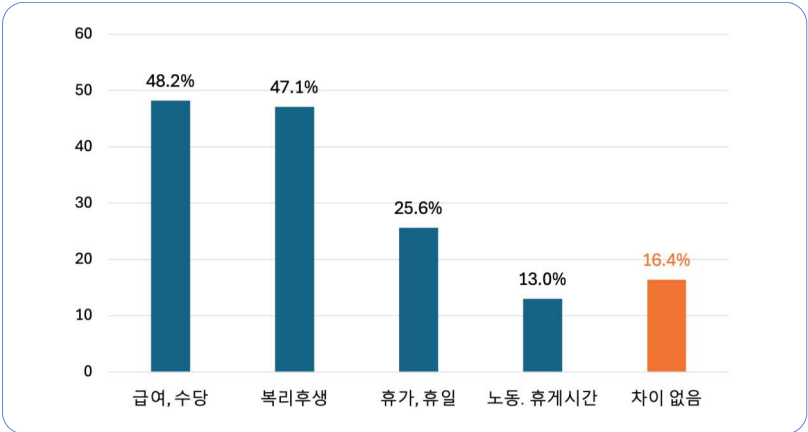
이번 절은 파견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다룬다. 전체 응답자의 5.5%인 446명은 파견 노동자이고, 344명(4.2%) 하청 노동자이다. 비정규직 중 12.3%(326명)은 파견 노동자, 10.4%(277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산업으로 분류하면 파견 노동자는 운수업(11.3%)에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7.1%)이 그 뒤를 이었다. 하청의 경우 건설업(9.9%) 빈도가 가장 높고, 제조업이 5.6%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 청소·시설관리·경비직은 22.9%(33명)가 파견이며, 14.6%(21명)는 하청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단지 유무로 보면 산업단지 소속이 파견, 하청 각각 7.4%, 9.2%로 비산업단지(각각 5.0%, 2.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 파견 노동

① 차별적 처우

[그림 27]은 파견노동자와 동일한 현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노동조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48.2%의 파견노동자는 급여와 수당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고, 복리후생은 47.1%가, 휴가·휴일은 25.6%,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은 13.0%가 정규직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차별적인 금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파견노동자는 고작 16.4%에 불과하여 여전히 파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차별이 만연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31] 파견노동자 처우 차별 실태



각 항목별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함

이러한 차별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예컨대 급여 및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체 파견노동자의 44.8%와 5~29인의 43.4%에서 나타났지만, 100~299인은 65.6%에서 차이를 보였고, 300인 이상은 55.0%가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급여수당 차이 51.7%, 복리후생 차이 58.3%)과 민간서비스업(급여수당 및 복리후생 모두 50.8%), 정보통신업(58.8%, 55.9%)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두드러진다.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를 비교할 시 급여수당의 차별 비율은 비산업단지가 산업단지보다 높았으나, 복리후생의 경우 비산업단지보다 산업단지의 차별 비율이 높다.

[표 12] 파견노동자 차별적 처우 (다중 응답)

(단위: %)

항목	구분	n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급여, 수당	복리후생	휴가, 휴일	노동휴게시간	차이 없음
	계	446	48.2	47.1	25.6	13.0	16.4
규모	5인 미만	58	44.8	34.5	19.0	10.3	27.6
	5인~29인	196	43.4	48.5	25.0	9.2	14.3
	30인~99인	88	45.5	40.9	23.9	14.8	15.9
	100인~299인	64	65.6	54.7	32.8	20.3	10.9
	300인 이상	40	55.0	60.0	30.0	20.0	20.0
산업	건설업	27	48.1	37.0	22.2	14.8	22.2
	공공행정서비스업	34	50.0	55.9	20.6	14.7	17.6
	제조업	60	51.7	58.3	18.3	10.0	8.3
	민간서비스업	65	50.8	50.8	26.2	15.4	18.5
	교육서비스업	42	47.6	42.9	19.0	11.9	1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5	33.3	44.4	42.2	8.9	13.3
	사무·금융업	80	47.5	37.5	30.0	8.8	17.5
	운수업	17	41.2	52.9	35.3	17.6	0.0
	정보통신업	34	58.8	55.9	23.5	20.6	8.8
	그 외	42	50.0	40.5	19.0	16.7	31.0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140	52.9	43.6	19.3	11.4	22.1
	기술·기능·생산직	97	49.5	50.5	24.7	14.4	15.5
	서비스직	127	49.6	47.2	30.7	14.2	16.5
	판매·영업직	49	28.6	46.9	28.6	10.2	6.1
	청소·시설관리·경비직	33	48.5	51.5	30.3	15.2	9.1
노조	유노조	118	48.3	54.2	24.6	13.6	14.4
유무	무노조, 잘 모름	328	48.2	44.5	25.9	12.8	17.1
산업	산업단지 근무	128	37.5	51.6	25.8	10.2	13.3
단지	산업단지 아님	318	52.5	45.3	25.5	14.2	17.6

② 파견 기간

이번 조사 결과, 파견 금지 업무와 최대 파견 기간에 대한 법적 위반 요소가 상당수의 파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는 파견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27명이 파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표 13] 파견 기간

(단위: %)

항목		구분	n	파견 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3개월~ 1년 미만	1년~ 2년 미만	2년 이상
계		446	15.2	28.9	21.1	17.3	17.5	
업종 및 직종	건설업	27	14.8	37.0	22.2	7.4	18.5	
	제조업× 기술,기능,생산직	36	25.0	38.9	13.9	16.7	5.6	
	사무·관리·행정직	140	15.0	20.0	23.6	20.7	20.7	

[표 14] 파견 기간 초과 시 합의 여부

(단위: %)

항 목	구분	파견기간	n	파견 기간 초과 시 합의 여부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와 합의	파견사업주 와 합의	사용사업주 와 합의	무응답	
			378	23.0	48.9	18.8	6.9	2.4	
전체			3개월~1년 미만	223	19.3	50.2	20.2	6.7	3.6
			1년~2년 미만	77	26.0	54.5	14.3	5.2	0
			2년 이상	78	30.8	39.7	19.2	9.0	1.3
업 종 및 직 종	건설업× 모든 직종		23	8.7	60.9	13.0	13.0	4.3	
		3개월~1년 미만	16	6.3	62.5	18.8	6.3	6.3	
		1년~2년 미만	2	5	0	0	50.0	0	
		2년 이상	5	0	80.0	13	20.0	4.3	
	제조업× 기술,기능,생산직		27	29.6	48.1	11.1	3.7	7.4	
		3개월~6개월 미만	14	42.9	35.7	7.1	0	14.3	
		6개월~1년 미만	5	0	80.0	20.0	0	0	
		1년~2년 미만	6	33.3	33.3	16.7	16.7	0	
		2년 이상	2	0	100	0	0	0	
	사무·관리·행정직		119	21.8	54.6	17.6	4.2	1.7	
		3개월~1년 미만	60	13.1	59.0	19.7	6.6	1.6	
		1년~2년 미만	29	27.6	55.2	13.8	3.4	0	
		2년 이상	28	34.5	44.8	17.2	0	3.4	

둘째,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6명의 응답자 역시 파견 노동자로 확인되었다.⁸⁾ 물론, 출산, 질병, 부상 등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일시적·간헐

8) 산업을 제조업으로, 직업을 기술·기능·생산직으로 응답

적인 인력 수요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 파견 기간은 3개월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개월이다. 하지만 36명의 응답자 중 75%가 파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으며, 1년에서 2년 미만인 응답자의 33.3%는 파견 기간 초과에 대해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셋째, 전 업종을 통틀어 파견 기간과 관련한 법 위반이 많다고 판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견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파견 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인 경우 26%, 2년을 초과한 경우 30.8%가 아무런 합의 없이 파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다수의 파견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상황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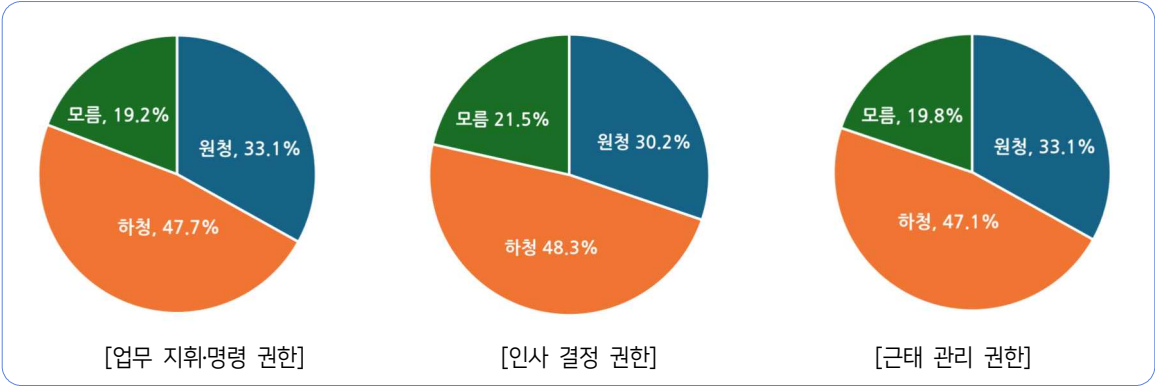
3) (사내) 하청

① 사용종속관계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이 실제로는 위장도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법한 도급계약이라면,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업체 노동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인사와 노무 관리 역시 도급인의 개입 없이 수급인이 처리해야 하며, 도급인의 사업에 수급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33.1%가 업무 지휘·명령 권한이 도급인(원청)에 있다고 답했으며, 30.2%는 인사 결정 권한이, 33.1%는 근태 관리 권한이 도급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장도급인 현장에서 불법적인 파견과 연결되며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세 명 중 한 명꼴이라는 셈이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하청 현장에서 불법적인 위장도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장도급 사례는 특히 건설업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 부록 [표 40]에 따르면, 건설업 하청노동자의 51.6%는 인사 결정 권한이 원청에게 있으며, 42.2%는 업무 지휘·명령 권한이, 53.1%는 근태 관리 권한이 원청에게 있다고 답했다. 즉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청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아웃소싱을 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행은 위법적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그림 32]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종속 관계



② 차별적 처우

[표 16]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적 처우 (다중 응답)

(단위: %)

항목		구분	n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원청 노동자와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급여, 수당	복리후생	휴가, 휴일	노동휴게시간	차이 없음
계			344	50.9	48.3	28.5	16.0	15.1
규모	5인 미만	49	55.1	36.7	20.4	16.3	16.3	
	5인~29인	170	36.5	51.8	27.1	13.5	13.5	
	30인~99인	67	61.2	49.3	37.3	17.9	16.4	
	100인~299인	39	71.8	48.7	33.3	20.5	20.5	
	300인 이상	19	89.5	42.1	21.1	21.1	10.5	
산업	건설업	64	26.6	73.4	25.0	10.9	6.3	
	공공행정서비스업	14	28.6	50.0	28.6	7.1	35.7	
	제조업	97	51.5	47.4	36.1	14.4	17.5	
	민간서비스업	52	57.7	50.0	32.7	15.4	11.5	
	교육서비스업	13	53.8	38.5	30.8	30.8	23.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	28.6	28.6	14.3	14.3	28.6	
	사무·금융업	29	72.4	31.0	27.6	13.8	13.8	
	운수업	7	57.1	28.6	28.6	28.6	14.3	
	정보통신업	20	55.0	40.0	25.0	25.0	15.0	
	그 외	41	70.7	34.1	14.6	22.0	17.1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63	63.5	47.6	20.6	11.1	15.9	
	기술·기능·생산직	155	44.5	52.3	29.0	18.7	14.8	
	서비스직	87	58.6	36.8	31.0	12.6	13.8	
	판매·영업직	18	22.2	72.2	22.2	11.1	5.6	
	청소·시설관리·경비직	21	52.4	47.6	42.9	28.6	28.6	
노조 유무	유노조	130	35.4	60.0	30.0	13.1	6.9	
	무노조, 모름	214	60.3	41.1	27.6	17.8	20.1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59	37.7	57.2	24.5	10.1	11.9	
	산업단지 아님	185	62.2	40.5	31.9	21.1	17.8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거의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원청 노동자와 노동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급여·수당의 차이 50.9%, 복리후생의 차이 48.3%, 휴가 및 휴일의 차이 28.5%, 노동시간·휴게시간의 차이 16.0%로 나타났다. 차이가 없다고 답한 하청노동자는 15.1%에 불과했다. 또 사업체규모로 볼 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89.5%가 급여·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사무·관리·행정직은 63.5%가 급여와 수당에서 원청 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받는다고 답하였다.

8. 노동정책

1)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표 17]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순위	노동정책 의제	빈도(명)	%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	2,636	32.1
2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2,171	26.4
3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2,057	25.1
4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	2,014	24.5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	1,786	21.8
6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 노동안전 보장	1,653	20.1
7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	1,545	18.8
8	특고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1,357	16.5
9	5인 미만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199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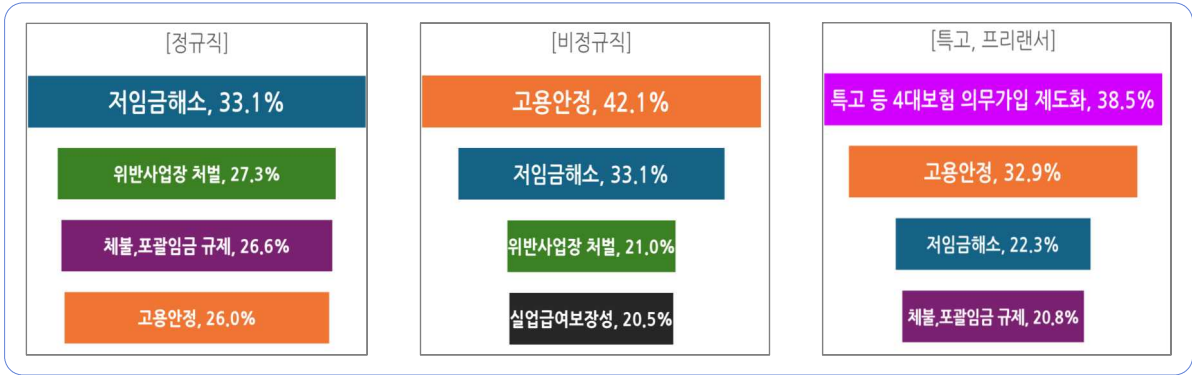
-다중응답 (2개 보기에 응답) 분석 -비취업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n=8,209)

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로 나타났다. [표 17]에 나와 있는 9개의 노동정책 의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의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물었는데, 1순위로 저임금 해소가 꼽힌 것이다(32.1%).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은 26.4%의 응답자가 선택한 2순위 의제였다. 이어서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5.1%),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24.5%),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21.8%),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 노동안전 보장’(20.1%), ‘노동조합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18.8%),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화’(16.5%), ‘5인 미만 사업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4.6%) 순으로 응답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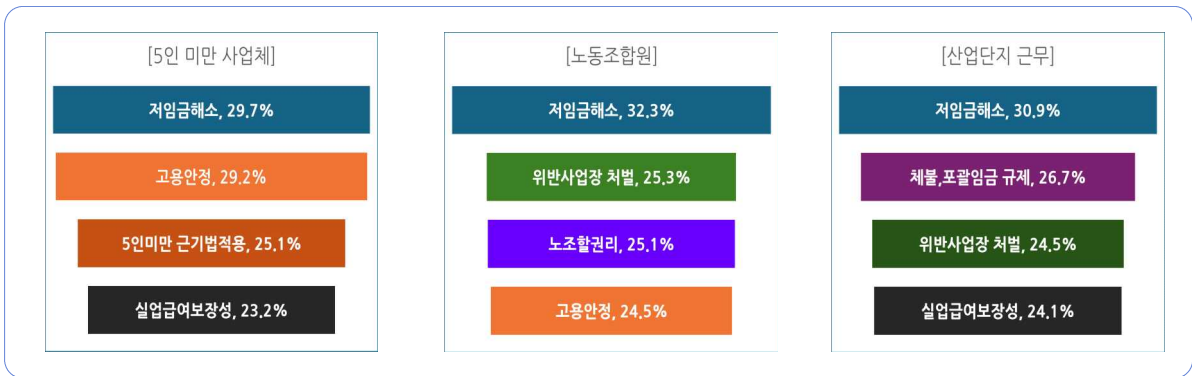
도가 높았다.

응답 결과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저임금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서는 각각 ‘고용안정’과 ‘특고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제도화’가 가장 빈번하게 나온 응답이었다. 이외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경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네 번째로 높은 응답률(20.5%)을 기록했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32.9%)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다. 이는 고용 상태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3]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1~4순위 : 고용형태별



[그림 34]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1~4순위 : 5인미만, 노동조합원, 산업단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응답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의제는 ‘저임금 해소’(29.7%)였으나, ‘고용안정’(29.2%)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5.1%),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23.2%)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주요한 관심사임을 보여주

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1위는 ‘저임금 해소’(30.9%)로 전체 결과와 동일했지만, 2위는 ‘체불·포괄임금 규제’(26.7%)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비산업단지 노동자보다 임금체불 경험률과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응답자들 중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의제가 ‘노조할 권리 보장’(25.1%)이라는 사실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된 노동조합 탄압과 노조에 대한 편향적 태도의 문제를 보여준다.

2)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노동정책

[표 18]은 노동자들이 지방자치 단체(시·도)에 바라는 주요 노동정책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0%가 ‘생활임금 확대 적용, 저임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노동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16.4%), ‘노동안전, 건강권 강화’를 위한 예방과 관리’(16.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시설 확대’(9.5%)와 ‘노동상담 및 노동권 교육 지원’(9.3%)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생활임금과 같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와 안전, 교육 등 포괄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8]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바라는 노동정책

순위	노동정책	빈도(명)	%
1	생활임금 확대 적용, 저임금 해소	2,214	27.0
2	노동자 편의시설, 복지시설 확충	1,350	16.4
3	노동안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과 관리	1,338	16.3
4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시설 확대(공동휴게실, 건강증진시설 등)	782	9.5
5	노동상담, 노동관련 교육 지원	762	9.3
6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 지원	712	8.7
7	지역 노-사-정 대화와 협력 추진	533	6.5
8	공공 취업알선센터 운영	518	6.3

-다중응답 (2개 보기에 응답) 분석 -비취업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n=8,209)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성별, 연령대,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30.2%)이 남성(21.7%)에 비해 ‘생활임금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별 임금 격차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노동안전 예방과 관리’(18.9%)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정규직(25.2%)보다 비정규직(31.6%)에서 ‘생활임금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수고용·프리랜서는 ‘노동안전 예방관리’(18.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생활임금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과, 300인 이상 사업체가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 지원’(10.0%)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또 노동조합원은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생활임금 확대 요구는 낮지만, 편의·복지시설 확충이나 노동안전 예방관리, 지역 노사정 대화와 협력 추진에 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바라는 노동정책 II

단위: %

구분	n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생활임금 확대	편의·복지시설 확충	노동안전 예방관리	산업단지 지원확대	노동상담 노동교육	상병수당 유급병가	지역 노사정 대화협력	공공 취업알선센터
남성	3,128	21.7	15.5	17.3	11.8	11.2	8.9	8.8	4.8
여성	5,061	30.2	17.0	15.7	8.1	8.1	8.5	5.1	7.3
그 외의 성	20	25.0	15.0	10.0	5.0	10.0	20.0	10.0	5.0
20대	1,436	28.9	15.3	14.4	10.3	8.7	9.7	6.3	6.3
30대	3,722	24.2	16.1	16.0	10.7	10.6	9.6	7.3	5.5
40대	2,245	28.3	17.8	17.1	8.0	7.9	7.1	6.3	7.4
50대 이상	806	32.6	16.4	18.9	6.8	8.2	6.6	3.7	6.8
수도권	3,616	25.8	16.8	16.4	9.6	9.9	9.4	6.1	6.0
비수도권	4,593	27.9	16.1	16.2	9.5	8.8	8.1	6.8	6.5
정규직	5,436	25.2	17.3	16.2	10.1	9.5	9.5	6.6	5.6
비정규직	1,887	31.6	13.9	16.2	8.7	8.8	7.0	6.6	7.2
특고, 프리랜서	520	26.5	17.5	18.3	7.5	9.8	7.3	5.4	7.7
그 외	366	29.8	15.3	15.8	8.2	7.9	6.3	5.7	10.9
5인 미만	1,385	30.0	15.9	15.1	7.6	9.2	7.1	5.6	9.7
5인~29인	2,920	27.3	16.0	16.0	10.0	9.9	8.5	6.6	5.8
30인~99인	1,551	26.6	16.6	16.4	10.5	8.8	8.8	6.3	5.9
100인~299인	1,130	26.2	14.3	18.0	10.4	9.7	9.6	7.7	4.2
300인 이상	1,223	24.0	19.9	16.8	8.5	8.2	10.0	6.3	6.3
노동조합원	1,426	21.4	17.6	19.5	9.9	9.9	7.6	9.6	4.5
비조합원	6,783	28.1	16.2	15.6	9.5	9.2	8.5	6.3	6.7
산업단지 근무	1,748	24.3	17.0	15.6	13.0	8.9	8.9	7.7	4.6
산업단지 아님	6,461	27.7	16.3	16.5	8.6	9.4	8.6	6.2	6.8

- 응답 빈도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우측 정렬함 가: 생활임금 확대 적용, 저임금 해소, 나: 노동자 편의시설, 복지시설 확충, 다: 노동안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과 관리, 라: 산업단지 노동자 지원시설 확대(공동휴게실, 건강증진시설 등), 마: 노동상담, 노동관련 교육 지원, 바: 상병수당 또는 유급병가 지원, 사: 지역 노·사·정 대화와 협력 추진, 아: 공공 취업알선센터 운영

3) 노동정책: 소결

중앙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관되게 표출되는 점은 저임금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줄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급기야 2025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7%에

그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생활임금도 인상이 정체됨과 동시에 적용대상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가령 서울시 생활임금은 최근 5년간 8.6%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이재, 2024).

다음으로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에는 고용안정 정책과 더불어 위법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처벌, 포괄임금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용안정은 특히 비정규직에서 요구가 높고, 전통적인 고용 관계 밖의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더 촘촘한 정책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전혀 없는 유일한 정부”(한남진, 2024)는 오히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규모를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의 기준을 완화하고 집권 내내 실업급여 제도를 축소하고자 시도하면서 고용의 안정과 취약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또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은 지방정부가 편의·복지시설을 더 많이 구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지역의 노동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역할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9. 노동조합

1) 노동조합에 바라는 역할과 기능

[표 20] 노조에 가입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순위	하고 싶은 것	빈도(명)	%
1	주택자금 대출, 식대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사내 복지제도 요구	2,692	39.7
2	사장과 임금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	2,239	33.0
3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보장 요구	2,168	32.0
4	공정한 인사와 승진, 성과 배분 요구	2,066	30.5
5	자유로운 휴가(연차) 사용 요구	2,060	30.4
6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1,360	20.1
7	회사의 경영실적 등 정보 공개	981	14.1

-다중응답 (2개 보기에 응답) 분석. -비조합원 응답(n=6,783)을 분석함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택자금 대출, 식대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사내 복지제도 요구’(39.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다음

으로는 ‘사측과 임금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33.0%)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안전 보장 요구’(32.0%)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공정한 인사와 승진, 성과 배분 요구’(30.5%)와 ‘자유로운 휴가(연차) 사용 요구’(25.4%)도 중요한 활동으로 꼽혔다. 이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복지 및 임금, 그리고 노동 안전과 관련된 권리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교섭’이 33.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권 확대’(26.2%)와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활동’(25.3%)이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또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 안전보건 활동’(23.4%)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22.3%)에 대한 기대도 컸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1] 노동조합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순위	하고 싶은 것	빈도(명)	%
1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교섭	2,740	33.4
2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권 확대	2,147	26.2
3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2,074	25.3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 안전보건 활동	1,923	23.4
5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해소	1,830	22.3
6	불평등, 사회양극화 해소	1,617	19.7
7	노동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1,553	18.9
8	노동상담·법률지원·노동권 교육	1,509	18.4
9	기후·디지털 전환 등 노동자를 위한 산업정책 주도	1,025	12.5

-다중응답 (2개 보기에 응답) 분석 (n=8,209)

2)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5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보호 및 권익 향상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동의 정도가 컸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41.5%,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고(60.0%가 동의⁹⁾),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59.6%가 동의). 모든 문항에서 ‘그저 그렇다’를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을 합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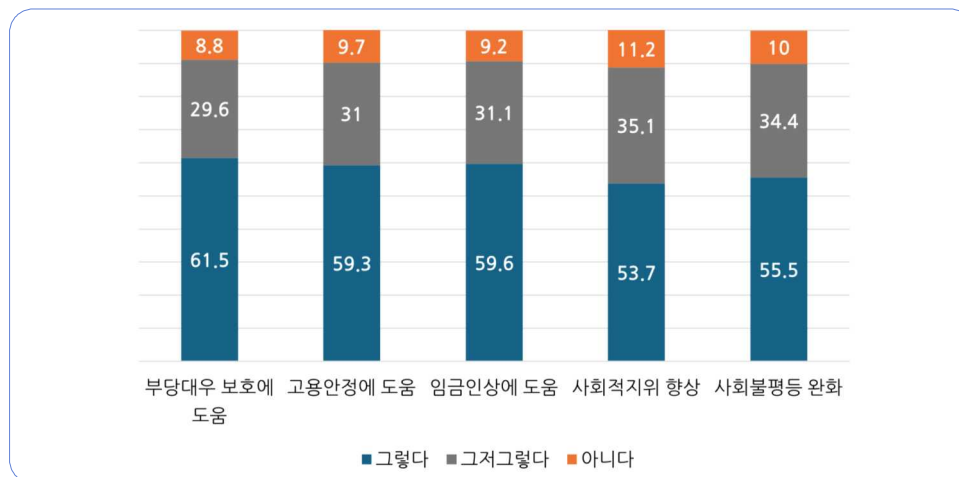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4.5%와 55.5%에 달했으며, 이 또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각각 11.2%와 10.1%에 불과했다. 부록 [표 44~45]에서 미조직 노동자(비조합원)에 한한 응답 값을 보더라도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각각 8.9%, 9.8%, 9.1%, 11.5%, 10.0%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¹⁰⁾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	매우 그렇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2	6.6	29.6	41.5	20.0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	2.5	7.2	31.0	40.2	19.1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된다	2.4	6.8	31.1	39.7	19.9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3.1	8.1	35.1	34.6	19.1
노동조합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2.9	7.1	34.4	37.3	18.2

-n=8,209

[그림 35]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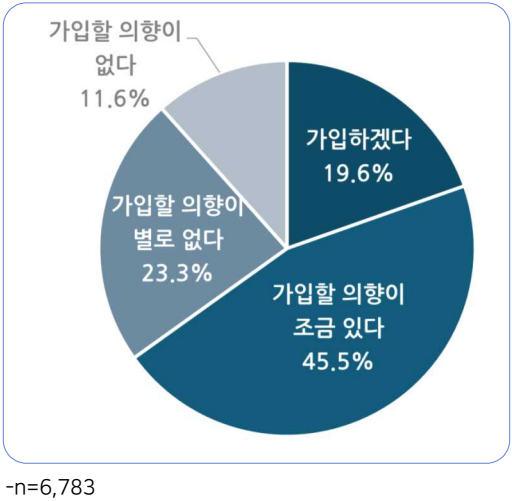
9)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런편'의 응답 비율을 합산

10) 위 세 문항은 한국노동패널(KLIPS)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 포함되는 노조도구성(수단성) 척도이며, 나머지는 KLIPS가 8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룬 문항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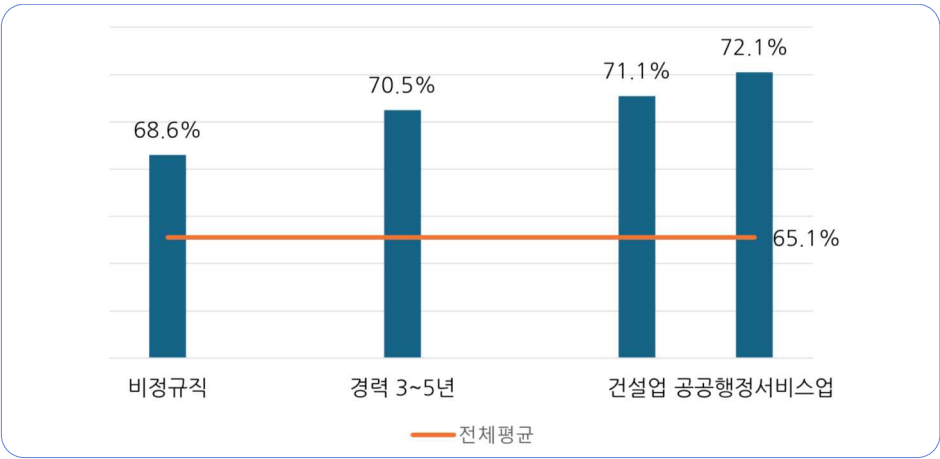
3)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의향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6,783명 중에서 65.1%는 앞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가입하겠다’ 19.6%, ‘가입할 의향이 조금 있다’ 45.5%, ‘가입할 의향이 별로 없다’ 23.3%, ‘가입할 의향이 없다’ 11.6%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 가입 의향은 정규직(64.6%)보다 비정규직(68.6%)이 크고, 경력 구간 중에서는 3~5년 경력이 70.5%로 가장 컸다. 산업으로 보면, 공공행정서비스업(72.1%)과 건설업(71.1%) 종사자의 가입 의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6] 노조 가입 의향 (비조합원)



[그림 37] 노조 가입 의향이 큰 집단



10. 결론

이 보고서는 전국 8,209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과 주요 노동조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생각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 아리셀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파견의 실태를 파악하고, 항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저임금·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았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함의와 주요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낮은 임금 문제가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져서 저소득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이 우려된다.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 확대와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 저임금 해소 정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둘째, 포괄임금제의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절반 이상에게 적용되며, 장시간 무임금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노동자도 열 명 중 한 명에 달해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휴게시설 설치 비율 역시 낮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조사 응답자들은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셋째, 현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약자로, 조직노동은 강자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갇혀 근로자 이음센터 활성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의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미조직 노동자의 65.1%가 노동조합 가입 의향을 보이는 등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대한 기대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조 조직이 낮은 분야에서도 사업장 노조 설치 유무가 가입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며,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노동조합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을 더 많이 조직하기 위한 '노조할 권리' 보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넷째,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에 관한 분석 결과, 불허된 업종에 파견사업이 운영되고 파견 기간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견 노동자의 80% 이상이 정규직과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의 3분의 1은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인사 관리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 위장도급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분별한 외주화와 법적 규제 위반은 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적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파견업종 확대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는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다섯째,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비임금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이 절실하며, 저임금·작은 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조사에서 불안정·취약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으며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임금 수급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분절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엉뚱하게 개혁의 과녁을 조직노동에만 맞추고 있다. 노동계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 갱신 기대권 및 고용승계기대권의 입법화, 비임금노동자의 오분류 문제 해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등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장 내 노동자 복지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복리후생 혜택은 제한적이며, 특히 사내 복지제도의 미비가 주요 불만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노동자들은 지방정부에 생활임금 확대, 편의·복지시설 확충, 노동안전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휴게·건강증진 시설의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단체협약 효력 확장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같은 노사관계 개선 방안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남우근(2024).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in 김성혁 · 김장호 · 남우근 · 박영민 · 정경윤, 대전환 시대 노동운동 진단. 민주노총 총서, 2024-02.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 · 박종식 · 이승윤 · 박주영(2020).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정책대안: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민주노총 총서, 2020-03. 민주노동연구원.

[언론 기사]

이재(2024.07.22). “아쉬운 최저임금, 이제는 생활임금”.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91>

한남진(2024.08.23).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역대 정부 중 ‘최악’ 가능성”.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520935?ref=naver>

부록: 통계표

[표 23] 취업자 산업·직업별 고용형태

항목		구분	n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사업주· 자영	기타
계		8,096	5,436	1,887	520	182	71	
산업	건설업	647	68.5	25.7	3.7	1.7	0.5	
	공공행정서비스업	658	67.5	29.0	2.1	0.9	0.5	
	제조업	1,743	79.7	17.2	1.7	1.1	0.3	
	민간서비스업	1,046	52.0	35.8	7.6	3.9	0.8	
	교육서비스업	761	51.9	26.5	18.8	2.4	0.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4	71.8	21.0	5.0	1.1	1.1	
	사무·금융업	1,189	76.8	17.0	4.5	0.9	0.8	
	운수업	151	49.7	32.5	9.9	7.3	0.7	
	정보통신업	476	77.7	11.3	8.6	1.9	0.4	
	그 외	797	51.6	27.5	11.3	6.0	3.6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2	79.5	16.3	3.0	0.6	0.6	
	기술·기능·생산직	1,820	68.4	25.0	4.9	1.3	0.4	
	서비스직	1,807	50.7	31.3	12.3	4.0	1.7	
	판매·영업직	520	40.7	30.9	16.1	11.1	1.2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3	26.4	59.7	6.9	3.5	3.5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2	74.2	21.4	2.8	1.3	0.4	
	산업단지 아님	6,360	65.2	23.8	7.4	2.5	1.0	

- 주: 취업자는 고용형태에 대한 응답에서 정규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시기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기타에 해당하며, 무직은 제외함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표 24] 취업자 현황 교차표

(단위: %)

항목		구분	n	고용형태					업종										직종					산업단지	
				정규 직	비정 규직	특고 프리 랜서	사업 주· 자영	기타	건설 업	공공 행정· 공공 서비스 업	제조 업	민간 서비스 업	교육 서비스 업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업	사무 금융 업	운수 업	정보 통신 업	그 외	사무 관리 행정	기술 기능 생산	서비 스	판매 업	청소· 시설 관리· 경비	유	무
계			8,096	67.1	23.3	6.4	2.2	0.9	8.0	8.1	21.5	12.9	9.4	7.7	14.7	1.9	5.9	9.8	47.0	22.5	22.3	6.4	1.8	21.4	78.6
성별	남성	3,096	71.8	19.8	5.3	2.5	0.6	14.3	7.4	29.4	11.6	5.1	3.4	11.4	2.6	7.6	7.1	37.5	36.0	16.6	7.5	2.4	29.3	70.7	
	여성	4,980	64.2	25.6	7.1	2.1	1.0	4.1	8.6	16.6	13.7	12.1	10.4	16.8	1.4	4.8	11.5	52.9	14.0	25.9	5.8	1.4	16.4	83.6	
	그 외	20	75.0	10.0	15.0	0.0	0.0	5.0	5.0	30.0	15.0	5.0	0.0	5.0	0.0	20.0	15.0	35.0	45.0	15.0	5.0	0.0	30.0	70.0	
연령 대	20대	1,408	68.9	24.1	4.8	1.1	1.1	5.2	8.7	22.6	12.4	7.7	8.4	16.2	1.8	8.8	8.2	46.2	24.4	22.3	5.9	1.2	23.1	76.9	
	30대	3,687	72.9	19.7	5.7	1.4	0.3	9.8	8.5	21.6	12.3	9.3	8.0	15.2	1.5	5.6	8.1	51.6	21.7	20.1	5.6	1.0	21.2	78.8	
	40대	2,212	62.0	26.0	7.4	3.3	1.3	7.6	7.3	21.7	13.5	10.8	6.3	14.2	2.3	4.6	11.8	43.9	22.8	23.9	7.2	2.2	21.6	78.4	
	50대+	789	51.5	31.3	10.0	5.2	2.0	5.6	7.9	19.0	15.5	8.7	9.1	11.3	2.4	5.3	15.2	35.5	21.8	28.4	9.0	5.3	19.0	81.0	
지역	서울	3,042	74.3	18.6	5.1	1.6	0.3	10.4	7.5	16.4	13.2	7.8	6.4	19.1	1.2	8.9	9.0	55.8	19.5	18.1	5.6	1.2	18.9	81.1	
	부산	604	62.3	27.5	6.3	3.3	0.7	9.6	7.6	23.5	12.4	9.8	6.1	14.6	2.5	2.3	11.6	48.7	22.2	21.4	6.1	1.7	24.0	76.0	
	대구	344	61.6	26.5	9.6	1.7	0.6	8.7	9.0	22.7	15.7	9.6	8.1	14.0	2.0	1.5	8.7	43.6	23.0	24.7	7.0	1.7	24.7	75.3	
	인천	539	61.4	28.0	7.1	2.4	1.1	6.9	6.5	26.2	13.7	8.2	7.1	15.6	3.3	3.2	9.5	40.8	25.4	24.5	6.7	2.6	26.7	73.3	
	광주	281	70.5	20.3	6.0	1.4	1.8	4.3	7.1	19.6	14.2	6.8	10.7	10.0	2.1	17.1	8.2	30.6	21.7	37.0	8.2	2.5	20.6	79.4	
	대전	497	60.0	25.8	10.5	2.4	1.4	2.6	10.5	17.9	14.3	11.9	11.7	14.3	1.6	5.0	10.3	38.8	18.3	29.2	11.1	2.6	18.3	81.7	
	울산	221	64.7	22.6	8.1	2.7	1.8	8.6	6.3	33.9	8.1	7.7	9.0	10.0	2.7	3.2	10.4	35.3	33.9	20.4	8.1	2.3	39.4	60.6	
	세종	73	57.5	28.8	4.1	6.8	2.7	4.1	13.7	12.3	11.0	15.1	15.1	21.9	2.7	0.0	4.1	43.8	19.2	24.7	8.2	4.1	23.3	76.7	
	경기	1,283	63.5	25.2	7.4	2.4	1.5	6.2	7.2	26.3	12.9	12.9	6.9	11.3	1.4	4.2	10.7	44.5	23.8	23.1	6.9	1.7	18.6	81.4	
	강원	113	66.4	23.0	8.8	0.0	1.8	8.0	12.4	18.6	13.3	10.6	9.7	16.8	1.8	3.5	5.3	41.6	18.6	30.1	4.4	5.3	16.8	83.2	
	충북	226	70.4	20.8	5.3	2.2	1.3	8.8	11.5	30.1	6.6	10.2	7.1	7.1	4.4	2.7	11.5	36.3	38.1	18.1	5.3	2.2	30.1	69.9	
	충남	159	61.0	28.9	6.3	2.5	1.3	5.7	6.3	34.6	9.4	10.7	8.8	8.2	3.1	2.5	10.7	43.4	27.7	22.6	5.7	0.6	24.5	75.5	
	전북	130	62.3	28.5	3.8	3.8	1.5	5.4	16.2	13.8	11.5	6.9	17.7	6.9	1.5	4.6	15.4	35.4	23.8	28.5	8.5	3.8	15.4	84.6	
	전남	77	57.1	33.8	3.9	5.2	0.0	9.1	9.1	13.0	16.9	11.7	5.2	9.1	7.8	2.6	15.6	32.5	26.0	36.4	5.2	0.0	15.6	84.4	
	경북	192	56.8	33.3	4.7	4.7	0.5	3.6	10.9	29.7	15.6	10.9	9.9	6.8	2.1	1.0	9.4	41.1	25.5	27.1	3.6	2.6	27.6	72.4	
	경남	283	61.1	27.9	7.8	2.5	0.7	6.0	7.4	30.4	10.6	8.8	10.6	10.2	2.1	3.5	10.2	43.5	26.9	21.9	5.3	2.5	29.0	71.0	
	제주	32	71.9	25.0	0.0	3.1	0.0	9.4	28.1	3.1	18.8	0.0	9.4	6.3	0.0	6.3	18.8	40.6	15.6	37.5	6.3	0.0	0.0	100	

- 주: 취업자는 고용형태에 대한 응답에서 정규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시·기간제, 파견, 용역, 사내하청, 일용직), 특수고용·프리랜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기타에 해당하며, 무직은 제외함

[표 25] 최근 3개월 평균 월 임금(세전)

항목	구분	n	임금(만원)			임금 구간 (%)					
			월 평균	표준 편차	중위	150만 원미만	150~ 249만	250~ 299만	300~ 449만	450만 원이상	χ^2
계		8,092	292.6	147.27	260	5.6	30.3	22.9	31.9	9.2	
성별	남성	3,095	334.7	150.67	300	2.2	18.4	20.7	43.7	15.1	***
	여성	4,977	266.4	138.54	250	7.8	37.7	24.3	24.6	5.6	
	그 외의 성	20	300.3	210.81	245	15.0	35.0	10.0	25.0	15.0	
연령 대	20대	1,407	249.6	77.97	250	5.3	43.1	30.4	19.5	1.6	***
	30대	3,687	293.9	121.91	280	3.6	27.1	24.6	38.4	6.3	
	40대	2,209	315.3	197.86	280	7.5	26.8	18.2	31.5	16.0	
	50대 이상	789	299.8	166.75	250	10.5	32.4	14.4	24.8	17.7	
지역	수도권	3,579	306.1	162.05	280	3.8	27.7	23.8	34.3	10.5	***
	비수도권	4,513	281.9	133.43	250	7.1	32.4	22.2	30.0	8.3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322.4	152.23	300	0.8	23.2	24.3	39.8	11.9	***
	비정규직	2,656	231.5	114.43	220	15.5	44.9	20.0	15.7	3.8	
규모	5인 미만	1,332	223.2	108.25	216	18.5	44.8	17.5	16.0	3.2	***
	5인~29인	2,880	274.2	145.85	250	4.6	34.7	28.6	27.2	4.9	
	30인~99인	1,542	303.9	143.12	280	2.5	25.6	24.7	39.6	7.6	
	100인~299인	1,119	317.7	117.59	300	1.8	21.9	22.5	42.8	11.0	
	300인 이상	1,219	374.5	169.85	330	1.6	17.7	13.3	40.9	26.6	
경력	1년 미만	1,077	212.0	81.76	220	16.1	53.6	18.8	10.4	1.1	***
	1-3년	1,472	245.1	89.12	240	7.9	42.5	28.7	19.0	1.9	
	3-5년	1,428	271.0	138.85	250	4.0	33.7	33.1	25.9	3.4	
	5-10년	1,746	302.5	135.06	280	2.5	24.5	26.1	39.6	7.4	
	10년 이상	2,369	364.5	176.59	330	2.7	14.5	12.7	47.7	22.4	
산업	건설업	647	326.8	129.07	300	0.5	15.9	28.7	43.1	11.7	***
	공공행정서비스업	658	292.7	127.59	260	3.5	34.8	24.6	26.0	11.1	
	제조업	1,743	321.0	158.12	300	2.0	21.7	24.0	41.0	11.3	
	민간서비스업	1,046	257.2	184.64	250	12.0	35.9	24.3	23.7	4.2	
	교육서비스업	761	263.2	127.97	250	10.8	35.5	19.1	29.2	5.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4	279.6	99.84	260	4.6	32.9	21.3	35.1	6.1	
	사무·금융업	1,189	290.3	122.12	260	2.7	36.6	22.6	29.2	8.9	
	운수업	151	310.6	133.71	280	4.6	24.5	23.8	33.8	13.2	
	정보통신업	476	333.3	161.02	291	1.7	27.1	21.8	31.1	18.3	
	그 외	797	263.0	149.04	240	14.1	36.5	18.2	23.1	8.2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2	307.9	142.14	280	2.1	30.2	22.9	34.1	10.8	***
	기술·기능·생산직	1,820	314.5	135.16	300	2.6	21.2	25.2	39.1	11.9	
	서비스직	1,807	250.3	162.56	240	13.9	38.1	20.6	23.2	4.2	
	판매·영업직	520	273.4	141.65	250	9.8	32.1	23.7	26.2	8.3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3	211.9	91.90	220	19.6	45.5	19.6	14.0	1.4	
노조 유무	유노조	2,477	335.6	147.45	300	1.2	20.7	21.2	41.3	15.5	***
	무노조, 잘모름	5,615	273.6	143.14	250	7.6	34.6	23.6	27.8	6.5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2	314.2	158.85	290	1.5	24.1	25.3	39.4	9.7	***
	산업단지 아님	6,360	286.7	143.40	260	6.8	32.0	22.2	29.9	9.1	

- 무직자와 결측치를 빼고 분석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를 포괄(특수고용, 프리랜서, 비임금노동자등 포함)

- 카이제곱(χ^2) 검정 결과 : $p < .001$ *** $< .01$ ** $< .05$ *

카이제곱 검정은 집단 간의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는 이 차이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나타냄.
 즉 *는 95%, **는 99%, ***는 99.9%의 신뢰수준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음.

[표 26] 포괄임금제 및 임금체불

(단위: %)

항목		구분	n	포괄임금제 적용				지난 1년간 임금체불 경험			
				그렇다	아니다	모름	χ ²	그렇다	아니다	모름	χ ²
계			8,092	44.2	46.4	9.4		9.3	87.2	3.5	
성별	남성	3,095	46.0	45.5	8.5	*	11.6	83.0	5.4	***	
	여성	4,977	43.0	46.9	10.0		7.9	89.8	2.3		
	그 외의 성	20	45.0	50.0	5.0		15.0	85.0	0		
연령 대	20대	1,407	43.5	45.7	10.8	**	9.7	87.2	3.1	***	
	30대	3,687	45.3	45.5	9.2		9.5	85.9	4.7		
	40대	2,209	44.7	46.3	9.0		9.0	89.0	1.9		
	50대 이상	789	38.3	52.1	9.6		8.6	88.2	3.2		
지역	수도권	3,579	50.2	41.9	7.8	***	9.5	87.2	3.3		
	비수도권	4,513	39.4	49.9	10.7		9.2	87.2	3.7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48.9	43.2	7.9	***	8.5	88.4	3.1	***	
	비정규직	1,887	37.1	51.1	11.8		10.8	85.8	3.4		
	특고, 프리랜서	520	31.0	56.2	12.9		13.1	81.7	5.2		
	그 외	253	22.9	59.7	17.4		8.7	82.6	8.7		
규모	5인 미만	1,332	32.2	56.1	11.7	***	10.2	87.2	2.6	***	
	5인~29인	2,880	42.9	46.8	10.3		12.7	83.9	3.4		
	30인~99인	1,542	49.6	41.8	8.6		7.7	87.7	4.6		
	100인~299인	1,119	55.2	38.1	6.7		7.5	88.0	4.5		
	300인 이상	1,219	43.2	48.4	8.4		3.9	93.7	2.5		
경력	1년 미만	1,077	34.5	50.1	15.3	***	12.2	83.5	4.4	***	
	1-3년	1,472	42.8	46.7	10.5		9.8	85.7	4.4		
	3-5년	1,428	43.3	48.0	8.7		12.5	84.5	3.1		
	5-10년	1,746	45.0	46.4	8.6		8.4	89.2	2.5		
	10년 이상	2,369	49.3	43.5	7.2		6.5	90.0	3.6		
산업	건설업	647	58.9	35.1	6.0	***	20.1	71.7	8.2	***	
	공공행정서비스업	658	33.1	58.4	8.5		9.6	88.6	1.8		
	제조업	1,743	50.7	42.2	7.1		9.3	86.1	4.6		
	민간서비스업	1,046	40.6	49.9	9.5		9.8	87.5	2.7		
	교육서비스업	761	37.1	53.1	9.9		9.1	89.2	1.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4	43.5	44.6	11.8		8.6	88.3	3.0		
	사무·금융업	1,189	42.1	46.9	11.1		5.8	90.7	3.5		
	운수업	151	39.7	46.4	13.9		9.9	84.8	5.3		
	정보통신업	476	51.3	39.9	8.8		9.0	88.9	2.1		
	그 외	797	38.8	48.4	12.8		5.6	92.0	2.4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2	48.7	43.8	7.6	***	7.4	89.3	3.3	***	
	기술·기능·생산직	1,820	45.3	46.3	8.4		12.5	83.7	3.7		
	서비스직	1,807	36.6	50.7	12.7		9.5	87.6	2.9		
	판매·영업직	520	36.1	50.3	13.6		10.7	84.1	5.2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3	35.4	48.6	16.0		11.1	81.3	7.6		
노조	유노조	2,477	47.5	45.5	6.9	***	11.5	84.2	4.3	***	
유무	무노조, 잘모름	5,615	42.7	46.8	10.5		8.3	88.5	3.2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2	57.0	35.7	7.4	***	14.8	79.6	5.7	***	
	산업단지 아님	6,360	40.7	49.3	10.0		7.8	89.3	2.9		

* p <.001 *** <.01 ** <.05 *

[표 27] 1주 노동시간 및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단위: 시간, 일, %)

항목	구분	n	1주 노동시간(시간)			1주 노동시간(일)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시간	SD	중위	일	SD	중위	기록함	아님	모름
	계	8,093	41.9	16.88	40.0	5.03	0.644	5	59.1	36.4	4.5
성별	남성	3,093	45.1	18.01	42.0	5.10	0.602	5	65.2	30.4	4.4
	여성	4,980	40.0	15.73	40.0	4.98	0.665	5	55.3	40.1	4.6
	그 외의 성	20	47.8	32.31	41.3	4.95	0.605	5	45.0	45.0	10.0
연령대	20대	1,408	42.1	15.42	40.0	4.98	0.632	5	62.0	31.5	6.5
	30대	3,686	43.1	17.71	40.0	5.04	0.564	5	59.8	36.2	4.0
	40대	2,210	40.4	15.71	40.0	5.04	0.695	5	57.6	38.6	3.8
	50대 이상	789	40.2	18.04	40.0	5.01	0.839	5	54.5	39.9	5.6
지역	수도권	3,579	42.2	15.26	40.0	5.03	0.564	5	60.4	35.0	4.6
	비수도권	4,514	41.7	18.06	40.0	5.02	0.701	5	58.0	37.6	4.5
고용 형태	정규직	5,435	43.6	15.04	40.0	5.04	0.478	5	63.4	33.0	3.6
	비정규직	2,658	38.5	19.69	40.0	4.99	0.891	5	50.2	43.3	6.5
규모	5인 미만	1,333	37.7	20.80	40.0	4.97	0.950	5	38.0	56.4	5.6
	5인~29인	2,881	41.5	13.61	40.0	5.06	0.594	5	56.2	39.5	4.3
	30인~99인	1,540	42.3	13.91	40.0	5.06	0.497	5	66.9	29.0	4.2
	100인~299인	1,119	45.8	21.98	40.0	5.00	0.533	5	73.3	23.0	3.8
	300인 이상	1,220	43.6	16.03	40.0	4.98	0.593	5	65.8	29.1	5.1
경력	1년 미만	1,077	38.6	19.51	40.0	4.87	.889	5	53.2	38.2	8.6
	1-3년	1,473	40.8	15.72	40.0	5.02	.623	5	61.0	33.5	5.4
	3-5년	1,428	42.4	13.57	40.0	5.07	.601	5	59.4	37.3	3.4
	5-10년	1,746	44.2	19.96	40.0	5.06	.571	5	58.1	38.0	3.9
	10년 이상	2,369	42.2	15.25	40.0	5.05	.588	5	61.0	35.7	3.3
산업	건설업	647	44.6	12.88	43.0	5.18	.562	5	59.4	36.5	4.2
	공공행정서비스업	658	42.9	19.80	40.0	4.97	.523	5	61.0	34.3	4.7
	제조업	1,742	44.0	12.71	40.0	5.10	.521	5	77.5	19.9	2.6
	민간서비스업	1,046	40.8	19.66	40.0	4.98	.807	5	55.9	38.5	5.5
	교육서비스업	761	39.3	20.79	40.0	4.91	.711	5	44.8	50.9	4.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41.5	19.68	40.0	5.10	.664	5	49.1	44.6	6.2
	사무·금융업	1,190	41.6	14.19	40.0	4.99	.476	5	53.0	41.5	5.5
	운수업	151	45.4	20.74	43.0	5.08	.829	5	57.6	37.1	5.3
	정보통신업	476	42.2	13.54	40.0	5.01	.460	5	61.1	34.7	4.2
	그 외	797	38.6	18.19	40.0	4.94	.894	5	50.6	44.5	4.9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42.2	14.36	40.0	5.01	.454	5	60.6	35.7	3.8
	기술·기능·생산직	1,818	43.6	14.45	40.0	5.10	.638	5	65.7	30.9	3.4
	서비스직	1,807	39.5	20.40	40.0	4.96	.857	5	51.4	42.0	6.6
	판매·영업직	520	43.0	23.81	40.0	5.15	.817	5	51.8	42.2	6.0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39.6	23.38	40.0	4.94	.965	5	56.9	34.7	8.3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43.5	14.94	40.0	5.05	0.559	5	66.6	29.3	4.1
	무노조, 모름	5,614	41.2	17.62	40.0	5.02	0.678	5	55.7	39.5	4.7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2	43.4	13.79	40.0	5.10	0.614	5	75.1	22.4	2.5
	산업단지 아님	6,361	41.5	17.60	40.0	5.00	0.651	5	54.7	40.2	5.1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28] 산업단지: 포괄임금제 및 임금체불

(단위: %)

항목		구분	n	포괄임금제 적용				지난 1년간 임금체불 경험			
				그렇다	아니다	모름	χ ²	그렇다	아니다	모름	χ ²
계			1,733	57.0	35.7	7.4		14.8	79.6	5.7	
성별	남성	908	58.5	34.3	7.3		15.5	76.8	7.7	**	
	여성	819	55.3	37.1	7.6		13.9	82.7	3.4		
	그 외의 성	6	50.0	50.0	0.0		16.7	83.3	0.0		
연령 대	20대	325	48.3	40.9	10.8	**	13.5	82.8	3.7	***	
	30대	781	61.3	31.6	7.0		13.1	77.6	9.3		
	40대	477	57.4	37.3	5.2		18.4	80.1	1.5		
	50대 이상	150	51.3	40.0	8.7		14.7	81.3	4.0		
지역	수도권	718	64.9	30.2	4.9	***	17.8	75.9	6.3	**	
	비수도권	1,015	51.3	39.5	9.2		12.6	82.2	5.2		
고용 형태	정규직	1,286	60.7	32.9	6.5	***	13.2	81.1	5.7	***	
	비정규직	370	47.8	43.5	8.6		18.9	77.3	3.8		
	특고, 프리랜서	48	41.7	39.6	18.8		18.8	70.8	10.4		
	그 외	29	34.5	51.7	13.8		24.1	55.2	20.7		
규모	5인 미만	111	51.4	36.0	12.6	***	23.4	74.8	1.8	***	
	5인~29인	623	49.9	41.9	8.2		20.1	76.1	3.9		
	30인~99인	435	58.2	34.9	6.9		11.3	82.8	6.0		
	100인~299인	305	68.2	26.2	5.6		11.5	79.7	8.9		
	300인 이상	259	61.0	32.8	6.2		8.1	84.6	7.3		
경력	1년 미만	198	44.4	40.9	14.6	***	25.3	67.7	7.1	***	
	1-3년	295	47.5	43.4	9.2		16.6	79.0	4.4		
	3-5년	302	54.0	38.1	7.9		21.2	76.5	2.3		
	5-10년	338	55.0	38.8	6.2		8.6	88.2	3.3		
	10년 이상	600	68.3	27.2	4.5		10.7	80.5	8.8		
임금 구간	150만원 미만	26	30.8	57.7	11.5	***	11.5	80.8	7.7	***	
	150~249만	417	47.7	40.8	11.5		12.2	81.5	6.2		
	250~299만	438	53.2	40.6	6.2		19.9	77.4	2.7		
	300~449만	683	65.9	28.0	6.1		12.6	79.2	8.2		
	450만원 이상	168	57.1	38.1	4.8		17.3	81.5	1.2		
산업	건설업	230	73.5	23.5	3.0	***	29.1	60.4	10.4	***	
	공공행정서비스업	75	54.7	40.0	5.3		24.0	74.7	1.3		
	제조업	851	57.7	36.3	6.0		9.8	84.6	5.6		
	민간서비스업	107	53.3	39.3	7.5		20.6	78.5	0.9		
	교육서비스업	55	41.8	40.0	18.2		27.3	63.6	9.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7	40.4	49.1	10.5		17.5	77.2	5.3		
	사무·금융업	144	47.9	42.4	9.7		13.2	80.6	6.3		
	운수업	29	51.7	37.9	10.3		17.2	69.0	13.8		
	정보통신업	79	59.5	30.4	10.1		15.2	84.8	0.0		
	그 외	106	49.1	34.9	16.0		4.7	92.5	2.8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765	67.2	28.4	4.4	***	12.5	81.2	6.3	**	
	기술·기능·생산직	694	49.6	42.7	7.8		14.4	80.7	4.9		
	서비스직	158	53.8	35.4	10.8		22.2	75.3	2.5		
	판매·영업직	93	43.0	39.8	17.2		21.5	68.8	9.7		
	청소·시설관리·경비직	23	17.4	52.2	30.4		21.7	65.2	13.0		
노조 유무	유노조	694	69.6	25.8	4.6	***	20.7	71.0	8.2	***	
	무노조, 잘모름	1,039	48.5	42.3	9.2		10.8	85.3	3.9		
조합 가입	노동조합원	398	55.3	37.4	7.3		24.4	70.6	5.0	***	
	비조합원(미조직)	1,335	57.5	35.1	7.4		11.9	82.2	5.8		

* p < .001 *** < .01 ** < .05 *

[표 29] 산업단지: 1주 노동시간 및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단위: 시간, 일, %)

항목	구분	n	1주 노동시간(시간)			출퇴근 시간 기록 여부		
			시간	SD	중위	기록함	아님	모름
계		1,733	43.4	13.79	40	75.1	22.4	2.5
성별	남성	908	45.4	15.22	44	78.5	19.5	2.0
	여성	819	41.4	11.63	40	71.3	25.6	3.1
	그 외의 성	6	35.4	15.22	41.3	83.3	16.7	0.0
연령대	20대	325	42.1	12.02	40	77.8	18.8	3.4
	30대	781	43.9	14.69	42	78.9	19.0	2.2
	40대	477	44.1	14.15	40	69.0	28.7	2.3
	50대 이상	150	41.9	10.78	40	69.3	28.0	2.7
지역	수도권	718	43.0	11.80	40	74.2	23.8	1.9
	비수도권	1,015	43.7	15.03	40	75.8	21.4	2.9
고용 형태	정규직	1,286	43.7	10.56	40	80.1	18.0	1.9
	비정규직	370	44.2	18.34	45	64.1	32.2	3.8
	특고, 프리랜서	48	38.6	31.03	40	47.9	45.8	6.3
	그 외	29	31.0	19.69	40	41.4	51.7	6.9
규모	5인 미만	111	40.6	21.94	40	49.5	47.7	2.7
	5인~29인	623	42.7	11.66	40	65.7	31.6	2.7
	30인~99인	435	43.8	13.97	42	82.1	15.2	2.8
	100인~299인	305	45.0	14.15	43	87.5	11.5	1.0
	300인 이상	259	44.0	13.04	40	82.6	14.3	3.1
경력	1년 미만	198	39.8	11.55	40	65.7	25.8	8.6
	1-3년	295	42.3	17.39	40	73.9	22.7	3.4
	3-5년	302	44.1	13.25	40	69.2	29.8	1.0
	5-10년	338	46.0	16.69	40	76.6	21.3	2.1
	10년 이상	600	43.4	10.17	42	81.0	18.0	1.0
임금 구간	150만원 미만	26	28.0	24.25	20	57.7	30.8	11.5
	150~249만	417	39.8	15.61	40	69.5	26.4	4.1
	250~299만	438	44.8	9.72	42	73.7	23.5	2.7
	300~449만	683	45.0	14.56	43	80.1	18.9	1.0
	450만원 이상	168	45.0	8.77	43.5	75.0	22.6	2.4
산업	건설업	230	44.2	7.74	45	73.0	25.2	1.7
	공공행정서비스업	75	44.5	20.45	40	65.3	34.7	0.0
	제조업	851	44.4	11.30	42	85.4	12.9	1.6
	민간서비스업	107	44.8	19.63	40	65.4	33.6	0.9
	교육서비스업	55	42.7	22.92	40	65.5	29.1	5.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7	36.8	12.55	40	45.6	49.1	5.3
	사무·금융업	144	40.3	15.59	40	63.2	29.9	6.9
	운수업	29	48.7	31.37	40	65.5	27.6	6.9
	정보통신업	79	40.4	10.38	40	62.0	31.6	6.3
	그 외	106	41.0	13.72	40	63.2	35.8	0.9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765	42.5	8.36	40	77.9	20.0	2.1
	기술·기능·생산직	694	44.2	13.77	42	76.8	20.9	2.3
	서비스직	158	44.2	23.27	40	68.4	27.2	4.4
	판매·영업직	93	45.2	23.66	45	54.8	41.9	3.2
	청소·시설관리·경비직	23	38.6	16.05	45	60.9	34.8	4.3
노조 유무	유노조	694	44.3	12.19	44	81.0	17.6	1.4
	무노조, 모름	1,039	42.8	14.73	40	71.2	25.6	3.2
조합 가입	노동조합원	398	43.9	16.66	43	77.2	20.4	2.5
	비조합원(미조직)	1,335	43.3	12.81	40	68.3	29.1	2.5

- 주: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표 30] 4대보험 적용 여부

(단위: %)

항목		구분	n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계			8,096	87.9	12.1	90.3	9.7	89.1	10.9	86.7	13.3
성별	남성	3,096	91.8	8.2	92.8	7.2	92.1	7.9	90.3	9.7	
	여성	4,980	85.4	14.6	88.7	11.3	87.2	12.8	84.4	15.6	
	그 외의 성	20	95.0	5.0	95.0	5.0	90.0	10.0	95.0	5.0	
연령 대	20대	1,408	90.4	9.6	92.2	7.8	92.3	7.7	89.5	10.5	
	30대	3,687	90.4	9.6	92.7	7.3	91.4	8.6	89.2	10.8	
	40대	2,212	85.3	14.7	87.6	12.4	86.3	13.7	84.2	15.8	
	50대 이상	789	78.7	21.3	82.9	17.1	80.2	19.8	77.1	22.9	
지역	수도권	3,581	90.8	9.2	92.9	7.1	91.7	8.3	89.1	10.9	
	비수도권	4,515	85.5	14.5	88.2	11.8	87.0	13.0	84.8	15.2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96.4	3.6	99.0	1.0	97.6	2.4	96.0	4.0	
	비정규직	1,887	80.3	19.7	81.6	18.4	82.4	17.6	78.1	21.9	
	특고, 프리랜서	520	39.6	60.4	42.9	57.1	46.0	54.0	40.6	59.4	
	사업주, 자영업자	182	62.6	37.4	68.1	31.9	41.8	58.2	40.7	59.3	
	그 외	71	52.1	47.9	60.6	39.4	53.5	46.5	53.5	46.5	
규모	5인 미만	1,333	69.5	30.5	72.8	27.2	67.3	32.7	63.8	36.2	
	5인~29인	2,882	89.7	10.3	90.7	9.3	90.6	9.4	87.6	12.4	
	30인~99인	1,542	92.8	7.2	94.7	5.3	94.1	5.9	92.2	7.8	
	100인~299인	1,119	95.6	4.4	97.5	2.5	97.7	2.3	96.2	3.8	
	300인 이상	1,220	90.2	9.8	96.1	3.9	94.9	5.1	93.6	6.4	
경력	1년 미만	1,077	77.0	23.0	79.0	21.0	79.8	20.2	75.7	24.3	
	1-3년	1,473	86.8	13.2	88.3	11.7	87.8	12.2	84.9	15.1	
	3-5년	1,428	90.3	9.7	91.5	8.5	90.3	9.7	88.2	11.8	
	5-10년	1,748	90.6	9.4	94.0	6.0	92.6	7.4	90.6	9.4	
	10년 이상	2,370	90.0	10.0	93.2	6.8	90.7	9.3	89.0	11.0	
산업	건설업	647	94.4	5.6	95.1	4.9	95.7	4.3	93.8	6.2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86.2	13.8	95.9	4.1	90.4	9.6	90.1	9.9	
	제조업	1,743	94.4	5.6	94.5	5.5	94.3	5.7	92.7	7.3	
	민간서비스업	1,046	81.4	18.6	83.4	16.6	81.3	18.7	78.6	21.4	
	교육서비스업	761	75.4	24.6	80.7	19.3	77.0	23.0	74.5	25.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88.6	11.4	92.5	7.5	91.7	8.3	89.1	10.9	
	사무·금융업	1,191	94.5	5.5	95.4	4.6	95.5	4.5	93.2	6.8	
	운수업	151	86.8	13.2	85.4	14.6	87.4	12.6	84.8	15.2	
	정보통신업	476	92.2	7.8	94.3	5.7	93.7	6.3	89.1	10.9	
	그 외	797	77.3	22.7	79.8	20.2	78.8	21.2	74.4	25.6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93.8	6.2	96.3	3.7	94.9	5.1	93.4	6.6	
	기술·기능·생산직	1,820	90.9	9.1	91.8	8.2	91.4	8.6	88.6	11.4	
	서비스직	1,807	76.3	23.7	79.9	20.1	78.4	21.6	75.6	24.4	
	판매·영업직	521	76.2	23.8	78.7	21.3	77.4	22.6	71.8	28.2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80.6	19.4	84.0	16.0	81.9	18.1	78.5	21.5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93.4	6.6	97.3	2.7	95.6	4.4	95.2	4.8	
	무노조, 잘모름	5,617	85.4	14.6	87.2	12.8	86.2	13.8	82.9	17.1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94.5	5.5	94.8	5.2	95.0	5.0	93.3	6.7	
	산업단지 아님	6,363	86.1	13.9	89.0	11.0	87.5	12.5	84.9	15.1	

[표 31] 연차 소진율

(단위: %)

항목		구분	n	연차 소진율				
				10%미만	11~30%	31~70%	71~99%	100%
계			8,096	19.9	15.3	23.5	19.8	21.5
성별	남성	3,096	15.5	15.6	25.9	23.7	19.3	
	여성	4,980	22.6	15.1	22.1	17.4	22.8	
	그 외의 성	20	40.0	5.0	10.0	15.0	30.0	
연령 대	20대	1,408	18.4	12.9	24.3	19.8	24.6	
	30대	3,687	15.5	15.4	24.7	23.2	21.2	
	40대	2,212	25.0	16.6	22.2	16.3	19.8	
	50대 이상	789	29.3	15.0	20.3	13.6	21.9	
지역	수도권	3,581	15.4	14.7	21.8	22.7	25.4	
	비수도권	4,515	23.5	15.7	24.9	17.5	18.4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12.3	13.6	25.4	24.8	24.0	
	비정규직	1,887	31.5	20.4	22.2	11.2	14.8	
	특고, 프리랜서	520	44.6	16.0	14.6	6.3	18.5	
	그 외	253	47.4	11.9	12.3	5.5	22.9	
규모	5인 미만	1,333	42.8	13.0	17.7	7.7	18.8	
	5인~29인	2,882	19.8	18.8	23.7	17.7	20.0	
	30인~99인	1,542	14.7	15.1	25.6	22.7	21.9	
	100인~299인	1,119	10.1	11.3	22.6	30.2	25.8	
	300인 이상	1,220	10.9	13.2	27.6	24.8	23.5	
경력	1년 미만	1,077	35.9	16.8	19.4	13.8	14.0	
	1-3년	1,473	20.2	15.7	24.0	18.8	21.2	
	3-5년	1,428	15.8	18.7	28.6	18.1	18.8	
	5-10년	1,748	15.4	13.6	24.4	22.7	23.8	
	10년 이상	2,370	18.3	13.4	21.4	22.0	24.9	
산업	건설업	647	17.5	16.8	23.2	25.8	16.7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14.9	18.4	28.8	20.5	17.5	
	제조업	1,743	14.9	15.4	27.9	21.3	20.5	
	민간서비스업	1,046	25.6	16.4	19.1	18.5	20.4	
	교육서비스업	761	32.7	16.6	21.6	12.7	16.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17.6	13.8	22.2	18.7	27.7	
	사무·금융업	1,191	14.6	15.0	23.1	24.4	22.8	
	운수업	151	30.5	13.9	27.2	12.6	15.9	
	정보통신업	476	9.9	10.3	25.0	21.6	33.2	
	그 외	797	31.4	12.9	17.4	13.9	24.3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14.7	14.5	24.4	23.3	23.1	
	기술·기능·생산직	1,820	17.8	17.1	26.2	18.7	20.2	
	서비스직	1,807	30.1	14.1	20.5	15.5	19.9	
	판매·영업직	521	25.7	18.0	20.5	14.8	20.9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36.1	16.7	15.3	13.9	18.1	
노조	유노조	2,479	12.5	19.8	27.3	23.2	17.1	
유무	무노조, 잘 모름	5,617	23.2	13.2	21.8	18.3	23.4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15.1	18.5	22.8	22.6	21.1	
	산업단지 아님	6,363	21.3	14.4	23.7	19.1	21.6	

[표 32] 연차휴가 사용 및 보상

(단위: %)

항목		구분	n	연차휴가 미리 계획, 준비하여 사용 가능			χ^2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χ^2
				그렇다	아니다	모름		그렇다	아니다	모름	
계			8,096	67.0	25.7	7.3		45.5	45.3	9.2	
성별	남성	3,096	68.0	24.7	7.3		51.5	39.1	9.5	***	
	여성	4,980	66.3	26.3	7.3		41.9	49.2	9.0		
	그 외의 성	20	65.0	20.0	15.0		25.0	65.0	10.0		
연령 대	20대	1,408	69.0	21.0	10.1	***	46.0	40.6	13.5	***	
	30대	3,687	68.3	25.0	6.6		47.8	43.9	8.2		
	40대	2,212	66.1	27.3	6.6		44.1	48.2	7.7		
	50대 이상	789	59.4	33.0	7.6		37.9	52.3	9.8		
지역	수도권	3,581	70.9	23.0	6.1	***	47.4	44.5	8.0	***	
	비수도권	4,515	63.9	27.8	8.3		44.0	46.0	10.1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75.1	20.2	4.7	***	51.9	42.0	6.1	***	
	비정규직	1,887	53.6	34.2	12.2		37.4	46.9	15.7		
	특고, 프리랜서	520	42.1	43.8	14.0		19.6	65.6	14.8		
	그 외	253	43.9	42.7	13.4		22.5	63.6	13.8		
규모	5인 미만	1,333	48.8	41.0	10.3	***	23.0	64.6	12.5	***	
	5인~29인	2,882	60.4	30.5	9.1		38.2	50.4	11.5		
	30인~99인	1,542	73.5	20.9	5.6		50.6	42.0	7.5		
	100인~299인	1,119	79.3	15.7	5.0		60.0	34.0	6.1		
	300인 이상	1,220	82.9	12.9	4.3		67.8	27.1	5.1		
경력	1년 미만	1,077	53.9	30.1	16.0	***	40.2	37.9	21.9	***	
	1-3년	1,473	63.2	27.7	9.1		43.0	43.9	13.0		
	3-5년	1,428	63.4	29.4	7.1		43.4	48.9	7.7		
	5-10년	1,748	71.1	23.5	5.4		45.4	48.9	5.8		
	10년 이상	2,370	74.3	21.9	3.8		50.8	44.9	4.3		
산업	건설업	647	64.9	29.2	5.9	***	50.9	44.0	5.1	***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78.9	15.9	5.2		61.2	33.1	5.8		
	제조업	1,743	69.8	24.0	6.1		55.4	37.6	6.9		
	민간서비스업	1,046	57.5	32.5	10.0		39.2	47.8	13.0		
	교육서비스업	761	57.6	33.9	8.5		30.6	60.4	8.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62.6	30.2	7.2		41.6	48.2	10.2		
	사무·금융업	1,191	73.3	20.2	6.5		48.5	42.3	9.2		
	운수업	151	57.0	33.8	9.3		37.7	47.7	14.6		
	정보통신업	476	79.6	16.0	4.4		34.0	56.3	9.7		
	그 외	797	62.4	26.9	10.8		35.9	51.1	13.0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76.0	19.0	5.0	***	50.9	42.6	6.4	***	
	기술·기능·생산직	1,820	63.5	29.1	7.4		47.9	43.1	9.1		
	서비스직	1,807	56.4	32.7	10.8		35.3	51.9	12.8		
	판매·영업직	521	54.3	35.5	10.2		35.5	49.9	14.6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49.3	37.5	13.2		37.5	46.5	16.0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76.2	19.6	4.3	***	64.3	30.7	5.0	***	
	무노조, 모름	5,617	62.9	28.4	8.7		37.2	51.8	11.0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72.6	21.4	6.0	***	55.7	36.7	7.6	***	
	산업단지 아님	6,363	65.4	26.9	7.7		42.7	47.7	9.6		

- p < .001 *** < .01 ** < .05 *

[표 33] 공휴일 휴무

(단위: %)

항목		구분	n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χ^2
				유급휴일	무급휴일	쉬지 못함	대체 휴일/휴가	잘 모름	
계			8,096	65.4	17.9	9.4	4.9	2.4	
성별	남성	3,096	64.9	17.5	10.3	4.8	2.5		
	여성	4,980	65.8	18.2	8.8	4.9	2.3		
	그 외의 성	20	70.0	10.0	10.0	0.0	10.0		
연령 대	20대	1,408	65.7	16.2	10.2	4.5	3.3		***
	30대	3,687	67.7	16.4	8.8	4.9	2.1		
	40대	2,212	63.9	19.9	9.3	4.7	2.2		
	50대 이상	789	58.6	22.4	10.4	5.8	2.8		
지역	수도권	3,581	69.9	16.8	7.3	3.8	2.3		***
	비수도권	4,515	61.9	18.8	11.0	5.7	2.5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76.7	11.4	5.9	4.5	1.4		***
	비정규직	1,887	45.3	29.9	15.1	5.7	3.9		
	특고, 프리랜서	520	35.2	38.1	16.0	5.6	5.2		
	그 외	253	34.8	26.1	26.5	5.1	7.5		
규모	5인 미만	1,333	46.1	26.2	17.6	5.6	4.6		***
	5인~29인	2,882	60.9	23.8	9.3	3.5	2.5		
	30인~99인	1,542	72.2	13.2	7.1	5.8	1.6		
	100인~299인	1,119	76.3	10.9	6.3	5.4	1.1		
	300인 이상	1,220	78.9	7.4	6.0	5.7	2.1		
경력	1년 미만	1,077	49.7	26.3	14.4	4.1	5.6		***
	1-3년	1,473	58.6	20.8	12.2	5.2	3.3		
	3-5년	1,428	62.6	21.7	9.0	4.6	2.0		
	5-10년	1,748	70.0	14.7	8.3	5.5	1.4		
	10년 이상	2,370	75.2	12.4	6.3	4.7	1.4		
산업	건설업	647	62.6	22.3	10.8	3.1	1.2		***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74.4	11.5	6.5	5.6	2.0		
	제조업	1,743	70.9	16.3	7.9	3.4	1.5		
	민간서비스업	1,046	50.5	23.2	14.5	7.1	4.7		
	교육서비스업	761	64.3	22.6	7.8	4.5	0.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55.8	14.6	14.6	12.8	2.2		
	사무·금융업	1,191	74.3	17.0	4.3	3.1	1.3		
	운수업	151	41.7	30.5	21.2	3.3	3.3		
	정보통신업	476	80.0	11.8	2.5	2.7	2.9		
그 외	797	59.2	17.1	13.8	4.4	5.5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80.1	12.5	3.3	2.8	1.3		***
	기술·기능·생산직	1,820	61.4	19.5	11.6	5.3	2.3		
	서비스직	1,807	47.9	24.1	15.4	8.0	4.6		
	판매·영업직	521	42.0	27.1	20.2	7.7	3.1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34.7	28.5	27.1	4.9	4.9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71.2	15.8	7.3	4.7	1.1		***
무노조, 잘 모름	5,617	62.9	18.9	10.3	4.9	3.0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66.3	20.1	8.3	3.5	1.8		***
	산업단지 아님	6,363	65.2	17.3	9.6	5.2	2.6		

- p < .001 *** < .01 ** < .05 *

[표 3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비율

구분		n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비율 (평균 %)				
			가족돌봄 등	χ^2	임신기	χ^2	육아기
계		8,096	37.0		40.0		38.4
성별	남성	3,096	39.9	***	39.3	*	38.3
	여성	4,980	35.3		40.5		38.4
	그 외의 성	20	30.0		40.0		35.0
연령 대	20대	1,408	31.6	***	34.5	***	33.3
	30대	3,687	39.5		42.2		39.6
	40대	2,212	38.1		41.9		40.9
	50대 이상	789	32.1		34.2		34.3
지역	수도권	3,581	39.0	***	42.9	***	40.3
	비수도권	4,515	35.4		37.7		36.8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43.4	***	47.1	***	44.8
	비정규직	1,887	26.2		27.6		27.2
	특고, 프리랜서	520	16.9		19.0		18.1
	그 외	253	23.3		23.7		24.9
규모	5인 미만	1,333	19.5	***	21.2	***	20.4
	5인~29인	2,882	27.7		32.1		30.6
	30인~99인	1,542	39.2		42.9		40.9
	100인~299인	1,119	48.1		48.3		46.4
	300인 이상	1,220	65.4		68.1		65.6
경력	1년 미만	1,077	28.0	***	29.0	***	28.4
	1~3년	1,473	29.9		32.5		32.0
	3~5년	1,428	35.2		37.2		35.8
	5~10년	1,748	36.7		43.8		41.6
	10년 이상	2,370	46.9		48.6		46.0
산업	건설업	647	39.4	***	37.2	***	32.9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69.2		68.7		69.7
	제조업	1,743	35.8		37.5		36.4
	민간서비스업	1,046	29.0		30.7		29.8
	교육서비스업	761	41.9		46.5		44.9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31.2		41.3		37.4
	사무·금융업	1,191	37.2		41.8		40.4
	운수업	151	27.8		32.5		26.5
	정보통신업	476	28.4		31.9		30.7
	그 외	797	28.4		32.5		30.6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45.1	***	47.5	***	45.7
	기술·기능·생산직	1,820	31.9		34.1		32.6
	서비스직	1,807	28.9		33.4		31.6
	판매·영업직	521	28.4		35.3		34.0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20.8		17.4		18.1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61.5	***	61.1	***	59.6
	무노조, 잘모름	5,617	26.2		30.7		29.0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40.5	***	40.1	**	37.6
	산업단지 아님	6,363	36.1		40.0		38.6

~ - p <.001 *** <.01 ** <.05 *

[표 35] 사내 휴게시설

(단위: %)

구분		n	크기, 위치, 온도, 비품 구비 등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휴게시설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음
계		8,096	57.6	37.1	5.3
성별	남성	3,096	60.7	33.4	5.9
	여성	4,980	55.7	39.4	5.0
	그 외의 성	20	50.0	45.0	5.0
연령 대	20대	1,408	62.8	31.3	6.0
	30대	3,687	58.8	35.6	5.6
	40대	2,212	55.5	39.9	4.6
	50대 이상	789	48.0	46.6	5.3
지역	수도권	3,581	60.9	34.5	4.6
	비수도권	4,515	54.9	39.2	5.9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64.0	31.9	4.2
	비정규직	1,887	47.6	45.4	6.9
	특고, 프리랜서	520	37.3	54.6	8.1
	그 외	253	35.6	51.8	12.6
규모	5인 미만	1,333	33.8	60.2	6.0
	5인~19인	1,977	50.1	44.1	5.8
	20인~29인	905	59.7	34.8	5.5
	30인~99인	1,542	63.6	31.3	5.1
	100인~299인	1,119	70.3	24.1	5.5
	300인 이상	1,220	74.7	21.6	3.8
경력	1년 미만	1,077	50.4	40.1	9.5
	1-3년	1,473	57.3	36.2	6.5
	3-5년	1,428	54.8	40.3	4.8
	5-10년	1,748	59.6	36.0	4.3
	10년 이상	2,370	61.1	35.1	3.8
산업	건설업	647	62.1	33.4	4.5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67.7	28.7	3.6
	제조업	1,743	64.2	30.6	5.2
	민간서비스업	1,046	51.0	43.3	5.7
	교육서비스업	761	47.2	47.3	5.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46.1	47.4	6.6
	사무·금융업	1,191	63.1	31.9	5.0
	운수업	151	61.6	30.5	7.9
	정보통신업	476	60.1	35.3	4.6
	그 외	797	47.9	45.4	6.6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64.4	31.5	4.1
	기술·기능·생산직	1,820	58.7	35.3	6.0
	서비스직	1,807	46.1	47.4	6.5
	판매·영업직	521	48.4	44.0	7.7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39.6	53.5	6.9
노조	유노조	2,479	70.2	26.1	3.7
유무	무노조, 모름	5,617	52.0	42.0	6.1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67.9	27.1	5.1
	산업단지 아님	6,363	54.8	39.8	5.4

[표 36] 복리후생 지원 비율 (평균 %)

항목	구분	n	통근 버스 ¹¹⁾	사내식당 (카페)	동호회 활동지원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문화비 지원	복지 포인트	보육 지원	건강 검진	주거 지원	명절상여 금품	식비 지원	해당 없음
계		8,096	18.0	26.8	12.6	15.3	36.7	10.5	20.6	8.6	34.9	9.2	43.1	53.0	12.8
성별	남성	3,096	22.5	28.4	16.6	20.1	37.0	13.3	21.2	10.9	37.1	13.2	41.8	57.3	10.5
	여성	4,980	15.1	25.8	10.1	12.3	36.5	8.8	20.3	7.2	33.6	6.7	44.0	50.3	14.2
	그 외의 성	20	15.0	45.0	15.0	20.0	40.0	20.0	10.0	10.0	30.0	10.0	40.0	45.0	20.0
연령 대	20대	1,408	19.8	29.2	13.0	15.6	34.5	11.8	21.9	8.3	34.4	12.2	44.7	52.1	11.8
	30대	3,687	17.5	27.5	13.1	16.3	38.3	11.4	20.8	8.5	35.0	8.9	44.3	54.6	11.3
	40대	2,212	18.0	25.8	11.9	14.5	37.8	9.2	21.0	9.5	36.1	8.3	41.2	53.4	13.6
	50대 이상	789	16.6	22.4	11.2	12.3	29.7	8.2	16.2	7.7	31.9	7.7	40.2	45.4	19.6
지역	수도권	3,581	15.3	25.9	13.0	16.8	39.8	12.1	19.6	8.9	36.1	7.1	44.9	51.9	11.5
	비수도권	4,515	20.0	27.6	12.2	14.1	34.2	9.3	21.4	8.4	34.0	10.9	41.7	53.8	13.8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20.6	31.2	15.8	19.5	45.2	13.0	24.7	10.3	41.8	11.0	50.4	59.9	5.8
	비정규직	1,887	14.5	20.7	6.8	6.8	21.4	5.4	14.6	5.7	24.8	6.0	31.4	42.9	21.3
	특고, 프리랜서	520	8.1	10.0	3.3	4.8	14.0	5.8	6.5	3.7	11.2	4.4	21.2	29.0	40.6
	그 외	253	8.3	13.4	4.7	8.3	15.0	7.1	7.1	5.5	11.9	4.7	19.8	28.5	42.3
규모	5인 미만	1,333	9.3	10.3	2.9	5.1	16.1	5.4	4.4	3.4	13.4	3.4	28.7	36.5	31.7
	5인~29인	2,882	12.7	21.4	5.3	8.4	29.6	7.4	9.5	5.0	25.6	6.2	42.4	52.1	14.0
	30인~99인	1,542	18.2	27.8	11.0	14.7	42.1	11.3	23.5	6.6	38.0	8.4	46.4	56.0	7.3
	100인~299인	1,119	22.1	33.2	18.5	25.7	48.0	14.0	24.9	8.8	45.5	10.8	47.0	61.4	6.3
	300인 이상	1,220	35.8	50.7	37.0	33.8	58.7	19.4	56.8	25.3	66.9	22.1	52.9	61.5	2.2
경력	1년 미만	1,077	14.9	20.3	7.8	8.8	21.4	8.3	14.5	6.2	21.4	8.1	29.8	45.9	23.1
	1-3년	1,473	15.9	23.4	8.4	11.5	30.9	8.1	17.4	5.9	30.6	8.7	42.6	49.9	15.1
	3-5년	1,428	17.6	26.6	12.6	14.1	34.4	12.5	17.6	9.9	32.6	9.0	37.0	50.4	12.0
	5-10년	1,748	18.7	29.1	13.3	14.1	40.3	10.5	21.5	8.6	37.1	8.9	49.3	53.4	9.8
	10년 이상	2,370	20.3	30.4	16.8	22.1	45.9	12.0	26.5	10.7	43.6	10.4	48.7	59.4	9.4

항목	구분	n	통근 버스	사내식당 (카페)	동호회 활동지원	교육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문화비 지원	복지 포인트	보육 지원	건강검진	주거 지원	명절상여 금품	식비 지원	해당 없음
산업	건설업	647	17.9	24.3	10.4	18.2	35.9	13.6	10.4	7.6	33.8	9.0	43.0	62.6	8.5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17.6	26.3	25.9	17.5	36.3	12.9	59.0	11.8	49.3	11.2	43.1	45.5	5.8
	제조업	1,743	30.6	41.3	15.4	19.9	43.3	11.8	17.2	10.5	39.2	16.0	45.3	74.9	5.6
	민간서비스업	1,046	13.8	17.5	7.5	9.5	29.7	8.8	11.1	5.5	25.2	5.8	36.8	40.9	23.4
	교육서비스업	761	7.8	18.3	7.4	13.7	24.4	8.8	26.3	6.4	29.0	4.3	38.6	34.8	2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11.5	28.2	11.8	12.2	33.9	6.9	16.2	9.8	32.2	6.9	49.3	56.6	9.4
	사무·금융업	1,191	15.3	25.0	11.4	14.3	43.0	11.8	19.7	9.4	36.9	7.7	49.1	47.9	10.6
	운수업	151	20.5	25.8	13.2	12.6	37.1	4.0	15.2	6.6	29.1	8.6	37.7	57.0	12.6
	정보통신업	476	18.5	25.8	17.9	22.5	45.4	14.3	24.4	11.8	40.8	9.0	44.7	40.5	10.9
	그 외	797	14.2	20.8	7.8	10.3	31.4	7.4	15.3	5.5	29.5	6.3	37.5	47.8	23.3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18.2	29.7	14.6	17.6	43.6	12.2	25.4	9.5	40.0	8.4	48.6	56.5	8.4
	기술·기능·생산직	1,820	24.6	32.4	13.7	16.7	38.0	10.9	18.0	8.8	38.4	13.7	43.6	62.2	9.1
	서비스직	1,807	11.8	18.0	8.2	10.3	24.6	7.7	15.2	6.2	25.0	6.7	35.1	41.1	22.6
	판매·영업직	521	16.3	20.0	10.0	13.1	29.4	7.5	14.4	10.6	25.0	9.4	32.4	42.0	20.2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11.1	17.4	6.9	4.9	16.0	8.3	15.3	6.3	17.4	6.3	33.3	31.3	28.5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28.0	39.1	24.5	27.6	45.9	16.9	41.7	17.9	51.4	16.1	44.8	62.0	2.9
	무노조, 잘모름	5,617	13.5	21.4	7.3	9.8	32.6	7.7	11.3	4.6	27.6	6.2	42.4	49.0	17.2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27.8	37.0	14.3	20.5	40.6	13.7	15.8	9.9	35.6	14.7	42.3	74.1	4.2
	산업단지 아님	6,363	15.3	24.1	12.1	13.8	35.6	9.7	21.9	8.3	34.7	7.7	43.4	47.2	15.2

11) 통근버스 또는 교통비 지원

[표 37] 퇴사 의향

(단위: %.)

구분		n	최근 1년 기준으로 퇴사를 생각한 빈도					χ^2
			거의 매주	종종	1년에 한두 번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계		8,096	11.4	36.8	29.2	15.4	7.2	
성별	남성	3,096	8.2	33.3	33.7	16.9	7.9	***
	여성	4,980	13.3	39.0	26.5	14.4	6.7	
	그 외의 성	20	20.0	35.0	5.0	20.0	20.0	
연령 대	20대	1,408	14.0	39.2	26.8	13.8	6.3	***
	30대	3,687	12.3	35.7	30.9	15.4	5.7	
	40대	2,212	9.4	37.5	29.1	15.5	8.5	
	50대이상	789	8.0	35.5	25.7	18.0	12.8	
지역	수도권	3,581	12.0	37.4	29.7	15.1	5.8	***
	비수도권	4,515	10.9	36.3	28.8	15.6	8.3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11.0	34.9	31.0	16.1	7.0	***
	비정규직	2,660	12.1	40.7	25.5	13.9	7.7	
규모	5인 미만	1,333	13.7	36.6	25.7	14.6	9.5	***
	5인~29인	1,977	10.4	40.8	29.3	13.8	5.7	
	30인~99인	905	11.2	34.0	32.8	15.2	6.7	
	100인~299인	1,542	11.3	36.3	32.0	15.4	5.1	
	300인 이상	1,119	11.5	31.6	25.7	20.2	11.1	
경력	1년 미만	1,077	14.3	39.9	20.6	17.7	7.4	***
	1-3년	1,473	13.1	40.3	28.9	12.6	5.2	
	3-5년	1,428	9.7	37.5	32.9	14.1	5.7	
	5-10년	1,748	12.2	37.6	27.7	15.1	7.3	
	10년 이상	2,370	9.3	32.2	32.2	17.1	9.2	
산업	건설업	647	8.3	40.0	33.7	14.4	3.6	***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10.0	33.2	26.6	20.5	9.7	
	제조업	1,743	10.4	37.2	30.5	14.1	7.7	
	민간서비스업	1,046	13.4	38.6	26.4	14.9	6.7	
	교육서비스업	761	11.4	36.9	30.1	15.1	6.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13.0	38.1	28.5	13.3	7.2	
	사무·금융업	1,191	11.2	37.0	32.0	14.4	5.5	
	운수업	151	13.9	31.1	28.5	19.9	6.6	
	정보통신업	476	10.1	33.4	32.4	16.6	7.6	
	그 외	797	13.7	35.4	22.3	17.6	11.0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11.4	35.7	29.6	16.7	6.7	**
	기술·기능·생산직	1,820	10.2	38.9	28.6	13.8	8.5	
	서비스직	1,807	12.2	38.4	28.6	14.3	6.6	
	판매·영업직	521	12.7	32.8	31.7	15.0	7.9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10.4	34.7	26.4	16.7	11.8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7.9	32.5	33.6	18.1	7.9	***
	무노조, 잘모름	5,617	12.9	38.7	27.2	14.2	6.9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11.0	33.6	34.0	14.8	6.6	***
	산업단지 아님	6,363	11.5	37.7	27.9	15.6	7.4	

~ p <.001 *** <.01 ** <.05 *

[표 38] 노동조합 설치 유무 및 가입여부

(단위: %.)

구분		n	노동조합 설치			노조 가입 여부					유노조 사업장 가입률
			있음	없거나 모름	χ^2	미가 입	가입			χ^2	
계		8,096	30.6	69.4		82.5	10.5	2.5	4.5		49.5
성별	남성	3,096	37.7	62.3	***	79.9	12.4	3.8	3.8	*	47.3
	여성	4,980	26.3	73.7		84.0	9.4	1.7	4.9		51.5
	그 외의 성	20	15.0	85.0		95.0	5.0	0.0	0.0		33.3
연령 대	20대	1,408	23.7	76.3	***	86.2	9.1	1.7	3.0	***	48.6
	30대	3,687	32.6	67.4		84.1	9.5	2.7	3.6		41.5
	40대	2,212	32.4	67.6		79.1	11.5	2.4	7.1		59.3
	50대 이상	789	28.9	71.1		77.3	15.1	3.4	4.2		62.3
지역	수도권	3,581	30.8	69.2	***	84.4	9.1	2.0	4.6	***	45.5
	비수도권	4,515	30.5	69.5		80.9	11.7	2.9	4.5		52.7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34.7	65.3	***	81.3	11.8	2.6	4.3	***	50.3
	비정규직	1,887	27.6	72.4		83.8	8.7	1.8	5.6		46.2
	특고, 프리랜서	520	11.3	88.7		86.9	6.7	2.9	3.5		50.8
	그 외	253	5.1	94.9		87.4	5.5	4.3	2.8		53.8
규모	5인 미만	1,333	7.3	92.7	***	94.7	2.3	1.1	1.9	***	32.0
	5인~29인	2,882	18.1	81.9		87.0	6.7	1.9	4.4		53.6
	30인~99인	1,542	31.1	68.9		82.7	10.9	1.8	4.5		47.6
	100인~299인	1,119	47.2	52.8		79.0	14.7	2.6	3.8		42.2
	300인 이상	1,220	69.9	30.1		61.1	24.4	6.4	8.1		54.5
경력	1년 미만	1,077	18.8	81.2	***	87.4	8.1	2.2	2.3	***	44.6
	1-3년	1,473	21.5	78.5		85.1	10.0	2.3	2.6		50.8
	3-5년	1,428	30.5	69.5		81.1	10.2	2.2	6.6		55.6
	5-10년	1,748	31.9	68.1		81.2	11.1	2.4	5.3		53.9
	10년 이상	2,370	40.8	59.2		80.3	11.8	3.0	4.9		44.8
산업	건설업	647	45.9	54.1	***	79.9	10.2	1.7	8.2	***	37.7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62.8	37.2		60.5	23.5	7.0	9.0		58.7
	제조업	1,743	33.1	66.9		84.3	10.3	2.1	3.3		45.4
	민간서비스업	1,046	19.9	80.1		88.0	8.7	1.2	2.1		46.6
	교육서비스업	761	26.7	73.3		82.0	9.5	1.2	7.4		54.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25	28.6	71.4		77.8	13.6	5.0	3.7		57.0
	사무·금융업	1,191	27.4	72.6		83.0	10.6	2.4	4.1		54.9
	운수업	151	37.1	62.9		76.2	15.9	5.3	2.6		53.6
	정보통신업	476	16.0	84.0		92.2	4.2	1.9	1.7		43.4
	그 외	797	17.9	82.1		90.1	4.3	1.5	4.1		41.3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34.4	65.6	***	84.0	10.0	1.8	4.2	***	41.9
	기술·기능·생산직	1,820	33.2	66.8		78.2	13.3	3.3	5.2		59.8
	서비스직	1,807	22.5	77.5		84.4	8.9	2.2	4.5		56.3
	판매·영업직	521	23.2	76.8		81.4	9.6	5.0	4.0		52.9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27.1	72.9		75.0	13.2	6.9	4.9		61.5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40.0	60.0	***	77.0	13.0	4.0	5.9	***	47.7
	산업단지 아님	6,363	28.1	71.9		83.9	9.9	2.1	4.1		50.2

* p < .001 *** < .01 ** < .05 *

[표 39] 노사협의회의 및 근로자대표 유무

(단위: %)

구분		n	노사 협의회 있음	근로자 대표 있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회사가 지정	직원들이 투표	노사협의 회 겸직	과반수 노조	무응 답	χ^2
계		8,096	26.9 ¹²⁾	31.0 ¹³⁾	29.7	51.4	9.0	8.5	1.4	
성별	남성	3,096	35.3	38.9	28.3	54.3	8.1	8.0	1.3	***
	여성	4,980	21.6	26.1	31.1	48.6	9.9	9.1	1.4	
	그 외의 성	20	25.0	25.0	20.0	80.0	0.0	0.0	0.0	
연령 대	20대	1,408	20.3	25.0	36.6	42.9	8.8	9.7	2.0	***
	30대	3,687	28.4	33.2	32.1	50.1	9.5	7.2	1.1	
	40대	2,212	28.4	31.8	24.1	55.7	8.7	9.8	1.7	
	50대	789	27.4	29.4	23.3	57.8	8.2	9.9	0.9	
지역	수도권	3,581	26.9	31.1	31.0	51.8	9.3	6.6	1.4	*
	비수도권	4,515	26.9	31.0	28.7	51.1	8.9	10.1	1.3	
고용 형태	정규직	5,436	32.0	36.1	28.6	52.8	8.4	8.8	1.5	***
	비정규직	1,887	19.1	23.1	29.4	49.4	11.7	8.5	0.9	
	특고, 프리랜서	520	8.8	13.7	45.1	40.8	9.9	4.2	0.0	
	그 외	253	12.3	17.0	58.1	23.3	11.6	4.7	2.3	
규모	5인 미만	1,333	7.1	11.6	61.0	29.2	5.8	1.9	1.9	***
	5인~29인	2,882	13.2	20.2	41.5	43.4	8.3	4.8	2.1	
	30인~99인	1,542	27.5	31.4	29.1	54.1	9.9	5.0	1.9	
	100인~299인	1,119	45.0	47.8	31.6	48.6	10.5	8.2	1.1	
	300인 이상	1,220	63.6	62.0	13.3	62.2	8.7	15.2	0.5	
경력	1년 미만	1,077	14.6	17.8	45.3	39.6	6.3	6.3	2.6	***
	1~3년	1,473	20.0	25.5	35.9	40.7	11.2	10.4	1.9	
	3~5년	1,428	23.8	28.2	26.4	55.0	10.7	7.2	0.7	
	5~10년	1,748	26.9	31.6	29.5	48.8	11.2	9.2	1.3	
	10년 이상	2,370	38.5	41.7	25.8	57.7	6.9	8.4	1.2	
산업	건설업	647	37.6	42.0	37.1	52.9	5.9	2.2	1.8	***
	공공행정서비스업	659	51.4	51.1	15.4	55.5	9.8	17.8	1.5	
	제조업	1,743	32.1	36.9	28.8	55.2	8.4	6.4	1.2	
	민간서비스업	1,046	18.9	22.5	35.7	46.8	9.4	5.5	2.6	
	교육서비스업	761	16.7	24.4	34.4	44.1	12.4	9.1	0.0	
	보건의료서비스업	625	24.5	32.2	30.8	45.8	9.0	12.4	2.0	
	사무·금융업	1,191	23.8	26.3	28.4	53.4	7.7	9.3	1.3	
	운수업	151	25.2	29.1	25.0	47.7	20.5	6.8	0.0	
	정보통신업	476	19.7	24.4	35.3	47.4	11.2	5.2	0.9	
	그 외	797	17.7	20.6	34.8	47.0	9.1	8.5	0.6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3,804	31.9	34.5	28.8	51.6	8.8	9.5	1.2	***
	기술·기능·생산직	1,820	28.5	33.4	25.5	56.3	8.1	9.1	1.0	
	서비스직	1,807	17.7	22.7	37.2	45.3	9.5	6.1	1.9	
	판매·영업직	521	18.8	28.6	33.6	45.6	14.8	3.4	2.7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44	18.8	21.5	32.3	51.6	3.2	12.9	0.0	
노조 유무	유노조	2,479	63.9	64.2	19.2	58.5	8.9	12.7	0.7	***
	무노조, 잘 모름	5,617	10.6	16.4	48.0	39.0	9.2	1.3	2.5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733	38.5	45.1	35.3	52.0	7.0	5.1	0.5	***
	산업단지 아님	6,363	23.7	27.2	27.2	51.1	9.9	10.1	1.7	

* p < .001 *** < .01 ** < .05 *

12) 설치되어 있지 않다 49.3%, 모르겠다 23.8%

13) 없다 44.8%, 모르겠다 24.2%

[표 40]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종속 관계

(단위: %)

항목	구분	n	인사 결정 권한			업무 지휘 명령 권한			근태 관리 권한		
			원청	하청	모름	원청	하청	모름	원청	하청	모름
	계	344	30.2	48.3	21.5	33.1	47.7	19.2	33.1	47.1	19.8
규모	5인 미만	49	34.7	44.9	20.4	38.8	49.0	12.2	40.8	46.9	12.2
	5인~29인	170	35.3	42.9	21.8	31.8	48.2	20.0	37.1	42.9	20.0
	30인~99인	67	28.4	61.2	10.4	38.8	47.8	13.4	28.4	53.7	17.9
	100인~299인	39	10.3	51.3	38.5	20.5	48.7	30.8	17.9	53.8	28.2
	300인 이상	19	21.1	52.6	26.3	36.8	36.8	26.3	26.3	47.4	26.3
산업	건설업	64	51.6	40.6	7.8	42.2	51.6	6.3	53.1	35.9	10.9
	공공행정서비스업	14	28.6	42.9	28.6	21.4	57.1	21.4	21.4	42.9	35.7
	제조업	97	25.8	58.8	15.5	33.0	52.6	14.4	32.0	54.6	13.4
	민간서비스업	52	23.1	51.9	25.0	26.9	50.0	23.1	25.0	50.0	25.0
	교육서비스업	13	23.1	23.1	53.8	0.0	61.5	38.5	0.0	61.5	3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	0.0	85.7	14.3	28.6	42.9	28.6	14.3	57.1	28.6
	사무·금융업	29	24.1	44.8	31.0	37.9	34.5	27.6	27.6	51.7	20.7
	운수업	7	42.9	42.9	14.3	42.9	28.6	28.6	28.6	42.9	28.6
	정보통신업	20	40.0	35.0	25.0	50.0	30.0	20.0	45.0	35.0	20.0
	그 외	41	22.0	43.9	34.1	29.3	41.5	29.3	31.7	41.5	26.8
직업	사무·관리·행정직	63	28.6	44.4	27.0	31.7	41.3	27.0	28.6	44.4	27.0
	기술·기능·생산직	155	31.6	50.3	18.1	34.8	48.4	16.8	31.6	52.9	15.5
	서비스직	87	23.0	49.4	27.6	20.7	57.5	21.8	28.7	44.8	26.4
	판매·영업직	18	38.9	50.0	11.1	61.1	33.3	5.6	77.8	11.1	11.1
	청소·시설관리·경비직	21	47.6	38.1	14.3	52.4	33.3	14.3	38.1	52.4	9.5
노조 유무	유노조	130	40.8	49.2	10.0	32.3	59.2	8.5	42.3	46.9	10.8
	무노조, 잘모름	214	23.8	47.7	28.5	33.6	40.7	25.7	27.6	47.2	25.2
산업 단지	산업단지 근무	159	37.7	47.8	14.5	31.4	54.7	13.8	41.5	45.9	12.6
	산업단지 아님	185	23.8	48.6	27.6	34.6	41.6	23.8	25.9	48.1	25.9

[표 41] 현 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 (2개 응답)

단위: 명, %

구분	n	A	B	C	D	E	F	G	H	I
		저임금 해소	고용 안정	위반 사업장 처벌	체불, 포괄임 금 규제	실업급 여 보장성	노동 안전 보장	노조할 권리	특고 등 4대보험	5인미만 근기법
계	8,209	2,636	2,171	2,057	2,014	1,786	1,653	1,545	1,357	1,199
	100	32.1	26.4	25.1	24.5	21.8	20.1	18.8	16.5	14.6
남성	3,128	28.2	24.5	26.6	25.9	22.8	23.2	21.5	17.9	9.4
여성	5,061	34.5	27.7	24.1	23.7	21.1	18.3	17.1	15.6	17.8
그 외의 성	20	25.0	15.0	35.0	20.0	20.0	20.0	20.0	30.0	15.0
20대	1,436	35.0	26.5	25.3	23.3	22.7	17.1	16.9	17.2	16.0
30대	3,722	30.1	23.6	26.9	26.5	21.7	20.6	20.2	16.8	13.6
40대	2,245	33.1	29.5	23.1	22.5	20.6	21.6	18.3	15.9	15.5
50대 이상	806	33.5	30.9	21.7	23.1	23.7	19.5	17.4	15.9	14.4
수도권	3,616	30.3	26.0	27.0	26.6	21.7	19.1	18.5	16.9	13.9
비수도권	4,593	33.6	26.8	23.5	22.9	21.8	20.9	19.1	16.3	15.2
정규직	5,436	33.1	20.2	27.3	26.6	22.4	21.1	19.9	14.4	14.9
비정규직	1,887	33.1	42.1	21.0	19.8	20.5	17.3	17.1	16.1	13.0
특고, 프리랜서	520	22.3	32.9	19.0	20.8	18.5	18.7	15.6	38.5	13.8
그 외	366	27.0	28.7	27.0	23.2	24.0	23.0	15.8	18.9	18.9
5인 미만	1,385	29.7	29.2	21.2	20.0	23.2	17.5	15.5	18.6	25.1
5인~29인	2,920	32.9	26.1	24.1	25.1	22.8	19.4	17.2	16.1	16.2
30인~99인	1,551	32.2	25.9	26.6	26.8	22.2	20.5	19.5	16.2	10.1
100인~299인	1,130	31.6	27.1	26.9	25.8	20.6	22.4	20.4	17.0	8.2
300인 이상	1,223	33.2	24.1	28.1	24.3	18.1	22.3	24.1	15.2	10.5
노동조합원	1,426	32.3	24.5	25.3	22.4	19.6	24.3	25.1	18.0	8.5
비조합원	6,783	32.1	26.9	25.0	25.0	22.2	19.3	17.5	16.2	15.9
산업단지 근무	1,748	30.9	23.7	24.5	26.7	24.1	22.0	18.9	17.4	11.8
산업단지 아님	6,461	32.4	27.2	25.2	24.0	21.1	19.6	18.8	16.3	15.4

- 다중응답 빈도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우측 정렬함 A: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 B: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C: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 D: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 E: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 F: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등 노동안전 보장, G: 노동조합 활동할 수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 H: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4대보험 의무가입 제도화, I: 5인 미만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표 42] 노조에 가입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2개 응답, 비조합원)

단위: 명, %

구분	n	a 사내복지 제도요구	b 임금교섭 임금인상	c 노동안전 보장	d 공정한 인사, 승진	e 휴가 사용 요구	f 직장내괴 롭힘 근절	g 경영정보 공개요구
계	6,783	2,692	2,239	2,168	2,066	2,060	1,360	981
	100	39.7	33.0	32.0	30.5	30.4	20.1	14.1
남성	2,504	34.8	32.7	34.7	31.6	26.4	20.5	19.3
여성	4,260	42.6	33.2	30.4	29.9	32.7	19.8	11.5
그 외의 성	19	42.1	26.3	26.3	10.5	36.8	26.3	31.6
20대	1,241	39.6	39.0	27.2	31.5	27.7	20.5	14.6
30대	3,135	39.4	31.6	30.7	30.1	31.1	21.9	15.2
40대	1,781	39.6	31.9	34.5	32.1	31.0	17.5	13.4
50대 이상	626	41.5	31.3	40.7	25.4	30.0	17.3	13.7
수도권	3,054	42.2	32.7	29.5	31.0	28.2	20.9	15.5
비수도권	3,729	37.6	33.2	34.0	30.0	32.1	19.4	13.6
정규직	4,421	40.6	34.8	27.6	32.7	29.0	20.0	15.4
비정규직	1,582	37.2	32.2	39.6	26.9	32.4	20.0	11.8
특고, 프리랜서	452	39.8	25.0	41.2	23.9	35.6	21.0	13.5
그 외	328	39.6	24.4	41.2	26.2	31.7	20.4	16.5
5인 미만	1,314	39.2	29.0	38.0	23.0	39.3	19.7	11.9
5인~29인	2,541	39.0	33.2	33.2	27.9	31.4	20.7	14.6
30인~99인	1,285	41.6	33.8	27.1	36.2	27.2	18.4	15.7
100인~299인	895	37.9	32.3	28.9	34.7	26.7	21.8	17.7
300인 이상	748	41.8	39.0	29.1	37.3	20.9	19.1	12.7
1년 미만	986	38.3	33.3	35.0	26.6	33.1	21.0	12.8
1~3년	1,273	38.3	33.2	30.6	28.8	31.4	23.4	14.2
3~5년	1,176	38.6	32.3	33.4	30.3	28.6	21.0	15.8
5~10년	1,430	39.9	34.2	30.9	30.3	29.7	20.2	14.8
10년 이상	1,918	41.8	32.3	31.2	33.8	29.9	16.6	14.4
건설업	519	34.9	26.8	37.0	30.8	30.8	22.2	17.5
공공행정서비스업	405	38.3	35.6	31.9	32.6	23.2	24.9	13.6
제조업	1,476	37.5	36.2	32.7	31.7	27.6	19.3	15.0
민간서비스업	929	40.2	29.1	36.2	28.6	30.7	19.9	15.4
교육서비스업	632	38.4	30.9	32.3	27.4	38.6	20.4	12.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98	42.8	40.0	25.5	22.1	37.6	20.1	12.0
사무·금융업	997	40.9	31.1	28.7	35.2	30.2	19.3	14.6
운수업	115	37.4	35.7	34.8	34.8	27.0	17.4	13.0
정보통신업	441	46.9	34.5	24.3	32.4	24.7	20.0	17.2
그 외	771	41.0	32.9	34.4	28.9	31.3	18.8	12.7
사무·관리·행정직	3,224	41.4	33.6	29.1	33.2	29.1	19.9	13.7
기술·기능·생산직	1,446	36.7	34.3	34.5	29.8	28.3	20.0	16.4
서비스직	1,563	39.8	31.6	33.3	26.4	35.0	20.0	13.9
판매·영업직	435	39.1	28.7	37.5	29.0	28.7	21.1	15.9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15	29.6	34.8	41.7	23.5	34.8	23.5	12.2
유노조	1,256	38.3	32.3	31.2	34.5	23.6	22.9	17.2
무노조, 잘 모름	5,527	40.0	33.2	32.1	29.5	31.9	19.4	13.8
산업단지 근무	1,346	39.4	35.0	32.1	31.9	27.7	18.6	15.4
산업단지 아님	5,437	39.8	32.5	31.9	30.1	31.0	20.4	14.2

-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6,78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고, 다중응답 빈도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우측 정렬함. a: 주택자금 대출, 식대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사내 복지제도 요구. b: 사장과 임금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c: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 보장 요구, d: 공정한 인사와 승진, 성과 배분 요구, e: 자유로운 휴가(연차) 사용 요구, f: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g: 회사의 경영실적 등 정보 공개

[표 43] 노동조합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2개 응답)

단위: 명, %

구분	n	1) 임금, 노동조 건	2) 노동시 간 단축	3) 법제도 개선	4) 노동안 전보건	5) 비정규 직 해결	6) 불평등 해소	7) 예방, 구제	8) 노동상 담 외	9) 산업정 책 주도
계	8,209	2,740	2,147	2,074	1,923	1,830	1,617	1,553	1,509	1,025
	100	33.4	26.2	25.3	23.4	22.3	19.7	18.9	18.4	12.5
남성	3,128	32.3	23.2	23.9	23.8	20.8	19.6	20.7	20.2	15.4
여성	5,061	34.1	28.0	26.0	23.2	23.2	19.7	17.8	17.3	10.7
그 외의 성	20	20.0	30.0	40.0	15.0	30.0	25.0	25.0	15.0	0.0
20대	1,436	33.1	29.7	25.8	20.8	20.5	19.8	18.8	17.6	13.9
30대	3,722	32.5	27.8	25.1	23.1	20.1	19.6	20.6	18.4	13.0
40대	2,245	33.9	23.0	25.7	25.0	24.9	19.4	17.6	19.4	11.0
50대 이상	806	36.7	21.2	23.8	25.2	28.2	20.8	15.1	17.0	11.9
수도권	3,616	33.2	26.6	25.9	22.2	21.6	20.3	18.5	18.7	13.1
비수도권	4,593	33.5	25.8	24.8	24.4	22.8	19.2	19.3	18.2	12.0
정규직	5,436	34.5	27.9	26.2	23.7	16.6	20.0	19.3	19.2	12.6
비정규직	1,887	32.3	23.7	22.6	22.2	34.6	18.5	17.9	16.3	11.9
특고, 프리랜서	520	28.8	19.2	25.2	26.5	31.7	20.6	18.7	18.5	10.8
그 외	366	28.1	22.1	25.7	21.9	29.5	19.7	18.6	17.5	16.9
5인 미만	1,385	29.7	23.6	26.0	25.2	27.4	20.9	17.7	17.6	12.0
5인~29인	2,920	32.0	26.3	24.2	23.0	21.6	20.5	20.2	19.1	13.0
30인~99인	1,551	34.6	27.0	25.5	23.2	22.2	18.7	18.0	18.7	12.1
100인~299인	1,130	32.6	26.2	26.3	22.8	21.2	18.3	20.4	17.2	15.0
300인 이상	1,223	40.1	27.6	25.7	23.1	19.2	19.1	17.0	18.3	9.9
1년 미만	1,125	33.2	26.4	24.4	21.9	23.6	20.4	20.5	16.3	13.4
1-3년	1,492	31.9	26.1	24.5	22.7	26.4	19.3	19.5	16.4	13.1
3-5년	1,448	28.9	27.4	24.3	23.8	21.1	20.5	18.9	21.3	13.9
5-10년	1,759	33.9	27.4	26.3	23.0	21.0	18.7	18.8	19.7	11.1
10년 이상	2,385	36.7	24.4	26.0	24.7	20.8	19.9	17.9	17.9	11.8
건설업	649	29.3	22.0	22.0	24.5	22.7	19.9	21.3	23.1	15.3
공공행정서비스업	665	36.1	26.2	23.3	23.3	21.4	18.5	22.3	17.0	12.0
제조업	1,749	35.3	25.8	26.6	24.6	19.3	18.0	18.0	17.6	14.8
민간서비스업	1,056	30.8	26.4	23.5	25.2	25.5	19.1	18.6	19.9	11.1
교육서비스업	770	31.7	23.9	24.2	23.9	24.9	21.7	19.2	18.3	12.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39	36.6	28.6	24.4	20.5	21.1	18.3	18.3	19.4	12.7
사무·금융업	1,201	31.6	27.2	27.0	21.6	21.6	21.1	19.4	18.7	11.8
운수업	151	30.5	26.5	27.2	27.8	19.2	21.2	19.2	16.6	11.9
정보통신업	478	31.4	29.7	29.5	22.4	20.9	23.8	17.6	15.3	9.4
그 외	851	37.0	26.2	25.1	22.2	25.6	19.4	17.2	16.6	10.7
사무·관리·행정직	3,854	34.1	26.3	25.7	23.1	20.6	20.5	19.4	18.4	12.0
기술·기능·생산직	1,844	33.8	26.7	25.5	24.2	21.1	18.8	18.6	18.2	13.1
서비스직	1,847	32.4	27.3	25.6	22.8	24.6	19.9	17.7	17.7	12.0
판매·영업직	533	30.4	19.9	22.1	25.3	28.3	16.7	20.3	21.6	15.4
청소·시설관리·경비직	151	32.5	23.8	18.5	22.5	29.8	19.2	21.9	17.9	13.9
노동조합원	1,426	35.4	24.9	22.4	24.3	19.3	20.3	20.9	18.0	14.7
비조합원	6,783	33.0	26.4	25.9	23.2	22.9	19.6	18.5	18.5	12.0
산업단지 근무	1,748	35.5	25.5	22.8	23.5	20.4	19.1	18.5	18.8	16.0
산업단지 아님	6,461	32.8	26.3	25.9	23.4	22.8	19.9	19.0	18.3	11.5

- 다중응답 빈도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우측 정렬함. 1)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임금단체교섭, 2)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권 확대, 3) 노동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 안전보건 활동, 5)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해소, 6) 불평등, 사회양극화 해소, 7) 노동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구제, 8) 노동상담·법률지원·노동권 교육 9) 기후·디지털 전환 등 노동자를 위한 산업정책 주도

[표 44]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2개 응답)

단위: 명, %

구분	n	노조는 부당대우로부터 보호에 도움					노조는 고용안정에 도움					노조는 임금인상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계	8,209	2.2	6.6	29.6	41.5	20.0	2.5	7.2	31.0	40.2	19.1	2.4	6.8	31.1	39.7	19.9
남성	3,128	2.3	6.5	28.8	39.9	22.6	3.0	7.3	27.9	40.3	21.6	2.4	6.6	29.8	38.5	22.7
여성	5,061	2.1	6.7	30.2	42.6	18.4	2.1	7.2	33.0	40.3	17.5	2.3	7.0	32.0	40.5	18.2
그 외의 성	20	5.0	5.0	25.0	35.0	30.0	5.0	5.0	35.0	30.0	25.0	5.0	10.0	15.0	40.0	30.0
20대	1,436	1.9	4.8	28.9	41.6	22.8	1.9	5.8	33.4	37.5	21.4	1.8	6.5	33.5	35.9	22.3
30대	3,722	2.1	7.1	31.5	40.8	18.5	3.0	7.8	31.9	38.9	18.4	2.3	7.7	31.7	38.7	19.6
40대	2,245	2.4	6.8	28.1	41.9	20.9	2.1	6.8	29.6	43.3	18.3	2.4	6.2	30.3	42.7	18.4
50대 이상	806	2.2	7.2	26.4	44.0	20.1	2.1	7.9	26.8	42.9	20.2	3.6	5.3	26.2	43.2	21.7
수도권	3,616	2.0	6.2	30.0	39.8	22.1	2.0	7.2	30.4	40.2	20.2	2.1	7.1	30.1	39.9	20.8
비수도권	4,593	2.4	6.9	29.3	42.9	18.4	2.8	7.2	31.5	40.3	18.2	2.6	6.7	31.8	39.6	19.3
정규직	5,436	1.9	6.4	29.0	41.8	20.9	2.1	6.8	29.7	41.0	20.3	2.1	6.8	30.5	39.8	20.8
비정규직	1,887	2.1	6.6	29.2	43.0	19.1	2.4	7.6	32.7	40.1	17.2	1.8	6.3	32.0	40.9	19.0
특고,프리랜서	520	3.5	6.5	33.7	40.2	16.2	3.7	6.9	33.8	41.3	14.2	4.0	7.7	31.7	40.8	15.8
그 외	366	5.7	9.6	35.5	31.4	17.8	6.0	10.9	37.7	27.9	17.5	7.4	9.3	34.7	31.4	17.2
5인 미만	1,385	2.9	6.3	31.1	43.1	16.6	2.7	6.6	33.3	41.8	15.6	2.3	6.0	31.5	43.5	16.8
5인~29인	2,920	2.0	7.2	29.0	41.0	20.8	2.3	7.9	31.4	39.8	18.5	2.4	6.4	31.5	39.6	20.0
30인~99인	1,551	2.0	6.1	29.9	42.6	19.5	2.3	6.5	33.3	37.8	20.1	2.0	7.5	31.9	37.5	21.0
100인~299인	1,130	2.4	7.2	30.6	40.5	19.3	3.4	8.7	27.2	40.3	20.5	2.7	8.1	29.5	40.2	19.6
300인 이상	1,223	2.0	5.7	28.2	40.6	23.4	1.9	5.6	28.4	42.7	21.5	2.5	6.8	30.1	38.3	22.3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구분	n	노조는 부당대우로부터 보호에 도움					노조는 고용안정에 도움					노조는 임금인상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1년 미만	1,125	2.2	7.2	33.6	36.5	20.4	2.0	8.1	36.4	34.0	19.4	1.7	7.2	34.2	37.1	19.8
1-3년	1,492	2.2	6.5	29.0	40.9	21.4	2.3	7.2	34.1	35.9	20.5	2.1	7.0	32.6	36.0	22.2
3-5년	1,448	1.5	5.4	25.4	43.4	24.4	2.0	5.4	29.3	42.5	20.9	1.5	6.3	26.9	43.2	22.0
5-10년	1,759	2.3	7.5	28.5	42.7	19.0	3.0	7.6	28.3	41.7	19.3	3.0	7.3	29.2	40.9	19.7
10년 이상	2,385	2.5	6.5	31.6	42.3	17.1	2.6	7.6	29.6	43.4	16.7	2.9	6.6	32.5	40.4	17.5
건설업	649	1.5	6.3	28.2	37.1	26.8	1.5	7.9	24.3	43.3	23.0	1.8	6.8	28.0	38.2	25.1
공공행정서비스업	665	1.4	5.0	25.3	45.3	23.2	1.4	4.8	29.0	43.2	21.7	1.8	5.4	27.2	42.7	22.9
제조업	1,749	2.3	6.5	30.6	40.3	20.4	2.9	6.3	31.4	41.1	18.3	2.7	6.9	31.2	39.6	19.6
민간서비스업	1,056	2.2	5.7	31.1	43.1	18.0	3.1	7.3	32.2	39.2	18.2	2.2	7.9	29.4	43.4	17.2
교육서비스업	770	2.7	8.1	28.7	42.1	18.4	3.1	7.9	30.3	41.6	17.1	2.6	6.8	30.9	39.4	20.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39	2.2	8.6	29.9	39.4	19.9	2.2	9.7	31.6	37.6	18.9	2.8	8.3	33.3	37.7	17.8
사무·금융업	1,201	2.0	6.6	27.1	42.7	21.6	1.7	7.4	29.1	39.1	22.8	1.5	6.7	30.4	39.1	22.3
운수업	151	4.0	6.0	33.1	34.4	22.5	4.0	7.9	35.1	27.2	25.8	3.3	7.3	35.1	25.8	28.5
정보통신업	478	1.9	6.3	30.5	46.4	14.9	2.3	6.9	33.3	43.5	14.0	2.7	5.2	34.9	41.4	15.7
그 외	851	2.8	7.2	33.3	40.5	16.2	2.9	7.4	36.5	38.3	14.8	3.1	6.7	34.9	38.8	16.6
사무·관리·행정직	3,834	1.7	6.4	30.2	42.3	19.4	1.6	6.8	30.9	41.7	18.9	1.9	6.7	31.0	40.9	19.6
기술·기능·생산직	1,844	2.1	6.7	28.2	40.2	22.8	2.8	7.3	31.2	38.7	20.0	2.7	6.9	32.1	35.6	22.7
서비스직	1,847	2.1	6.4	29.9	43.1	18.5	2.5	6.7	32.3	40.1	18.3	2.3	6.3	30.0	43.2	18.2
판매·영업직	533	5.6	6.8	28.9	38.8	19.9	6.4	9.4	26.6	39.2	18.4	4.3	9.8	30.6	36.4	18.9
청소·시설관리·경비	151	4.0	12.6	30.5	29.8	23.2	4.0	13.2	31.8	28.5	22.5	3.3	7.3	35.8	32.5	21.2
노동조합원	1,426	1.7	6.9	20.5	42.1	28.8	1.8	7.3	22.0	43.2	25.7	1.7	7.9	23.6	41.2	25.6
비조합원	6,783	2.3	6.6	31.5	41.4	18.2	2.6	7.2	32.9	39.6	17.6	2.5	6.6	32.7	39.5	18.8
유노조	2,485	1.6	5.4	26.4	41.2	25.3	1.8	6.7	24.8	43.7	23.1	1.9	6.6	27.4	40.4	23.7
무노조, 모름	5,724	2.4	7.1	31.0	41.7	17.7	2.8	7.4	33.8	38.7	17.3	2.6	6.9	32.7	39.5	18.3
산업단지 근무	1,748	2.5	6.9	31.4	36.5	22.8	2.9	7.7	30.0	41.5	17.9	2.7	7.4	32.7	36.9	20.3
산업단지 아님	6,461	2.1	6.5	29.2	42.9	19.3	2.3	7.1	31.3	39.9	19.4	2.3	6.7	30.7	40.5	19.9

[표 45]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인식과 향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n	노조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노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					향후 노조 가입 의향 (비조합원)					χ ²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가입하겠 음	가입의향 있음	가입의향 별로없음	가입의향 없음		
계	8,209	3.1	8.1	35.1	34.6	19.1	2.9	7.1	34.4	37.3	18.2	19.6	45.5	23.3	11.6		
남성	3,128	3.5	8.3	31.5	35.3	21.5	3.3	6.9	31.8	37.9	20.1	23.0	42.2	22.2	12.6	***	
여성	5,061	2.9	8.0	37.3	34.2	17.5	2.7	7.2	36.1	37.0	17.0	17.6	47.5	24.0	10.9		
그 외의 성	20	10.0	0.0	25.0	25.0	40.0	5.0	5.0	30.0	40.0	20.0	21.1	42.1	15.8	21.1		
20대	1,436	2.0	7.1	34.7	33.6	22.5	2.2	5.5	33.1	37.9	21.3	20.3	45.7	22.7	11.3	*	
30대	3,722	3.6	8.7	35.4	34.1	18.2	3.2	7.6	35.0	36.5	17.7	19.4	44.4	24.2	12.0		
40대	2,245	3.1	7.9	35.5	34.7	18.8	2.6	7.8	34.8	38.1	16.7	18.4	47.7	23.8	10.2		
50대 이상	806	3.3	7.6	32.8	38.0	18.4	4.0	5.8	33.4	37.8	19.0	22.7	44.4	19.0	13.9		
수도권	3,616	2.7	7.9	34.7	33.0	21.7	2.7	6.9	33.5	37.2	19.7	19.0	45.6	24.3	11.1		
비수도권	4,593	3.5	8.2	35.4	35.8	17.1	3.1	7.2	35.2	37.4	17.0	20.1	45.5	22.5	12.0		
정규직	5,436	2.9	8.2	34.1	35.2	19.6	2.7	6.9	34.0	37.4	19.1	19.5	45.1	23.8	11.6	***	
비정규직	1,887	2.4	7.8	36.3	33.4	20.1	2.2	7.0	34.7	38.2	17.9	21.0	47.6	22.1	9.4		
특고,프리랜서	520	4.6	7.3	37.3	36.5	14.2	3.8	8.3	34.0	40.4	13.5	18.8	47.1	21.2	12.8		
그 외	366	7.9	9.6	40.4	28.1	13.9	9.3	9.3	40.4	27.9	13.1	14.3	38.7	26.2	20.7		
5인 미만	1,385	3.5	7.5	38.3	35.0	15.7	3.5	5.6	38.3	37.0	15.7	21.9	40.9	22.4	14.8	***	
5인~29인	2,920	3.1	8.4	34.3	34.8	19.4	3.2	7.8	33.6	37.0	18.5	19.4	46.2	22.9	11.4		
30인~99인	1,551	3.0	8.2	36.4	33.3	19.1	2.8	7.2	34.8	36.8	18.4	19.8	47.9	21.7	10.6		
100인~299인	1,130	4.0	7.7	32.7	35.6	20.0	2.8	7.6	31.9	39.9	17.8	18.0	48.0	25.1	8.8		
300인 이상	1,223	2.3	8.3	33.6	34.3	21.6	2.0	6.6	34.0	36.9	20.4	17.5	44.0	27.0	11.5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구분	n	노조는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노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					향후 노조 가입 의향				χ ²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편	매우 그렇다	가입하겠음	가입의향이 있음	가입의향이 별로 없음	가입의향이 없음	
1년 미만	1,125	2.5	8.0	37.9	32.8	18.8	2.3	7.5	37.9	33.6	18.8	16.8	46.3	23.4	13.4	***
1-3년	1,492	3.1	7.4	35.7	33.2	20.6	2.5	6.1	35.7	35.7	19.9	22.6	43.7	22.9	10.8	
3-5년	1,448	1.8	6.7	30.6	36.7	24.2	2.2	5.0	29.4	42.3	21.1	25.5	45.0	17.9	11.6	
5-10년	1,759	3.8	8.6	33.5	35.2	18.8	3.2	8.5	31.8	38.0	18.5	17.5	47.1	22.9	12.5	
10년 이상	2,385	3.8	9.0	37.2	34.5	15.4	3.8	7.8	37.0	36.5	14.8	16.9	45.5	27.3	10.4	
건설업	649	1.8	6.9	31.1	32.2	27.9	1.7	6.3	29.3	38.8	23.9	28.1	43.0	22.9	6.0	***
공공행정서비스업	665	1.7	5.9	30.1	40.2	22.3	1.7	5.0	30.1	42.4	20.9	23.7	48.4	16.3	11.6	
제조업	1,749	3.3	8.0	36.1	34.0	18.6	3.2	7.1	36.3	36.2	17.2	19.0	44.1	24.5	12.4	
민간서비스업	1,056	3.3	9.4	34.3	35.2	17.8	2.8	7.6	33.7	38.1	17.8	19.6	46.1	22.4	11.9	
교육서비스업	770	4.0	6.9	37.9	33.1	18.1	3.6	7.9	34.0	36.4	18.1	17.2	44.3	27.4	11.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39	4.1	10.0	36.8	32.1	17.1	3.0	11.4	34.4	35.5	15.6	18.9	46.2	24.7	10.2	
사무·금융업	1,201	2.3	8.2	33.0	36.1	20.3	2.6	5.7	33.6	36.9	21.2	17.8	51.7	20.5	10.1	
운수업	151	3.3	13.2	36.4	21.9	25.2	3.3	8.6	37.1	29.1	21.9	23.5	38.3	18.3	20.0	
정보통신업	478	3.1	6.9	36.0	38.3	15.7	2.9	6.9	35.1	41.8	13.2	22.2	42.2	22.7	12.9	***
그 외	851	4.5	8.6	39.0	33.5	14.5	4.3	6.6	39.6	35.4	14.1	15.3	43.3	27.0	14.4	
사무·관리·행정직	3,834	2.6	7.9	35.2	35.9	18.3	2.5	6.5	35.5	37.6	17.9	17.3	47.9	24.4	10.4	
기술·기능·생산직	1,844	3.2	9.1	33.3	32.5	21.9	3.1	7.6	33.4	36.7	19.1	22.6	42.0	21.9	13.6	
서비스직	1,847	3.1	6.7	36.7	35.5	18.0	3.0	6.8	33.9	38.9	17.4	22.1	43.9	22.6	11.4	
판매·영업직	533	6.0	10.1	35.1	29.6	19.1	5.6	9.4	33.2	33.0	18.8	16.8	47.4	23.0	12.9	***
청소·시설관리·경비	151	6.6	10.6	32.5	31.1	19.2	4.0	11.9	31.1	33.1	19.9	21.7	37.4	23.5	17.4	
노동조합원	1,426	2.6	7.4	25.8	36.9	27.3	2.7	7.4	26.0	40.5	23.4					***
비조합원	6,783	3.3	8.2	37.0	34.1	17.4	3.0	7.0	36.2	36.7	17.1					
유노조	2,485	2.2	7.1	30.1	36.1	24.5	2.3	5.6	30.2	40.4	21.6	20.0	45.6	26.9	7.5	
무노조, 모름	5,724	3.6	8.5	37.2	33.9	16.8	3.2	7.8	36.3	36.0	16.7	19.5	45.5	22.5	12.5	**
산업단지 근무	1,748	3.3	8.6	35.8	31.9	20.5	3.4	7.5	34.2	36.8	18.1	18.2	47.0	25.6	9.2	
산업단지 아님	6,461	3.1	8.0	34.9	35.3	18.8	2.8	7.0	34.5	37.5	18.2	19.9	45.2	22.8	12.2	

- p <.001 *** <.01 ** <.05 *